녹색의 땅 전남

2013

계약심사 사례집

전라남도
JeollaNamdo

계약심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계약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약심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6조 4천억원의 사업비를 심사하여 7.8%에 해당하는 5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민간 발주 사업에 대해서도 원가를 무료로 자문하여 191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안전행정부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기관표창을 받는 큰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계약심사 사례집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절감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 정리하였으며,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사자와 설계자, 발주청 관계공무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구성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동안 계약심사 과정에서 얻은 경험적 지혜들이 녹아 있는 이 사례집이 사업발주 부서와 계약심사부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한 바가지의 물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을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듯이 계약심사 행정발전의 '마중물'같은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2013. 10월

목 차

Ⅰ. 계약심사제도 운영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5
2.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 5
3. 추진경과 ····· 5
4. 계약심사 주요내용 ····· 6
5. 심사대상 기관 및 범위 ····· 6
6. 심사제외 대상사업 ····· 7
7. 계약심사 흐름도 및 업무처리 절차 ····· 8
8. 계약심사 검토 기준 ····· 15
9. 계약심사 시 유의사항 ····· 22

Ⅱ. 계약심사 운영성과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성과 ····· 29
2. 시·군 계약심사 성과 ····· 32

Ⅲ.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토목공사 ····· 39
2. 건축공사 ····· 53
3.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 61
4. 용 역 ····· 69
5. 물품구매 · 제조 ····· 77
6. 시 · 군 심사사례 ····· 83

Ⅳ. 부 록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113
2. 예정가격 작성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126
3.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 164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173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192
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 219
7. 2012년 전라남도 자체 적산기준 마련 ····· 274
8. 공사용 주요자재 도내 생산업체 현황 ····· 285
9. 계약심사 관련 추천 사이트 ····· 293

I 계약심사제도 운영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2.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3. 추진경과
4. 계약심사 주요내용
5. 심사대상 기관 및 범위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계약심사 흐름도 및 업무처리 절차
8. 계약심사 검토 기준
9. 계약심사 시 유의사항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 금액 및 예정 가격과 설계 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임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2013. 7. 1)
○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3729호)
○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2997호)

3 추진경과

○ 2008. 7. 15 계약심사 기구 설치(2개 담당, 9명)
○ 2008. 9. 1 계약심사 업무 시행
○ 2008. 10. 10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정
○ 2008. 12. 26 원가분석자문단 구성·운영
○ 2010. 1. 1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 운영(확대)
○ 2010. 7. 1 시·군 자체사업 계약심사 시행

4 계약심사 주요내용

- ○ 건설표준품셈 등 일위대가 산정, 법정경비 요율의 적정성
-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 가격정보,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검토
- ○ 부적정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은 절감하되, 발주금액의 과소 책정으로 부실공사 예상 시 적정금액으로 조정
-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 ○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과 신기술·신공법 반영의 필요성 검토

5 심사대상 기관 및 범위

대상기관	심사내용		심 사 대 상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남개발공사, 출연기관사업,[1]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시군 사업(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한함)	공 사	원가심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 기 술	·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내지 지명경쟁 입찰시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반영 필요성 검토
	용 역	원가심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 품	원가심사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사업, 출연기관사업(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공사	원가심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용역	원가심사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	원가심사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시군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시군에 따라 사업범위를 달리하고 있음

1) 전라남도 출연기관 종류(17개 기관)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전남발전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남도장학회, 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여성플라자, 청소년미래재단,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환경산업진흥원

6 심사제외 대상사업

원가심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사업

○ 행정절차가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 협상에 따른 계약 등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

○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대 상 :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사례 : 계약심사 5(전남,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설계VE 1(인천)
조달청 10(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경남·북, 제주)

○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한 경우

○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

- 용 역(5) : 행사용역, 디자인 개발,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농어촌정비사업의 감리용역

- 물 품(7) : 소방헬기 및 부품구매, 유류(가스) 구매, 농·축·수산물(식재료 포함) 구매, 동물 구매, 예술 공연용 의상 및 무대시설 제작, 상품권·종량제봉투, 예술품 구매, 시험연구용 원자재(귀금속 등) 구매

설계변경 심사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항구복구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7 계약심사 흐름도 및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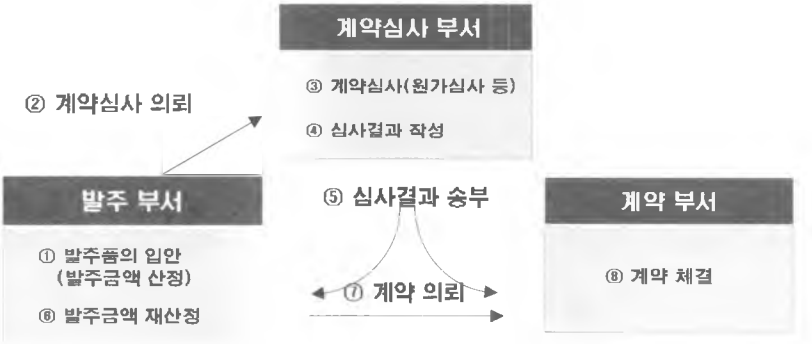

업무처리절차 (처리기간10일 → 단축5일)

①심사요청 접수(문서)	▫ 요청기관 사업부서 → 도 회계과 -계약심사 요청 시 제출서류(참고 2 참조)
↓	
②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 시 서류보완 요청
↓	
③심 사	▫ 계약심사 기준에 따라 담당자 심사 실시
↓	
④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 담당자 → 계약심사 담당
↓	
⑤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 요청기관 사업부서와 협의 - 일위대가 등 원가심사 부분 이견 있을 경우 재검토 - 공법·신기술 적용에 이견 있을 경우 자문단 상정 결정
↓	
⑥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내역서 작성
↓	
⑦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국장) - 국장 :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용역, 2억 이상 물품
↓	
⑧심사결과 통보(문서)	▫ 기안 및 결재, 절감액 및 심사기준 등 통보
↓	
⑨심사결과 실적관리	▫ 심사결과 DB 관리, 예산절감 등 홍보 활용

단계별 처리절차

[심사결과 1차 보고]

① 협조분야 심사내용 취합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분야별 심사 내역서 취합	◦ 복합공정 공사(건축공사의 경우 토목, 기계, 조경, 승강기 공사 등이 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 필요시 분야별 담당자의 심사내역 취합 - 분야별 담당자는 심사결과를 결재 받은 후 총괄담당자에게 전달(금액이 경미한 경우는 결재 없이 내용만 검토하고 총괄담당자가 일괄처리) - 총괄담당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별도보고나 결재는 하지 않고 총괄심사결과서로 보고 및 결재 시행	

② 심사결과 1차보고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심사결과 주요내용	◦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심사담당에게 보고	

[심사요청 부서 협의]

항 목	협 의 내 용	비고
심사 내역서	◦ 자재단가 및 일위대가 조정내용 등 심사내용에 대하여 요청부서의 이견 있는지 사전 협의 -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의견반영 또는 내용 설명하여 조정 ◦ 이견에 대한 조정 미수용 경우 원가분석자문단 상정	
기 타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 할 사항	

[심사결과서 작성 및 보고]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심사결과서 작성	◦ 분야별 심사내역서를 취합하여 총괄 원가계산서 및 심사결과 요약서 작성	
결재 전 최종 보고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 최종 보고 - 사전보고의 필요성이 없는 건(소액 등)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담당 외 사전보고 생략	
기 타	◦ 사전 보고 시 지시사항에 따른 재검토 등	

[심사결과 결재]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 상정	◦ 최종보고 후 기안 및 결재 상정 - 첨 부 :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기타 심사기준 등 조정사유 - 수신자 : 심사요청부서, 심사요청기관의 계약부서 ※ 필요시 관련 부서 추가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항 목	처 리 내 용	비고
결재완료 후 통보	◦ 결재완료 후 전자문서로 발송 - 계약심사결과 통보서(참고 1 참조) - 심사내역서는 분량이 많으므로 e-mail 등을 활용하여 별도 송부 : 요청부서에 유선통보 ◦ 결재완료 후 전자문서로 발송이 되지 않는 기관(지방공사 등)에는 시행문 출력하여 일반문서로 발송 ※ 시급한 경우 우선 e-mail 로 송부	
실적 관리	◦ 심사근거서류 보관 ◦ 심사실적 취합 및 통계 관리, 홍보	

요청기관(부서) 협의 심사

○ 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에 대한 조정사유 명시 협의

○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요청기관(사업부서) 의견 수렴

- 주요자재(설계제품 존중)의 저가사용 심사의견에 이견 있을 경우
  · 고가자재 사용의 불가피성, 저가자재 제품의 품질·성능·기능의 설계기준 미달 여부 등 의견 조회(구매책임관 결재) 실시·심사

○ 심사결과에 이견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 기회 제공

○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된 내용 만 발췌 심사

○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원가분석자문단」 상정 결정

유사·중복업무의 연계 추진

○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계약심사 기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설계 경제성검토(VE) 용역(건기법 제64조, 령 제38조의 13) 사업
  · VE용역 시행 사업의 공법·신기술 적정성은 계약심사 대상 제외
    * VE(Value Engineering)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기본·실시설계 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또는 용역으로 검토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 및 발주청 설계자문회의(건기법 시행령 제21조) 자문을 거친 사업
  · 설계 및 공법·신기술 적용에 대한 적정성은 계약심사 대상 제외

⇒ 설계물량과 공사비의 적정성은 계약심사에서 수행

원가검토기관 위탁 심사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대 상 : 전기, 정보통신공사(계약심사 담당공무원 발령 시 까지 운영)

○ 위탁기관(도내 소재 기관)

- (재)한국경제연구소,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사)한국경제평가연구원 (사)한가람경제연구소

※ 수수료 : 공사비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849~1,278천원 / '13예산 4천만원)

심사결과 통보

○ 계약심사결과 통보서(붙임 참고 1)에 의한 통보

- 기존 통보내용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 제비율 적용기준 명시
- 조정이 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계기준” 등 근거 제시
- 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전불입금 등 심사제외 대상 표기

○ 요청기관의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 통보

○ 도 본청 및 사업소 요청사업은 도 감사관실에도 통보

참고 1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예시)

사업개요

○ 요청기관 : OO 시·군(OOOO과)
○ 공 사 명 : OOOO 공사
○ 위　　치 : OO 시군 OO 읍면동 OO리 일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
○ 공사개요 : 교통광장(입체교차로) ◇개소(A : ○,○○○㎡)
　　교량설치 ◇개소(L=50m, B=13.5m), 연결로 ◇개소

심사결과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분 / 사업비	요청금액(A)	조정금액(B)	증감액 (C=B-A)	비율(%) (C/A)	비 고
합　　계					
공 사 비					
관급자재					

○ 심사 적용기준

- 노무비, 재료비, 산출경비 심사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유 류 : 무연휘발유 1,668원/ℓ, 저유황경유 1,518원/ℓ 등
  · 중기경비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함
    * 환 율 : 2013.01. 한국은행발표 기준 환율 (1,071.1원/$)
- 원가계산 제비율 심사기준
  · "조달청 2013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 기타사항 : 해당될 경우 필요사항 명시
  · 조정이 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계기준" 등 근거 명시
  · 도급공사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전불입금 등 심사제외 등

참고 2 계약심사 요청 시 제출서류

공사분야

- ○ 계약심사 요청서
- ○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지시서
- ○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 소프트웨어 자료(엑셀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 적용하는 경우 각각의 내역서
-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 ○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조서 등 관련자료

용역분야

- ○ 계약심사 요청서
- ○ 과업지시서
- ○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 소프트웨어 자료(엑셀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물품분야

- ○ 계약심사 요청서
- ○ 산출기초조사서,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등
-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 기간, 장소 및 임차조건 등
-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8 계약심사 검토 기준

❑ 공사분야

○ 공사계획의 적정성

-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분할 여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 및 성과품 등 확인 선행
- 관련법에 따른 별도 발주사업의 포함 여부
  · 전기(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 등
- 관련 행정절차 이행여부 확인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 여부
  · 도로 등 연결허가 또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여부 등
    * 사업 대상지가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수반으로 심사 곤란

○ 일위대가 적용의 적정성

- 국토부 공고 건설 표준품셈 및 건설 신기술품셈 우선 적용
- 국토부 공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
- 조달청에서 공표한 공종별 시장시공가격 순으로 적용

○ 기초단가 적용의 적정성

- 공통사항 : 심사시점 고시·발표자료 기준
- 노 무 비 : 건설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적용
- 유 류 대 : 무연휘발유, 저유황경유(한국석유공사 지역별 고시가격)
- 환 율 : 연도별 최초 한국은행 고시 환율 적용

○ 자재가격 적용의 적정성

-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정보·시중거래 공표가격 우선 적용
- 전문가격조사기관(기재부 등록) 공표 물가자료, 물가정보 적용
- 조달청 등 미공표 자재는 2인 이상 견적가격의 최저가 적용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1호, '13.8.30) 적용

○ 도내 생산제품 권장 적용

- 타 지역제품 반영의 경우 도내 생산제품 사용 권장(협의)
  · 요청기관 행정구역 농공단지 등 입주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
  · 입주업체가 없을 경우 동일 기능 제품의 최저가 제품 적용

○ 법정경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
  * 거래실례가격 적용 공종(사급자재 제외)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미가산
- 산재·고용보험료(국토부 고시 제2011-271호 적용)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토부 고시 제2011-271호 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3억 원 이상 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 '13.6.18 적용)
- 공사이행 보증수수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300억 원 이상 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국토부 고시 제2010-956호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적용)
- 환경보전비(건기법 시행규칙 제53조,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적용 제외)
- 기타경비(조달청 기타경비 요율 기준 적용)

○ 공법·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 지방건설기술심의회(건기법 시행령 제19조, 도 조례) 심의 또는 요청기관 설계자문회의(건기법 시행령 제21조) 결정 공법은 심사 제외
- 이외 현장여건에 불합리한 경우 적합한 신공법으로 변경 권장
- 이견 있을 경우 원가분석자문단 상정(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결정
- 건설 신기술품셈 미공표 공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적용

용역분야

○ 용역계획의 적정성

- 관련법에 따른 별도 발주계획의 적정 여부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발굴조사(매장문화보호법), 지반지질조사(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감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의한 구분(검측, 시공, 부분, 전면) 여부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에 따른 추정공사비 적용 여부

○ 일위대가 적용의 적정성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자부 고시 제2012-190호)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3-71호)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2-1668호)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535호)
- 공공발주사업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제2011-750호)

○ 기초단가 적용의 적정성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재부 예규 제109호) 적용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자료) 적용
- 감리원 임금 공표 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발표자료) 적용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단가(대한측량협회 발표자료) 적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단가(한국건설자원협회 발표자료) 적용

○ 법정경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 일반관리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 요율(5%) 초과 여부
  · 학술연구용역 중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용역은 미계상
- 이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 요율(10%) 초과 여부
  · 비영리법인은 법령 · 정관의 목적사업 이외 수익사업 만 적용
- 경비 중 여비, 회의비 적용기준 부합 여부
  · 공무원 국외여비 제외, 조례 · 규칙에서 정한 참석수당 기준 등
-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은 해당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심사

물품구매(제조) 분야

○ 구매계획의 적정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05호, '13.8.30) 적용

○ 일위대가 적용의 적정성

- 공사분야 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제조·설치의 경우)

○ 기초단가 적용의 적정성

- 계약심사시점 고시 · 발표자료 기준으로 심사
- 노무비 : 제조업 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임금조사 발표자료) 적용
- 유류대, 환율 : 공사분야 기초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 자재가격 적용의 적정성

- 공사분야 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도내 생산제품 권장 적용

- 공사분야 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법정경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 제조업종별 일반관리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요율 차등 적용(6~14%)
- 산재 · 고용보험료(국토부 고시 제2011-271호 적용)
- 건강 · 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토부 고시 제2011-271호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적용)
- 이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 요율(25%) 초과 적용 여부
  · 비영리법인은 법령 · 정관의 목적사업 이외 수익사업 만 적용
-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법정경비 계상 여부(적용 제외 대상)

」 설계변경분야

○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의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의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변경발생 가능성 없는지 여부 등

○ 단가 · 물량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 · 단가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량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 선정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 신공법 적용의 경우 적정성 여부

○ 설계도서 작성 및 관련 법령 적용의 적정성

-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검토

참고 4 계약심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 등 목록

번호	제 목	출 처	비 고
【공통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행부 예규 21호	2013
2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3	건설 신기술 품셈	국토교통부	2012
4	2013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비 적용공종 및 단가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5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	2013
6	2013 공사·제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시	2013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2013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내역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2013
9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청 고시	2013
1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3
【토목 · 조경분야】			
1	전라남도 지방도 설계시공 편람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2013
2	전라남도 하천실무 편람	전라남도 방재과	2013
3	국도 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국토교통부	2013
4	도로설계 편람(제1편-제10편)	국토교통부	2012
5	조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3
6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국토교통부	2010
7	도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2
8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2
9	하수도 시설기준	환경부	2005
10	상수도 시설기준	환경부	2004
11	도로 안전시설 설치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09
12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3
13	2013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2013
14	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09
15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0
16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08
1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2
18	터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07
19	하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09
20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0

2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1
22	도로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2
23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2006
24	도로명 안내체계표지 제작설치 지침	국토교통부	2012
25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2009
26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09
27	항만공사 적산기준	국토교통부	2010
28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기계 · 전기분야】			
1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환경부	2010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환경부	2007
3	전기공사 내선규정	대한전기협회	2013
4	도로조명기준(KSA 3701)	대한전기협회	2013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지식경제부	2011
6	전라남도 LED보급 촉진조례	전라남도 조례	2013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2013
8	소방시설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1690호	2013
9	선박설비기준	국토해양부	2011
10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	2011
11	소형선박의구조 및 설비기준	국토해양부	2010
12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1
13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해양부훈령	2009
【건축분야】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	전라남도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국토교통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규칙	국토교통부	
6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05
7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0
8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1
9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013

【용역분야】			
1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자원부	2012
2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국토교통부	2013
3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국토교통부	2013
4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산업자원부	2011
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	2012
6	방재분야 표준품셈	소방방재청	2013
7	기반조사 표준품셈 (표준품셈 제1호)	엔지니어링진흥협회	
8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표준품셈 제11호)	엔지니어링진흥협회	
9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표준품셈7호)	엔지니어링진흥협회	
10	하수도시설기본계획 표준품셈	엔지니어링진흥협회	
11	건물 위생관리(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2013
12	건축물 유지관리용역비 원가계산 기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2013
13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2
14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국토교통부	2013
1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2011
16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13
18	공공측량성과 심사규정	국토교통부	2013
19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2012
20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7
2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	2013
22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환경부	2012
23	방제용역비 원가계산	(사)한국방역협회	2013
24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원	2012
2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획재정부	2012
2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한국건설자원협회	2013
27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2013
【물품분야】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2013

9 계약심사 시 유의사항

원가계산서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원가계산 작성 방식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 (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 참고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행부 예규)등	
각종 제경비 요율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참고기준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 제경비율」 조정계수(상·하반기 2회)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시점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 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 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 : 1.81%시 3,294천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 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 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관급구매 누락여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공사이행보증금발급수수료 : 70%이상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13%+6.6백만원]×공기(년)
70%미만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16%+6.6백만원]×공기(년)

설계내역서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내역서의 수량 확인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가설공사 등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구분,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여부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 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 확인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표에도 자재가격이 포함되어 계상되었는지 여부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 또는 관급자재대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일위대가서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실적공사비 적 용	◦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실적공사비 적용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의무 적용)	
표준품셈 적용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공법에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ㄱ 단가조서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 시점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중 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내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단가적용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시방서 및 도면에서 정한 자재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설비 공사
	◦ 제조 노임, 수입자재의 경우 수입물품 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 공사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ㄱ 기계경비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소요장비 적정성	◦ 소요장비 선정의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자재 · 장비가격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조달구매 단가	□ 조달청 구매 자재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여부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 관급구매 전환 -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원 이상의 전문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은 반드시 관급자재로 설계	
시중자재 단가	□ 시중 물가자료지 활용 ◦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 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처리	
견적단가	□ 견적단가 확인 ◦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 장비가격 확인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Ⅱ 계약심사 운영성과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성과**
   (총괄, 연도별, 분야별, 기관별)
2. **시 · 군 계약심사 성과**
   (총괄, 시군별, 분야별)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성과

가. 총 괄

[총 3,855건 64,177억원 심사, 5,030억원 절감(7.8%)]

○ 절감액 분석 : 공사 4,448억원 > 용역 525억원 > 물품 57억원 順
○ 절감률 비교 : 공사 7.9% > 용역 7.3% > 물품 7.1% 順
○ 기관별 처리량 : 시군 2,978건 > 도 본청 719건 > 공기업 158건 順
○ 평균 처리기간 : 물품 3일 > 용역 4일 > 공사 5일 順

나. 연도별

(단위 :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3,855	6,417,735	5,914,858	502,959	**7.8**
2013년(1~6월)	456	836,317	770,285	66,115	7.9
2012년	830	1,347,805	1,240,804	107,000	7.9
2011년	958	1,445,490	1,334,175	111,315	7.7
2010년	802	1,232,986	1,145,220	87,766	7.1
2009년	603	1,192,892	1,091,595	101,297	8.5
2008년(9~12월)	206	362,245	332,779	29,466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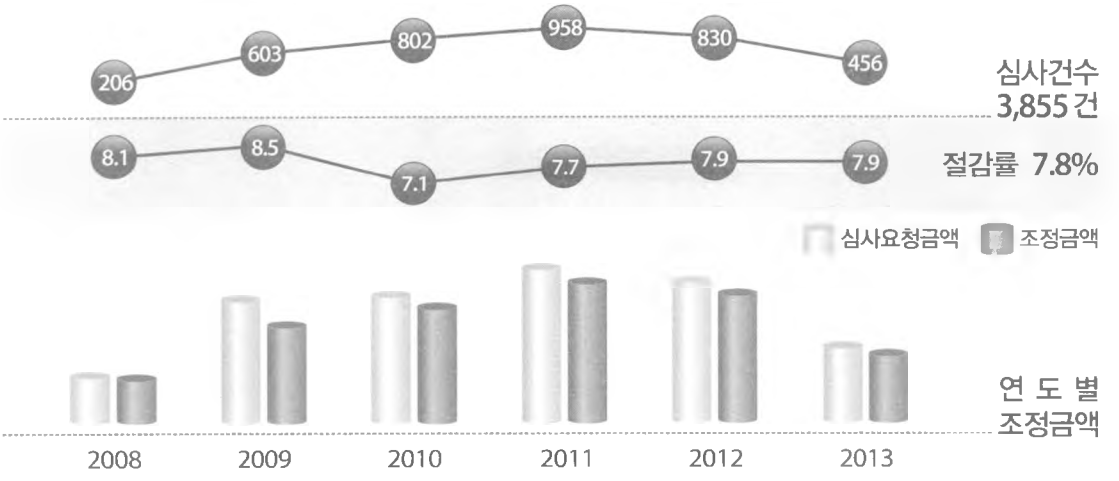

연도별 계약심사 성과

다. 분야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감률(%)	비고
합 계		3,855	6,417,735	5,914,858	502,959	**7.8**	
공사	**소계**	2,421	5,614,230	5,169,466	444,807	**7.9**	
	2013	259	720,700	662,859	57,885	8.0	
	2012	463	1,186,698	1,091,433	95,264	7.9	
	2011	593	1,259,444	1,163,019	96,425	7.7	
	2010	547	1,049,875	973,555	76,320	7.3	
	2009	419	1,075,579	983,122	92,457	8.6	
	2008	140	321,934	295,478	26,456	8.2	
용역	**소계**	839	723,366	670,917	52,488	**7.3**	
	2013	113	105,000	97,298	7,741	7.4	
	2012	207	142,875	132,078	10,797	7.6	
	2011	193	160,115	147,096	13,019	8.1	
	2010	171	172,526	161,676	10,850	6.3	
	2009	112	105,060	97,513	7,547	7.2	
	2008	43	37,790	35,256	2,534	6.7	
물품	**소계**	595	80,139	74,475	5,664	**7.1**	
	2013	84	10,617	10,128	489	4.6	
	2012	160	18,232	17,293	939	5.1	
	2011	172	25,931	24,060	1,871	7.2	
	2010	84	10,585	9,989	596	5.6	
	2009	72	12,253	10,960	1,293	10.6	
	2008	23	2,521	2,045	476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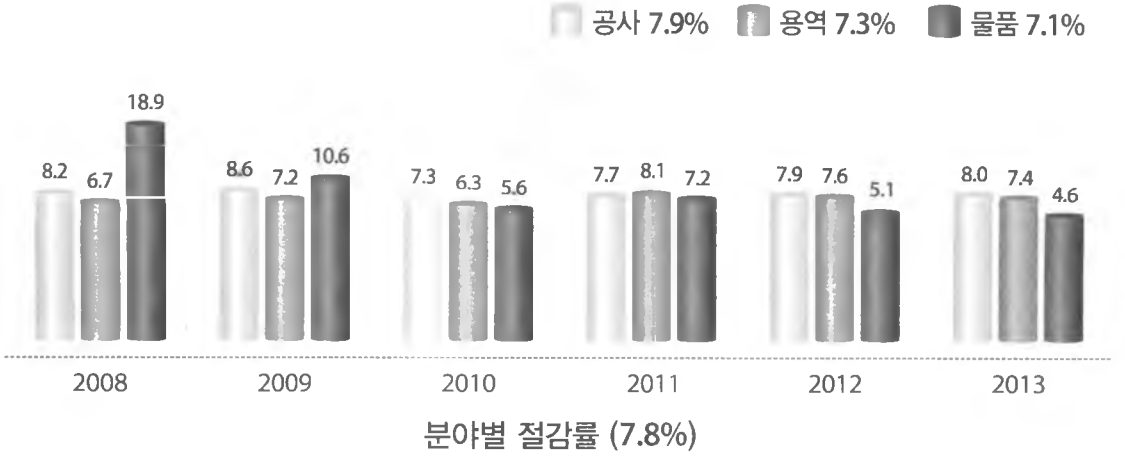

분야별 절감률 (7.8%)

라.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감률(%)	비고
합 계		3,855	6,417,735	5,914,858	502,959	**7.8**	
도	**소계**	719	1,097,740	1,035,260	62,488	**5.8**	
	2013	87	196,171	186,819	9,361	4.8	
	2012	183	259,425	245,038	14,386	5.5	
	2011	141	171,833	163,630	8,203	4.8	
	2010	135	249,976	237,743	12,233	4.9	
	2009	131	198,660	181,058	17,602	8.9	
	2008	42	21,675	20,972	703	3.2	
시군	**소계**	2,978	5,035,171	4,617,468	417,777	**8.3**	
	2013	363	629,361	573,614	55,821	8.9	
	2012	625	1,038,876	951,366	87,510	8.4	
	2011	778	1,210,949	1,113,123	97,826	8.1	
	2010	622	890,507	821,760	68,747	7.7	
	2009	437	931,654	852,231	79,423	8.5	
	2008	153	333,824	305,374	28,450	8.5	
공기업	**소계**	158	284,824	262,130	22,694	**8.0**	
	2013	6	10,785	9,852	933	8.7	
	2012	22	49,504	44,400	5,104	10.3	
	2011	39	62,708	57,422	5,286	8.4	
	2010	45	92,503	85,717	6,786	7.3	
	2009	35	62,578	58,306	4,272	6.8	
	2008	11	6,746	6,433	31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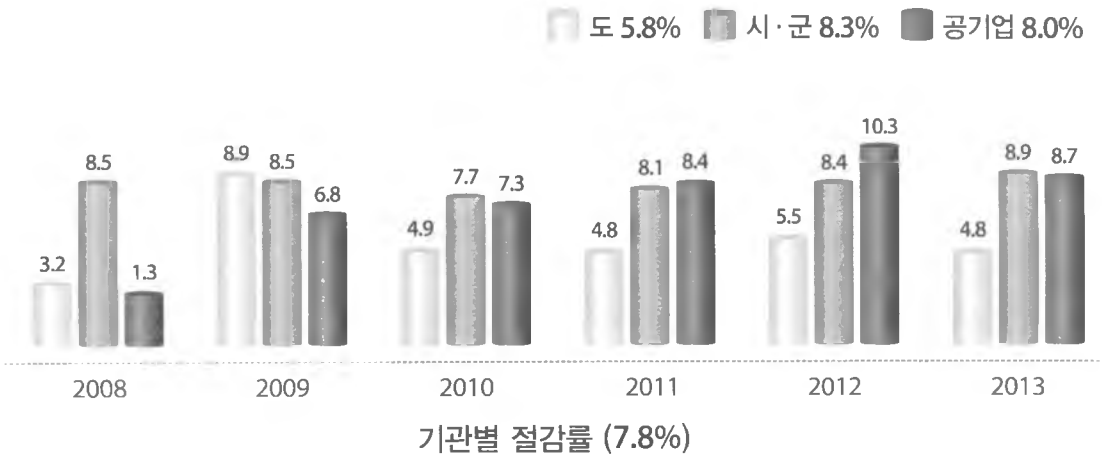

기관별 절감률 (7.8%)

2 시 · 군 계약심사 성과

가. 연도별(총괄)

(2011. 1. 1. ~ 2013. 6. 3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8,273	2,218,956	2,118,951	100,005	**4.5**
2013년	2,145	551,043	529,310	21,733	3.9
2012년	3,273	932,913	890,320	42,593	4.6
2011년	2,855	735,000	699,321	35,679	4.9

나. 분야별(총괄)

(2011. 1. 1. ~ 2013. 6. 3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8,273	2,218,956	2,118,951	100,005	**4.5**
공 사	4,928	1,833,399	1,753,579	79,820	**4.4**
2013년	1,295	453,286	435,425	17,861	3.9
2012년	1,950	784,735	749,980	34,755	4.4
2011년	1,683	595,378	568,174	27,204	4.6
용 역	1,458	290,333	274,120	16,213	**5.6**
2013년	363	71,504	68,214	3,290	4.6
2012년	558	108,765	102,646	6,119	5.6
2011년	537	110,064	103,260	6,804	6.2
물 품	1,887	95,224	91,252	3,972	**4.2**
2013년	487	26,253	25,671	582	2.2
2012년	765	39,413	37,694	1,719	4.4
2011년	635	29,558	27,887	1,671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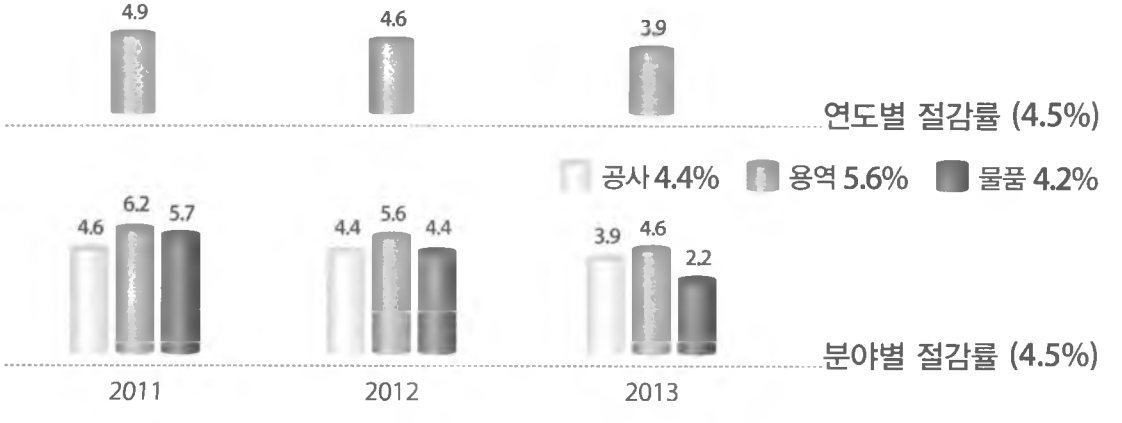

다. 시군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1.1~6.30)					2012년					2011년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계	2,145	551,043	529,310	21,733	3.9	3,273	932,913	890,320	42,593	4.6	2,855	735,000	699,321	35,679	4.9
목포	32	10,446	9,771	675	6.5	57	24,539	23,394	1,145	4.7	49	16,201	15,052	1,149	7.1
여수	279	81,235	78,782	2,453	3.0	285	101,322	98,757	2,565	2.5	225	99,214	96,736	2,478	2.5
순천	161	42,242	39,989	2,253	5.3	435	143,181	133,282	9,899	6.9	399	64,773	59,681	5,092	7.9
나주	122	29,978	28,811	1,167	3.9	146	48,515	45,974	2,541	5.2	111	29,104	26,961	2,143	7.4
광양	330	62,563	61,102	1,461	2.3	446	121,821	118,249	3,572	2.9	481	132,245	126,170	6,075	4.6
담양	67	6,285	6,096	189	3.0	113	30,240	29,334	906	3.0	97	15,927	15,300	627	3.9
곡성	27	8,219	8,060	159	1.9	55	15,138	14,569	569	3.8	48	10,851	9,894	957	8.8
구례	27	10,195	9,995	200	2.0	34	11,610	11,289	321	2.8	37	15,754	15,320	434	2.9
고흥	295	36,837	35,749	1,088	3.0	573	80,658	78,479	2,179	2.7	500	70,260	67,259	3,001	4.3
보성	14	6,990	6,342	648	9.3	31	12,796	12,229	567	4.4	39	9,978	9,589	389	3.9
화순	54	12,544	11,813	731	5.8	135	40,418	38,276	2,142	5.3	59	28,120	26,114	2,006	7.1
장흥	18	8,835	8,750	85	1.0	41	15,332	14,862	470	3.1	40	12,843	12,510	333	2.6
강진	85	26,636	25,694	942	3.5	117	26,664	25,456	1,208	4.5	103	37,351	35,474	1,877	5.0
해남	86	45,977	42,372	3,605	7.8	90	57,411	52,611	4,800	8.4	70	24,081	21,752	2,329	9.7
영암	30	14,335	13,874	461	3.2	48	24,710	23,350	1,360	5.5	51	31,387	30,102	1,285	4.1
무안	25	6,910	6,636	274	4.0	44	15,111	14,544	567	3.8	35	9,634	9,256	378	3.9
함평	57	20,387	19,902	485	2.4	52	14,017	12,943	1,074	7.7	40	15,020	14,739	281	1.9
영광	29	11,795	11,525	270	2.3	61	24,870	23,868	1,002	4.0	62	26,984	26,411	573	2.1
장성	46	13,373	12,526	847	6.3	72	18,369	17,247	1,122	6.1	53	9,765	9,340	425	4.4
완도	200	46,991	45,505	1,486	3.2	245	42,089	40,588	1,501	3.6	232	41,193	39,130	2,063	5.0
진도	72	19,990	19,069	921	4.6	85	21,559	20,427	1,132	5.3	37	11,971	11,355	616	5.1
신안	89	28,280	26,947	1,333	4.7	108	42,543	40,592	1,951	4.6	87	22,344	21,176	1,168	5.2

라. 분야별

1 공사분야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1.1~6.30)					2012년					2011년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계	1,295	453,286	435,425	17,861	3.9	1,950	784,735	749,980	34,755	4.4	1,683	595,378	568,174	27,204	4.6
목포	12	4,995	4,582	413	8.3	22	17,082	16,291	791	4.6	16	10,837	9,927	910	8.4
여수	173	65,411	63,251	2,160	3.3	161	87,668	85,333	2,335	2.7	125	80,105	78,509	1,596	2.0
순천	113	36,371	34,339	2,032	5.6	339	125,306	115,953	9,353	7.5	340	54,096	49,586	4,510	8.3
나주	77	23,242	22,548	694	3.0	81	36,819	35,412	1,407	3.8	48	19,532	18,462	1,070	7.4
광양	233	52,906	51,636	1,270	2.4	271	108,835	105,540	3,295	3.0	262	104,426	98,841	5,585	5.4
담양	10	4,153	4,046	107	2.6	20	15,765	15,301	464	2.9	28	11,910	11,535	375	3.2
곡성	13	4,691	4,596	95	2.0	35	12,667	12,218	449	3.5	33	7,361	6,932	429	5.8
구례	11	7,221	7,081	140	1.9	16	9,120	8,859	261	2.9	22	13,154	12,846	308	2.3
고흥	139	31,912	30,976	936	2.9	319	71,847	70,043	1,804	2.5	287	64,471	61,913	2,558	4.0
보성	9	6,255	5,723	532	8.5	20	11,235	10,735	500	4.4	24	8,268	8,027	241	2.9
화순	29	10,069	9,480	589	5.8	99	33,447	31,865	1,582	4.7	37	21,815	20,433	1,382	6.3
장흥	9	7,908	7,850	58	0.7	25	13,142	12,774	368	2.8	19	10,166	10,013	153	1.5
강진	37	23,242	22,394	848	3.6	32	17,600	17,010	590	3.4	41	33,614	32,140	1,474	4.4
해남	60	38,898	35,986	2,912	7.5	58	50,126	46,128	3,998	8.0	30	16,715	15,508	1,207	7.2
영암	16	11,072	10,673	399	3.6	21	21,279	20,394	885	4.2	28	25,658	24,632	1,026	4.0
무안	20	6,292	6,049	243	3.9	30	13,112	12,665	447	3.4	26	7,334	7,131	203	2.8
함평	17	11,540	11,340	200	1.7	24	10,825	10,276	549	5.1	18	11,836	11,608	228	1.9
영광	19	10,473	10,258	215	2.1	47	21,557	20,631	926	4.3	41	23,877	23,397	480	2.0
장성	31	10,299	9,643	656	6.4	44	15,915	14,958	957	6.0	30	7,555	7,246	309	4.1
완도	131	41,802	40,437	1,365	3.3	140	37,040	35,710	1,330	3.6	144	34,614	32,849	1,765	5.1
진도	59	18,049	17,307	742	4.1	66	19,222	18,273	949	4.9	25	9,460	8,956	504	5.3
신안	77	26,485	25,230	1,255	4.7	80	35,126	33,611	1,515	4.3	59	18,574	17,683	891	4.8

2 용역분야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1.1~6.30)					2012년					2011년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계	363	71,504	68,214	3,290	4.6	558	108,765	102,646	6,119	5.6	537	110,064	103,260	6,804	6.2
목포	4	2,678	2,446	232	8.7	13	5,775	5,514	261	4.5	15	2,908	2,757	151	5.2
여수	56	11,274	11,001	273	2.4	57	7,452	7,298	154	2.1	54	15,700	15,052	648	4.1
순천	27	4,235	4,076	159	3.8	62	15,163	14,623	540	3.6	41	8,470	7,920	550	6.5
나주	23	5,600	5,169	431	7.7	36	9,189	8,230	959	10.4	36	7,657	6,716	941	12.3
광양	55	6,729	6,609	120	1.8	92	8,164	7,917	247	3.0	116	23,848	23,386	462	1.9
담양	7	1,129	1,064	65	5.8	17	12,823	12,418	405	3.2	10	2,822	2,640	182	6.5
곡성	12	2,885	2,824	61	2.1	16	2,187	2,116	71	3.3	11	2,313	2,144	169	7.3
구례	7	2,067	2,024	43	2.1	10	1,689	1,661	28	1.7	11	2,255	2,141	114	5.1
고흥	23	2,778	2,701	77	2.8	39	4,772	4,589	183	3.8	19	2,091	1,938	153	7.3
보성	5	735	619	116	16.0	9	1,359	1,292	67	4.9	12	1,581	1,438	143	9.0
화순	8	1,607	1,507	100	6.2	21	5,877	5,400	477	8.1	15	5,502	4,979	523	9.5
장흥	7	857	835	22	2.6	12	1,682	1,587	95	5.7	14	1,971	1,822	149	7.6
강진	24	2,559	2,472	87	3.4	45	6,316	5,788	528	8.4	30	2,619	2,224	395	15.0
해남	17	6,512	5,857	655	10.1	10	5,485	4,828	657	12.0	22	5,551	4,560	991	17.9
영암	9	3,025	2,971	54	1.8	10	1,967	1,533	434	22.1	13	4,763	4,552	211	4.4
무안	2	336	323	13	3.9	5	1,214	1,119	95	7.8	7	2,235	2,062	173	7.7
함평	17	6,574	6,348	226	3.4	11	1,493	1,435	58	3.9	15	2,420	2,367	53	2.2
영광	8	1,219	1,164	55	4.5	14	3,313	3,237	76	2.3	19	2,958	2,874	84	2.8
장성	14	2,996	2,807	189	6.3	26	2,078	1,946	132	6.4	22	2,195	2,079	116	5.3
완도	14	2,065	2,010	55	2.7	17	1,908	1,812	96	5.0	25	4,348	4,122	226	5.2
진도	13	1,941	1,762	179	9.2	19	2,337	2,154	183	7.8	9	2,407	2,298	109	4.5
신안	11	1,703	1,625	78	4.6	17	6,522	6,149	373	5.7	21	3,450	3,189	261	7.6

3 물품 구매·제조분야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1.1~6.30)					2012년					2011년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계	487	26,253	25,671	582	2.2	765	39,413	37,694	1,719	4.4	635	29,558	27,887	1,671	5.7
목포	16	2,773	2,743	30	1.09	22	1,682	1,589	93	5.5	18	2,456	2,368	88	8.6
여수	50	4,550	4,530	20	0.4	67	6,202	6,126	76	1.2	46	3,409	3,175	234	6.9
순천	21	1,636	1,574	62	3.8	34	2,712	2,706	6	0.2	18	2,207	2,175	32	1.5
나주	22	1,136	1,094	42	3.7	29	2,507	2,332	175	7.0	27	1,915	1,783	132	6.9
광양	42	2,928	2,857	71	2.4	83	4,822	4,792	30	0.6	103	3,971	3,943	28	0.7
담양	50	1,003	986	17	1.74	76	1,652	1,615	37	2.3	59	1,195	1,125	70	5.9
곡성	2	643	640	3	0.5	4	284	235	49	17.3	4	1,177	818	359	30.5
구례	9	907	890	17	1.9	8	801	769	32	4.0	4	345	333	12	3.5
고흥	133	2,147	2,072	75	3.5	215	4,039	3,847	192	4.8	194	3,698	3,408	290	7.8
보성	0	0	0	0	0	2	202	202	0	0	3	129	124	5	3.9
화순	17	868	826	42	4.8	15	1,094	1,011	83	7.6	7	803	702	101	12.6
장흥	2	70	65	5	7.1	4	508	501	7	1.4	7	706	675	31	4.4
강진	24	835	828	7	0.8	40	2,748	2,658	90	3.3	32	1,118	1,110	8	0.7
해남	9	567	529	38	6.8	22	1,800	1,655	145	8.1	18	1,815	1,684	131	7.2
영암	5	238	230	8	3.6	17	1,464	1,423	41	2.8	10	966	918	48	5.0
무안	3	282	264	18	6.4	9	785	760	25	3.3	2	65	63	2	3.1
함평	23	2,273	2,214	59	2.6	17	1,699	1,232	467	27.5	7	764	764	-	-
영광	2	103	103	-	-	-	-	-	-	-	2	149	140	9	6.0
장성	1	78	76	2	2.6	2	376	343	33	8.8	1	15	15	-	-
완도	55	3,124	3,058	66	2.1	88	3,141	3,066	75	2.4	63	2,231	2,159	72	3.2
진도	-	-	-	-	-	-	-	-	-	-	3	104	101	3	2.9
신안	1	92	92	0	0	11	895	832	63	7.1	7	320	304	16	4.9

Ⅲ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4. 용 역
5. 물품구매·제조
6. 시·군 심사사례

토 목 공 사

1. 건설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 사례 (5건)
2. 공사 원가계산 산출 조정 사례 (3건)
3. 현장조건 등을 고려한 조정 사례 (3건)
4. 건설공사 자재의 적정가격 조정 사례 (3건)
5. 설계내역서 단위수량 표기 오류 사례 (1건)
6. 도내 생산자재 반영을 통한 원가절감 사례 (4건)
7. 설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정 설계 사례 (2건)

1 건설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 사례

1-1 잔디붙임 공종 시설비 중복 산정

- (심사기준)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4장 조경공사편 4-2-1 잔디붙임 품이 2012년 까지 줄떼와 평떼 붙임에 보통 인부 품만 적용하도록 되었으나, 2013년 보통 인부를 조경공 과 보통인부 조합으로 개정되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잔디(평떼) 식재품"의 일위대가 2012년 품셈 적용내용을 2013년 개정된 품셈으로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1-2 기타경비 산정요율 조정

- (심사기준) 2013. 4. 1일 고시된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에 따라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도로 정비공사의 "기타경비" 요율은 2013. 4. 1일 고시된 기준보다 낮게 산정(4.23%), 설계에 반영하여 고시된 기준에 맞게(6.2%) 산정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증액 조정

1-3 위험할증 요율 적용 조정

- (심사기준)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편 1-16-8 위험할증률에 의하면 지상 5~10m인 경우 20%, 10~15m인 경우 30%의 위험할증률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00출렁다리 설치공사 중 케이블설치 높이가 6~7m이므로 "위험할증률"은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20%를 적용 하여야 하나 30%를 적용하여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었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1-4 가설사무실 면적 산정 시 직접노무비 적용 조정

- (심사기준)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편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에 따르면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를 산정할 때는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과에서 요청한 00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총 사업비는 000억원이며 직접노무비는 00억원이므로 현장사무소 등의 면적산정은 직접노무비를 근거로 산정(410㎡) 하여야 하나, 총사업비인 000억원에 대한 현장사무실 면적을 산정(880㎡)하여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었음.
- (심사 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1-5 현장사무실용 가설건축물 손율 조정

- (심사기준)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가설 공사편 2-2-2 철제 조립식 가설건축물 손율은 공사기간에 따라 각각 적용요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의 현장사무실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12개월임으로 손율을 25%만 적용 하여야 하나, 24개월에 해당하는 38%의 손율을 적용하여 과다계상 되었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2 공사 원가계산 산출 조정 사례

2-1 환경보전비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 중복 계상

- (심사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내역서에 명시 하도록 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산출이 곤란할 경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규정된 42개 시설 등이 반영된 경우 요율로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소하천 정비사업 중 "오탁방지망 설치"비용은 관련법에 의한 42개 시설항목에 포함되어 환경보전비와 중복 계상되었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시설비 중복 산정

- (심사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인건비, 안전·보건점검 및 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함은 물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가계산 요율에 맞게 산정 계상 하였으나 추가로 현장 내 작업인부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였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2-3 원가계산 제 비율 조정

- (심사기준) 2013. 6. 19일 국토부에서 제2013-331호로 고시한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항목이 추가되어 공사규모에 따라 적용토록 규정되어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설계용역이 '13. 6. 19일 이후에 준공되어 국토부에서 고시한 원가계산 제 비율 항목 중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항목이 국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반영하여 심사요청 되었어야 하나, 요청된 설계용역 성과품에 미반영 되어 고시된 기준에 맞게 0.49%를 적용하여 반영.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증액

3 현장조건 등을 고려한 조정 사례

3-1 해상운반 장비조합적용 조정

- (심사기준) 국토해양부 발행(2011.12) 항만공사 적산기준 표준사례집에 의하면 해상운반의 장비조합은 현장조건,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장비를 선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상수도 시설공사 중 각종자재의 해상운반에 대한 장비조합이 대선+예선으로 설계 되었으나, 본 현장은 해상에서 10㎞정도 떨어진 섬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여건과 운반거리 등을 고려할 경우 각종자재를 덤프 적재 후 직접 운반 선에 상차한 후 도서 지역 내 육상운반이 경제적임에 따라 해상운반 장비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0백만원 절감

3-2 마대쌓기 및 헐기에 대한 현지여건 반영 조정

- (심사기준)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5장 기초편 5-3-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 규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가물막이 공사인 경우 PP마대 보다는 톤마대 쌓기·헐기품이 경제적임.
- (심사내용) 00과에서 요청한 00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제방 축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일부구간 수중작업이 필요하여 당초 설계상 PP마대 쌓기·헐기로 반영 되었으나, 톤마대 쌓기·헐기 품으로 변경 시공할 경우를 비교 검토한 결과 약 15%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조정 반영하였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3-3 데크 장선, 멍에 현지여건 반영 조정

- (심사기준) 공사현장 주변지역은 계곡과 연접되어 데크 기초부분의 장선, 멍에는 목재보다는 아연도 각관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계곡 주변에 탐방로를 데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인근여건이 항상 습기를 포함하고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습기에 따른 재료 변형이 우려됨으로 데크 기초부분인 멍에, 장선에 대하여는 습기에 강한 아연도 각관을 사용토록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4 건설공사 자재의 적정가격 조정 사례

4-1 골재 운반거리 계상 부적정

- (심사기준) 사업장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은 가격이 동일한 경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입 사용 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에 가장 효율적임.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공사 중 "도로포장용 골재"의 구입은 동일 가격인 경우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골재채취장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설계 시 인근 시군의 채취장에서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운반 거리가 과다 계상되었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 결과 00백만원 절감

4-2 와이어메쉬 도내 생산업체 제품으로 조정

- (심사기준) 「전라남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재구매, 건설장비 등은 전남소재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공사 중 "와이어메쉬"는 해당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고 관급자재로 조달등록 되어 있으나, 타 지역 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인근 농공단지 업체 제품 사용 및 사급을 관급자재로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4-3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 적용

- (심사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면 200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도로공사 1㎞이상 신설·확장 등)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일정수량 이상(사용량의 15% 이상)의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 보조기층용 골재에 대해 보조기층용 골재에서 순환골재로 조정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5 설계내역서 단위수량 표기 오류 사례

- (심사기준) 설계내역서 작성 시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거 산출하고 수량산출,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에 대한 규격, 단위는 서로 일치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00보행환경 조성사업 중 콘크리트 포장 및 보도부 석재 판 붙임 부분에 대한 노반 고르기 및 다짐수량 산출 단위가 ㎡로 산정되어 있으나 내역서 수량 기입 시 a단위에 ㎡로 산출된 수량을 그대로 표기하여 100배에 달하는 착오수량 발생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6 도내 생산자재 반영을 통한 원가절감 사례

6-1 수목 및 초화류 구입단가 조정

- (심사기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조달청의 가격정보, 일반 물가정보지, 견적 등에 의거하여 성능이 같은 동일품목의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가자재 가격을 반영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수목 및 초화류의 구입를 일반 물가정보지에 게재되어 있는 타 지역업체 고시단가를 반영하였으나, 수목(樹木)단가의 경우 조달청 고시단가를 반영하고 초화류의 경우 가격정보에 게재된 도내 생산업체 단가를 반영한 결과 일부품목에서는 최대 4배 이상 과다한 금액이 반영되었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6-2 관거정비공사 주요자재 구입단가 조정

- (심사기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조달청의 가격정보, 일반 물가정보지, 견적 등에 의거하여 성능이 같은 동일품목의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가자재 가격을 반영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경우 PVC 소형우수받이 및 내충격 수도관 등이 조달에 고시되어 있는 타 지역업체 고시단가를 반영하였으나, 동일규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지역업체 조달 고시단가 반영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6-3 골재 구입단가 조정

- (심사기준)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의 경우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인근 지역의 견적가에 의존하고, 인근 지역 내 골재구입이 어려운 경우 현지 실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음.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관 기초 부설을 위한 모래구입 단가가 인근지역의 현장도착도 견적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도내 실거래가격(현지상차도)을 반영하고 모래 구입업체에서 현장까지 덤프(24TON)운반비용을 별도 계상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0백만원 절감

6-4 골재(骨材) 운반장비 조정

- (심사기준) 공사에 사용되는 덤프트럭 운반장비의 규격은 도로상태와 시공성, 시공규모, 현지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현장 인근은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는 왕복 2차선 도로이며, 공사차량의 통행이 대단히 양호한 구간임에도 골재 운반비용 산정시 골재원에서 덤프적재장비를 백호우 1.0㎥급으로 반영하고 15TON 덤프로 운반비용을 산정
- 양호한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덤프 적재장비를 로우더 1.72㎥급으로, 덤프 운반차량을 24TON으로 반영
- (심사결과)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7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정 설계 사례

7-1 하천공사 호안블럭 설치구간 조정

- (심사기준) 하천공사의 설계기준에 의하면 제외지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는 한계유속과 허용소류력 등을 감안하여 비탈면 보호공을 설계하여야 하며, 식생공을 제외하고는 계획 축제고 중 홍수위(H.W.L) 까지만 비탈덮기를 시행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 00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비탈사면 호안블럭 설치계획이 제방의 둑마루까지 반영되어 있어 계획 홍수위까지만 호안블럭을 설치하고 계획 홍수위부터 둑마루까지는 평떼식재로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0백만원 절감

7-2 교량 설계기준 적용 부적정

- (심사기준) 교량 설계에 있어 도로교 설계지침에 의하면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교통량이 많거나 중차량의 통과가 빈번한 특수 산업시설에 인접한 지방도,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 등의 경우에는 1등교(DB-24)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상의 교통량이 적은 구간 등에는 2등교(DB-18), 산간벽지에 있는 지방도나 시도 및 군도 중 교통량이 적은 곳에는 3등교로 설계되어야 하나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교통량이 적은 농어촌도로임에도 1등급 교량으로 설계되어 발주처와 논의한 결과 인근지역에 레미콘공장 등의 입주가 예정되어 중차량 등의 통행을 감안 2등급 교량으로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건 축 공 사

1.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적정 적용 사례 (2건)
2. 수량 산출의 부적정 사례 (2건)
3. 설계도서 작성의 부적정 사례 (3건)
4. 한옥공사의 설계도서 부적정 사례 (2건)
5. 자재선정의 부적정 사례 (2건)

1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적정 적용 사례

1-1 데크, 알루미늄쉬트 등 외장재나 바닥재 설치를 위한 틀 설치 시 표준 품셈 미적용

- (심사기준) 데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틀 설치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거나, 품셈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 공종의 품을 적용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0000조성공사 중 "데크 하지틀 설치공사"에 대한 대가기준으로 마루틀 설치, 마루널 깔기, 벽띠장 설치 등의 품셈 기준이 있는데도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노임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과다계상 하였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1-2 조립식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 단위적용 부적정

- (심사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조립식 강관동바리 설치기준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0지원센타공사 중 조립식 강관 동바리 설치기준에 대한 단위는 10공/㎥당 이므로 산출물량인 000㎥에 대하여 10분의1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산출물량을 그대로 표기하여 노무비 등 공사비를 10배 이상 과다계상 하였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2 수량 산출의 부적정 사례

2-1 내역서 작성 시 공종을 2중으로 중복계상

- (심사기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 산출을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0지원센타공사 중 "데크 하지틀 설치공사"를 위한 하지틀 공사비가 내역서에 포함되었는데도 데크 하지틀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별도 계상하여 중복된 공사비를 반영하였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2-2 내역서 작성 시 수량산출 오류로 물량 과다계상

- (심사기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0수산자원지원센타공사 중 샌드위치판넬 설치공사 물량산출 착오로 벽체용 샌드위치판넬 수량을 2중으로 계산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3 설계도서 작성의 부적정 사례

3-1 건물미관을 사유로 고급외장재를 2중으로 설계 반영

- (심사기준) 설계도서 작성 시 현장여건이나 건물용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0주민지원센타공사 중 외장과 단열을 겸한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면서도 외장재 위에 고가의 합성목재 루바를 중복 설치하도록 설계하여 공사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00군에서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붕이 콘크리트난간에 가려져 있어 지상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도 값비싼 수입합성목재를 사용하여 00백만원이나 과다 계상되었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3-2 견적가격에 의한 특허제품 반영

- (심사기준) 설계도서 작성 시 현장 여건이나 건물용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0박물관공사 중 특정회사의 특허제품인 석재벽화를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견적가격으로 000백만원을 과다하게 반영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일반 표준품셈적용으로 조정한 결과 000백만원을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시군 책임 하에 별도 발주토록 조치

3-3 설계편의를 위해 층수 및 건물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자재 반영

- (심사기준) 설계도서 작성 시 현장여건이나 건물용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0보관창고공사 중 창고부분은 층고가 높으므로 구조계산을 통하여 기둥과 보는 철골재를 사용함.
- 관리실부분은 층고가 낮고 철골기둥에 연결이 되어있으므로 기둥과 보를 창고와 같은 규격의 철골재로 사용할 필요가 없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을 절감

4 한옥공사의 설계도서 부적정 사례

4-1 목재치목의 설치품 조정

- (심사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문화재) 중 목재치목 기준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한옥공사 중 "목재치목"에 대한 일위대가 작성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문화재 품셈을 적용하고 있음.
- "목재치목"은 일반적으로 제재소에서 기계치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설계심사 요청함.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4-2 비노출 부분에 대한 고급자재 사용

- (심사기준) 설계도서 작성 시 현장여건이나 건물용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한옥주택공사 중 주방, 거실 등을 제외한 안방, 화장실 등은 별도의 중천장을 설치하므로 편백나무 등 고급자재를 중복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 천정 전체를 편백나무로 과다설계하여 심사요청함.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5 자재선정의 부적정 사례

5-1 국내자재를 배제한 수입산(독과점 품목) 자재사용

- (심사기준)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및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에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 적용토록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조성공사 중 콘크리트마감재로 사용하는 백색 콘크리트 안료(수입산, 독 과점품 00백만원) 및 목재 사이딩 외장재(00백만원)를 수입산으로 사용
- 독과점 품목이나 수입 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지역 업체 제품으로 변경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5-2 주요 구조부에 마감재 2중 계상

- (심사기준)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및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적용 하여야함.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000조성공사 중 주요구조체로 사용하는 기둥, 서까래, 샛기둥 등을 별도의 마감재(합판위 벽지, 강판)로 씌워서 마감하므로 고가의 자재(수입합성목재, 미송대패가공 등)가 필요 없는데도 과다 설계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함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1.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정적 적용 사례 (3건)
2. 건설공사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 조정 사례 (6건)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적용 사례 (2건)

1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정적 적용 사례

1-1 기계설비 배관공사 설치노임 조정

- (심사기준) 건설공사표준품셈(공사부분 개별직종 노임 해설)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000폐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배관 설치를 플랜트 공종인 플랜트배관공, 용접공 등 노임을 적용 산출 계상하였으나,
- "플랜트 공정"은 플랜트(철강, 석유,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 배관 또는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 작업 시 적용토록 되어 있어 플랜트배관공 등을 일반 배관공 등으로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 결과 0백만원 절감

1-2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적정품 반영

- (심사기준) 건설공사표준품셈(제Ⅱ편 1-1-3)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000폐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설치 노임 산출시 배관공, 용접공, 보통 인부를 M당으로 계상하여 2012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적용하였으나,
- 건설공사표준품셈(2013년 보완)에서 배관 노임 중 용접공이 M당에서 개소 당, 배관공 및 보통 인부 공량 조정된 품을 적용하여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1-3 표준품셈 신설에 따른 적정대가 반영

- (심사기준) 건설공사표준품셈(제Ⅱ편 1-1-3)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폐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배관공사시 슬리브 설치 노임 대가를 대한설비 건설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근거로 내역에 반영하였으나,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슬리브 설치 노임(기계Ⅱ-1-1-1)품이 신설되어 대한설비 건설협회 품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2 건설공사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 조정 사례

2-1 하수, 폐수처리시설 종합 시운전비 조정

- (심사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종합시운전 비용을 세부내역 없이 견적 금액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 종합시운전 비용 산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시운전 기간, 측정지점 및 항목, 시험 주기 등을 산출토록 명기되어 있어 운영지침에 맞게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2-2 가로등 설치사업 적정 조도 등기구 반영

- (심사기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행양부)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설계반영 시 과다 용량의 등기구를 설계에 반영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차량의 통행, 차선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조도를 계산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밝기를 지침에 맞게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2-3 태양광 발전시설을 의무시설로 착오 적용

- (심사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마을 임대용 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의무대상 사업으로 설계에 반영
- 임대용 주택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의무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설계 내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제외가능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0백만원 절감

2-4 하수, 폐수 처리시설 종합 시운전의 제경비 조정

- (심사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지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의 종합시운전비의 제 경비를 설계기준에 없는 150%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
- 하수, 폐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제 경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110 ~ 120%를 반영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요율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2-5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용 펌프 과다계상

- (심사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방재청)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0마을 임대용 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간이스프링쿨러 설비용 펌프 자재를 일반 펌프가 아닌 엔진 펌프로 설계에 반영하였음.
- 간이스프링쿨러 설비용 펌프중 엔진펌프는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간이스프링쿨러에 대해 용도에 맞게 일반 펌프로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2-6 전기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 부적정

- (심사기준) 건설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00초기우수처리시설 전기공사 원가계산 경비 중 환경 보전비를 반영
- 건설 산업 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서는 환경보전비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적용 사례

3-1 공기조화기, 물탱크 직접구매 대상품목 미반영

- (심사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23개 항목에 해당되는 공기 조화기, 물탱크 등을 관급자재로 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관급자재로 전환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3-2 냉난방기 직접구매 대상품목 미반영

- (심사기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 (심사내용) 00군에서 실시한 00건축 사업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23개 항목 중 냉난방기 등을 관급자재로 하지 않고 견적을 받은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관급자재로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용 역

1. 지반조사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의 착오 적용 사례 (1건)
2.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과다 적용 사례 (1건)
3. 폐기물처리 용역 운반비 조정 사례 (1건)
4.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동일과업 중복적용 (1건)
5. 하천관리기본계획 용역 비용과다 적용 사례 (2건)
6. 책임감리 용역 비용과다 적용 사례 (2건)
7.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른 설계비 조정 적용 사례 (1건)
8. 에너지사용계획 대가조정 적용 사례 (1건)
9. 시설물 유지관리 대가조정 적용 사례 (1건)

1 지반조사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의 착오 적용 사례

- (심사기준) 지반조사는 계획준비, 자료수집, 해석결과의 검토 및 보고서 집필 등의 **기술업무**와 현장수행, 보고서, 인쇄 등의 **조사업무**로 구분되며 이중 조사업무의 제 경비는 (직접비+간접비)의 25~50%, 기술료는 대가에 포함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000 실시설계용역의 지반조사는 표준품셈의 대가기준을 착오 적용하여, 제 경비를 노무비의 110%, 기술료를 (노무비+제 경비)의 20%를 적용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 원 절감

2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과다 적용 사례

- (심사기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강 자전거길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은 대상지역 주변이 전체가 농지로서, 산지·초지 관련서류의 작성대가는 불필요함에 따라 위 공종에 대한 대가 삭감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 원 절감

3 폐기물처리 용역 운반비 조정 사례

- (심사기준) 폐기물처리비는 (사)한국건설자원협회 고시단가를 적용, 운반비는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단가를 준용하며, 협회 고시 최소 운반거리(30km) 미만의 경우에는 단가산출을 통하여 적용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공공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 용역은 발주기관에서 운반비를 협회고시 30km단가를 적용하였으나, 7km 인근에 처리업체가 운영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운반비용 별도계상
- (심사결과) 위 단가산출 적용하여 00백만 원 예산절감

4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동일과업 중복 적용

- (심사기준)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단계의 영향검토를 시행토록 규정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00지구 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행정과 개발단계 계획을 동시 추진되는 내용으로 현지조사, 사업목적, 재해현황조사, 토질조사 등의 조사내용이 중복 적용되어 노무비와 그에 따른 제 경비 과다계상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 원 절감

5 하천관리기본계획 용역 비용과다 적용 사례

5-1 보정계수 착오 적용에 따른 조정

- (심사기준) 하천관리 기본계획은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하천편을 적용하여, 면적에 따른 보정계수$(A/100)^{0.55}$와 길이에 따른 보정계수(L/10)를 항목별로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에서 요청한 「00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은 면적과 길이 보정을 각각 시행하지 않고, 길이에 따른 보정계수만 적용함으로써 설계비 과다계상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0백만원 절감

5-2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법령 개정에 따른 조정

- (심사기준) 2012. 07. 2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해야 됨.
- (심사내용)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불필요한 전파 및 일조장해, 생활환경조사 등 대가를 삭감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토록 조정

6 책임감리 용역 비용과다 적용 사례

6-1 추정공사비 적용내역 조정 사례

- (심사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200억원 이상 책임감리 대상여부 검토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도서식수원개발사업 및 도서지역 상수도확충사업 통합 책임감리」 용역은 추정공사비 000억원을 적용하였으나, 공사분야 심사결과 000억원으로 증액 통보되어 추정 공사비 조정 적용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약 0백만 원 증액

6-2 공종 난이도에 따른 제경비 조정

- (심사기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따른 공종난이도 검토결과 상수도관거 공사는 단순공종, 식수원개발은 보통공종에 해당되며 난이도에 따라 대가를 구분 산정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도서식수원개발사업 및 도서지역 상수도확충사업 통합 책임감리」 용역은 난이도에 따라 구분 산정하지 않고 보통공종으로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제경비, 기술료 과다 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약 00백만 원 절감

7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른 설계비 조정 적용 사례

- (심사기준) 건설공사 등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비 적용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공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00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제시한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하여 00백만 원을 과다적용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약 00백만 원 절감

8 에너지사용계획 대가조정 적용 사례

- (심사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도시·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개발 시 에너지이용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에서 요청한 「00사업 경관설계 및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용역은 00지구 사업계획 변경과 00지구 신규 사업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주기관에서는 면적에 따른 보정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 후 예산액에 맞춰 임의로 추가보정을 실시
- 변경지구의 사업개요, 수요, 공급계획 등 기 조사된 항목의 조사비용은 감액하고, 신규지구에 대해 발주처 임의로 조정 적용한 보정계수를 정상적으로 적용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약 0백만 원 절감

9 시설물 유지관리 대가조정 적용 사례

- (심사기준)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은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원가 계산 기준을 적용, 청소용역은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용역비를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하여야함.
- (심사내용) 00에서 요청한 「00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분야별 노임과 수당을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적용하여 00백만 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 관리소장과 중복되는 업무의 시설팀장을 삭감하고, 시간당 최저급여로 적용된 미화원의 노임 단가를 청소용역 노임산정기준에 따라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약 00백만 원 절감

물품구매·제조

1.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정적 적용 사례 (3건)
2. 자재수량 및 규격산출의 부적정 사례 (1건)
3. 자재가격 적용의 부적정 사례 (2건)

1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적정 적용 사례

1-1 제작 · 설치 시 제조노임 적용 부적정

- (심사기준) 중소기업중앙회의 2013년 제조 노임 적용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제작·설치 시 '개량 부자 조립 품, 볼트 접합 품, SIS 비트 설치 품, 닻 현장설치 품 '등의 보통인부 노무비가 건설공사 노임 단가로 적용되어 제조 노임으로 조정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1-2 통합지주 이용간판 잡철물 제작설치 노임 조정

- (심사기준)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
- (심사 내용) 00시에서 요청한 통합 지주 이용간판 제작·설치 시 잡철물 제작 설치 품을 복잡공정으로, 터파기 설치품을 인력 터파기를 적용
- 잡철물 제작 설치는 기초 철근을 배근하는 작업으로, 보통공정으로 조정하고 터파기 설치품은기계 터파기로 반영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1-3 CCTV 구매·설치 시 노무비의 표준품셈 미적용

- (심사기준) 설치에 대한 전기·정보통신표준품셈 적용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매·설치 시 카메라 폴, 카메라 설치 노임에 대하여 견적단가로 산출 · 적용하였으나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에 따라 카메라 설치 시 노임에 대해서는 통신 설비공과 보통 인부 노임 품을 적용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2 자재수량 및 규격산출의 부적정 사례

- (심사기준) 물품의 제작·설치 시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치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자재 크기 및 수량을 산출 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부잔교 제작·설치 중 주요자재인 '도교 메인 프레임(STS ㄷ형강), 도교 구조용 STS 사각관 등이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과다 계상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3 자재가격 적용의 부적정 사례

3-1 CCTV 구매·설치 시 주요 자재의 최저가 미적용

- (심사기준) 자재가격 적용 순서는 ①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정보·시중 거래 공표가격을 우선 적용 ② 전문 가격조사 기관 공표 물가자료, 물가정보 적용 ③ 2인 이상 견적가격 중 최저가를 적용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매·설치 시 '접지용비닐 절연전선, 폴리에틸렌 케이블, 접지봉, 동피뢰침' 등의 자재가격이 조달청에 게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 단가를 반영하였음.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3-2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단가 최저가 미적용

- (심사기준) 자재가격 적용 순서는 ①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정보·시중 거래 공표가격을 우선 적용 ② 전문 가격조사 기관 공표 물가자료, 물가정보 적용 ③ 2인 이상 견적가격 중 최저가를 적용하여야 함.
- (심사내용) 00군에서 요청한 '파종기 등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시 2013. 4. 1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가격집에 게재된 가격과 견적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최저가로 구매해야 함에도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견적가만 조사하여 구입 가격 반영
- (심사결과) 위 공종에 대한 조정결과 0백만원 절감

시·군 심사사례

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 ○○둘레길 조성공사
3. ○○개선사업
4. ○○소득사업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5. ○○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
6. ○○신축공사 설계변경
7. ○○전시관 확장공사
8.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11. ○○환경정비사업(건축)실시설계 용역
12.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3.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조성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15. ○○세계유산등재 연구 용역
16. ○○관리계획 용역
17. ○○기반시설조성 실시설계 용역
18.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19. ○○침전조 설치 실시설계 용역

【토목공사】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개요

- 심사기관 : ○○시
- 심사일자 : **2013. 3.**
- 사업규모
  - 목　　적 : 주차장 조성
  - 규　　모 : 주차장 3,646㎡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81,160		238,060	43,100	15.3%

주요 심사내용

- 불필요한 배수 체계 삭제
  - 주차장이 일방향 편구배로 계획되어 표면수가 편구배를 따라 흘러 L형측구, 우수받이, 배수관로로 배수되므로 반대편 배수 체계(우수받이, 배수관로)는 불필요하여 삭제

- 경계용 U형 스텐볼라드 간격 과밀
  - 간격 확대로 설치수량 감 조정 : 0.3m → 1.4m

심사 착안사항

○ 현장여건 등 과다설계 검토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토목공사】

○○ 둘레길 조성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시
- 심 사 일 : **2013. 2. 15.**
- 사업규모
  - 목 적 : 시민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제공
  - 규 모 : 등산로 조성 L=12.5㎞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	절감액	⇒	절감률
2,346,652		1,898,123		448,529		19.11%

주요 심사내용

- 산책로 표준단면 조정
  - 표준횡단경사 : 0% → 4%(물고임 예방 등 배수원활을 위하여)
- 흙깍기 품 조정
  - 인력터파기 → 인력절취, 인력흙다지기 → 인력면고르기
    ※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
- 데크로드 설치 품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철골틀 설치
    ※ 근거 : 표준품셈 건축 15-5

- 안전휀스 설치품 조정 : **111,218**원/경간 → **108,483**원/경간

- 목교 설치 품 조정
  - H형강 설치 :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 조립설치
  - 난간용 목재 : 방부목 → 천연목재(부켈라)
  - 오일스테인칠 추가 반영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초화류 단가 조정
  - 물가자료, 물가정보 → 가격정보(관급자재로 조정)

- 폐기물 운반거리 조정 : **20**㎞이내 → **10**㎞이내
  ※ 실운반거리 적용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에 대하여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 현장 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 여부

【토목공사】

○○ 개선사업(교리지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군
- 심 사 일 : **2013. 6. 11.**
- 사업규모
  - 목　　적 : 도시계획로개설사업
  - 규　　모 : 도로 L=144m, 소공원1개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04,910		227,325	77,585	25.45%

주요 심사내용

- 퇴직공제부금비 공제
  - 제경비 요율 : 직접노무비 * 2.3% → 0%

  ☞ 심사후 결과금액이 3억원 미만

- 지장물 철거 및 토공 적용장비규격 조정
  - 장비규격 : 백호우 02 → 백호우 07적용

  ☞ 현장여건 고려 적용

- 소공원부지 암반추정선 삭제
  - 보링 미실시 및 노출 암반이 없음.

■ 콘크리트포장포설 시공량 100% 적용

- 일시공량 : 50% → 100%

☞ 공사현장 입.출구가 있으며, 중간에 소공원부지 회차공간이 있어 시공량 50%적용 과다.

■ 소공원 배수공덮개 자재 조정

- 자재 : 우드그레이팅 → 일반배수용그레이팅

☞ 시공성 및 경제성 고려(소공원내 배수로 덮개용)

■ 산철쭉 식재품 조정

- 조 경 공 : 0.07인/주 → 0.01인/주
- 보통인부 : 0.06인/주 → 0.004인/주
- 단　　가 : 1,900원/주 → 1,545원/주

☞ 전석공 사이식재시에는 4주/㎡ 수량 적용

■ 느티나무 규격 및 단가 조정

- 규　격 : H4.0, W25 → H4.0, W18
- 단　가 : 1,649,000원/주 → 731,818원/주

■ 중기운반 대수 조정

- 지주식 장비 콘크리트펌프차 삭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에 콘크리트펌프차 미적용

심사 착안사항

○ 공사금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에 대하여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을 비교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건축공사】

○○ 소득사업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시
- 심 사 일 : **2013. 2. 28.**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도로개설 L=232m, B=6.0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52,921		424,824	28,097	6.2%

주요 심사내용

- 품목별 적용수량 변경 및 조정

품 목	증 · 감 내 용		비고
	설계내용	심사내용	
철근가공	현장가공	공장가공	
철골가공조립	철골공 4.628인	철골공1.54인	'13년 보완
철골세우기	철골공 3.2인	철골공 3인	
거푸집	합판거푸집 5회	유로폼	
토공 잔토처리	백호우 0.7㎥ 덤프 15톤	백호우 1.0㎥ 덤프 24톤	
터파기 및 도메우기	기계80%, 인력20%	기계90%, 인력10%	
쇄석부설	백호우 80% 인력20%	기계90%, 인력10%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건축공사】

○○ 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군
- 심 사 일 : **2013. 05.**
- 사업규모
  - 목 적 : 가축방역장비 보관창고 신축
  - 규 모 : 부지면적 1,990㎡, 건축면적 439.2㎡, 1층 철골구조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25,000		210,200	14,800	6.6%

주요 심사내용

- 철골 가공조립(공장생산)품 조정
  - 기본철골공수 2.48인 → H형강부재 제작시 기본 철골공수×0.71로 조정
- 먹매김 품 중복 적용 조정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품에 먹매김 품 포함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강관조립말비계 설치 품 적용 조정
  -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 대가 공기에 대한 손율 [6개월] → [3개월]로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① (재료비+직접노무비)×안전관리비율×1.2배한 금액
    ②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안전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①, ②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 ※근거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건축공사】

○○ 신축공사 설계변경

사업개요

- 요청기관 : ○○군
- 심 사 일 : **2012. 12. 29.**
- 사업규모
  - 목　　적 : 건축연면적 증가 및 마감자재 변경
  - 규　　모 : 당초 2,059.72㎡→ 변경 2,119.67㎡(59.95㎡)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18,559		187,305	31,254	14.3%

주요 심사내용

- 자재변경(수입대리석→타일)
  - 폴리싱타일 붙임 ㎡당 223,002원 → 126,290원
- 설계도서 산출내역 검토
  - FERRO DECK 수량조정 2,460㎡ → 1,756㎡
  - 백업제 수량조정 2,868㎡ → 2,059㎡
  - DECK PIN 수량조정 11,950㎡ → 8,571㎡
  - DECK 청소 수량조정 2,460㎡ → 1,756㎡
  - 도기질타일 수량조정 423.65㎡ → 385.65㎡
  - 타일압착붙임, 벽 수량조정 411.31㎡ → 373.31㎡ 등.

심사 착안사항

○ 공사금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재 적용여부
○ 설계도서 수량산출 검토

【건축공사】

○○ 전시관 확장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군
- 심 사 일 : **2012. 11.**
- 사업규모
  - 목　　적 : 관광객 불거리 제공 및 문화시설 확충
  - 규　　모 : 건축 1동(연면적 354.4㎡)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083,610		1,054,000	29,610	2.7%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 하도급 지급 보증수수료 0.05% → 0.07% 조정
- 철근 콘크리트공사
  - 합판거푸집 3회와 유로폼 중복 산출된 합판거푸집 수량 제외(501㎡)
- 조적공사
  - 와편 치장쌓기를 기존 전시관 외벽과 동일한 전벽돌쌓기로 변경
- 도장공사
  - 주요 구조가 목재 건물로 화재에 강한 방염재 도포 검토

- 목구조공사
  - 누락된 보 맞춤 및 설치비 추가 반영
  - 기둥 보 등 설치시 크레인 사용시간 조정 240시간 →160시간
- 지붕공사
  - 누락된 동판 후레싱 추가 반영

심사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 주요자재 지역생산품 적용

【용 역】

○○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시
- 심 사 일 : **2013. 1. 10.**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 A=388,463㎡ 측량 및 토질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500,000		1,356,500	143,500	9.57%

주요 심사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일위대가 조정(방재분야 표준품셈)
  - 지구내 하천 미포함 하천재해 소요인력 삭제

- 토질조사
  - 조사업무비에 포함된 품으로 이중계상된 지표지질조사, 해석비, 기술료 삭제
  - 보오링 20공 → 16공 적용
    · 도로연장 200m → 300m에 1공 적용
  - 조사업무 난이도 감안 적용 소요인력 요율 변경적용 60 → 50%

단계별 집행계획 과다적용

- 측량 및 토질조사와 중첩된 현황조사 품 삭제
- 단계별 집행계획 및 주민설명회 품 30% 조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참고)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조정

- 실시설계 요율 1.4 → 1.3 변경적용
  · 기본 및 실시설계 병행에 따른 요율 조정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방재분야, 국토개발계획 및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정 적용여부

【용 역】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시
- 심 사 일 : **2013. 9. 11.**
- 사업규모
  - 목 적 : ○○○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관리
  - 규 모 : ○○만, ○○만 일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	절감액	⇒	절감률
198,225		180,538		17,687		8.92%

주요 심사내용

- 본 용역의 자료는 '국가기록원 발간 등록' 대상임.
  - 용역 수행지침 일부 내용 수정, 용역보고서 작성 후(발간 등록번호 기재 후) 관련기관 제출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인건비 산출내용 조정
  - 단가*참여인원*과업기간 → 단가*참여인원*과업기간*참여율
  - 보조원 조정 : 6인 → 3인
  - 퇴직급여 충당금 삭제 : 과업기간 1년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근로자토직급여보장법

경비 조정

- 현지 자료 조사 기간 : 8개월 → 6개월(예정공정표에 의함)
- 연구원 회의비 삭감 : 1,000,000원 → 0원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 용역결과물 인쇄비 조정

  ㄱ) 표지(아트지 250g) : 146,120원/연 → 101,553원/연

  ㄴ) 속지(아트지 100g) : 57,460원/연 → 39,935원/연

  ※ 견적가 → 물가정보

- 인쇄판대(ps판 소부) 단가 조정

  ㄱ) 본문(자료집) : 16판 → 20판

  ㄴ) 본문(화보집) : 16판 → 19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 자재단가에 대하여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 검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검토

【용 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폐기물처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시
- 심 사 일 : **2013. 3. 19.**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폐콘크리트 2,220톤, 폐아스콘 1,137톤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9,770		78,920	40,850	34.1%

주요 심사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조정

품 목	적 용 내 용		증, 감	비고
	설 계	심 사		
폐기물 운반	운반덤프 14톤 운반거리 30km	운반덤프 24톤 운반거리 20km	감 20,460천원	
폐아스팔트	19,819원/톤	13,873원/톤	감 6,760천원	
폐콘크리트	18,244원/톤	13,776원/톤	감 9,918천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용 역】

○○ 환경정비사업(건축) 실시설계 용역

사업개요

- 심사기관 : ○○시
- 심 사 일 : **2013. 03 .**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사업내용 : 마을회관 재건축 3동 실시설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8,358		26,500	1,858	6.6%

주요 심사내용

- 건축 실시설계 용역비 재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제16조 근거(별표4)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

- 손해배상보험료 삭제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3)제3조 2호에 의거 제외대상임

● 인쇄비 삭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4)에 따른 공사비란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보고서 등에 필요한 인쇄비 등이 포함됨

심사 착안사항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건축사법

【용 역】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군
- 심 사 일 : **2013. 1.**
- 사업규모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사업내용 : 산성길 L = 4.5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38,282		115,021	23,261	감 16.82%

주요 심사내용

- 현장 지형을 고려한 측량 일위대가 조정
  - 노선측량의 교외촌락지 → 농지, 구릉지로 대가 조정
  - 노선측량의 제경비 및 기술료 누락분 추가 계상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 현장 지형을 고려한 측량대가 산정여부

【용 역】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군
- 심 사 일 : **2013. 02.**
- 사업규모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과업내용 : 생태습지원 2개소 조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93,222		189,178	4,044	2.1%

주요 심사내용

- 현장에 맞는 측량 일위대가 조정
  - 지형 및 작업량에 따른 기준점측량 계수 적용
    -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 산지(1.1) → 평지(1.0)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30점(1.8) → 150점(1.0)

    ※ 설계 구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지 측량은 불필요

- 중복 계상된 경비 조정
  - 도서인쇄비 중복적용 감액
    - 인쇄비 1,675,000원 → 0원(△1,675,000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기준에 따라 인쇄비 포함

- 손해보험료 산출 요율 적용 조정

-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제요율 공사종류를 도로공사에서 관람집회 시설공사로 적용
  · 공제요율 0.865% → 0.577%적용

부가가치세 요율 적용 오류 조정

- 용역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부가가치세 요율 산정

심사 착안사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인쇄단가 적용 적정여부 검토
○ 현장 지형을 고려한 측량대가 산정여부

【용 역】

○○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군
- 심 사 일 : **2013. 4. 24.**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사업내용 : 환경영향평가 123,000㎡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90,000		186,000	4,000	2.1%

주요 심사내용

- 이중부과된 부가가치세 조정
  - 직접경비(해양수치모델링) 단산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제외
    34,000천원/식 → 30,600천원/식 (△ 3,400천원)
    ※ 해양수치모델링 단가산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있고 제잡비 산출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있어 단산 부가가치세 제외
- 직접경비 오기 적용된 단가 일부조정
  - 지표수질측정, 토양측정 분석비 단가조정 16항목
    ※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적용

심사 착안사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적정 적용여부
○ 현장 여건을 고려한 측정수수료 산정여부

【용 역】

○○ 세계유산등재연구 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군
- 심 사 일 : **2013. 2. 20.**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내용 : 학술연구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0,000		79,600	10,100	11.32%

주요 심사내용

- 세미나, 자문회의 단가조정
  - ○ 여비단가 : 100,000원/일 → 45,000원/일(대학교수급)
    - ☞ 관련근거 : 공무원여비규정(일비:20,000원,식비:25,000원)
- 연구조사비 중복부문 공제
  - ○ 잠정목록신청서작성(국문, 영문) → 직접인건비와 중복
- 해외조사비용 조정
  - ○ 진행비 공제
    - ☞ 운임(항공비), 체류비, 임차(현지차량)비 외에 비용은 공제

심사 착안사항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산정 적정 적용여부

○ 원가계산 비목별 최소한 필요항목 반영여부

【용 역】

○○ 관리계획 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군
- 심 사 일 : **2013. 1. 17**
- 사업규모
  - 해남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1식
  - 용 역 비 : 574,520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574,520		474,130	100,390	17.47%

주요 심사내용

- 제경비율 조정 :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5% → 110%, △5%
- 기술료 조정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20~40%**
  - 30% → 20%, △10%
- 기초조사,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직접인건비 조정
  - 기존 조사성과 활용도에 따른 보정 70% → 50%, △20%
  - 해남군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2011년 수립 3년미만으로 50%적용
- 보정계수 조정 : 해남군 인구 **78,154명** 적용**(2012.12.31)**
  - 보정계수 0.674 → 0.668 △0.006%
  - 해남군 인구 80,394명 → 78,154명 △2,240명

심사 착안사항

○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적용

【용 역】

○○ 기반시설조성 실시설계 용역

사업개요

- 심사기관 : ○○군
- 심사일자 : **2013. 04. 09.**
- 사업규모
  - 목　　적 :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 규　　모 : 도로확포장 L=0.53km, B=9.0m , 주차장조성 A=16,600㎡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7,000		105,325	11,675	9.98%

주요 심사내용

- 토질조사 및 시험에 반영한 제경비 **10%** 삭감
  - 표준품셈에 의하면 보링품에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므로 제경비 삭감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삭감
  -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대상은 면적 30,000㎡이상이 해당되나 본 사업장 면적은 26,000㎡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아님.
- 실시설계 용역비 삭감
  - 직선보간법 산식 적용 착오로 과다 계상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및 표준품셈 유권해석등 검토
○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여부 검토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직선보간법 산식 검토

【용 역】

○○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사업개요

- 심사기관 : ○○군
- 심사일자 : **2013. 3.22.**
- 사업규모
  - 목　　적 :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제작
  - 규　　모 : 군청사외 27개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7,315		42,300	5,015	10.5%

주요 심사내용

- 일일석면조사 능력 건축물 면적 적용 조정
  - 전체면적에 적용(1인/1,500㎡)
    ☞ 건물면적 1,200㎡/1,500㎡= 1인 적용을 0.8인으로 적용

- 석면지도(도면) 작성비에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중복 계상
  - 작성비에는 인쇄비,복사비,제본비가 포함되어 있음.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검토
○ 현장여건 등 과다설계 검토

【용 역】

○○ 침전조 설치 실시설계 용역

사업개요

- 심사기관 : ○○군
- 심사일자 : **2013. 1. 10.**
- 사업규모
  - 목　　적 :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전조 및 소독조 실시설계
  - 규　　모 : 실시설계, 보링 2개소, 측량 L=280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59,678		54,788	4,890	8.2%

주요 심사내용

- 조사측량 항목중 중심선측량 제외
  - 측량비 항목중 노선선점, 중심선측량 0.28km 감 조정
  - 조정사유 : 침전조 및 소독조 설치를 위하여 측량비 항목으로 노선선점,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평판측량을 설계내역에 반영 하였으나, 노선선점 및 중심선측량은 도로·철도 등의 설계에 실시하는 측량으로 본 용역의 측량 항목에서 제외함

심사 착안사항

○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지식경제부공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여부

Ⅳ 부 록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 예정가격 작성 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7. 2012년 전라남도 자체 적산기준 마련
8. 공사용 주요자재 도내 생산업체 현황
9. 계약심사 관련 추천 사이트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전라남도규칙 제2997호(2013. 3. 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도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본청의 실·과·담당관실
   나. 도의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다. 도 의회사무처
   라. 도내 시·군
   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바. 도 지방공기업
   사. 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재배정사업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시·군비사업에 한한다.

1. 공사분야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용역분야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 (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4. 협상에 따른 계약 등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은 별표2와 같다.

제6조 (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실시) ①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도에 전라남도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구 분	심사내용	심사대상 사업 범위	비고
공 사	원가심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한함
	저가심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PQ심사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 및 기관 에서 실시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기술 등	·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검토	
용 역	원가심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 품 제조구매	원가심사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별표2】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연번	분야	사 업 명	심사제외 사유	비고
1	용역	·행사 용역	출연자 및 홍보매체에 따라 가격 상이	
2	용역	·디자인 개발	창작 및 예술품 거래실례가격 적용이 곤란	
3	용역	·지적측량 수수료	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국토해양부 예규 규정)	
4	용역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국토해양부 예규 규정)	
5	용역	·감리용역 대가 (농어촌공사 위탁)	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규정)	
6	물품	·소방헬기 및 부품구매	해외 특정 제작사 제품으로 심사 곤란	
7	물품	·유류(가스) 구매	한국석유공사에서 매주 가격 고시	
8	물품	·농·축·수산물 구매 (식재료 포함)	농·축수산물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9	물품	·동물 구매	동물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10	물품	·예술공연용 의상 및 무대시설 제작	예술창작품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11	물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예술품 구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2012. 12. 24)	
12	물품	·시험연구용 원자재 (귀금속 등) 구매	주기적 국제시세 반영 및 환율 적용으로 심사 곤란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각각의 내역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 용역비: 천원	· 금회 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천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 기타 참고사항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천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산출금액	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 · 양면), 내지 도(단 · 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산출금액	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table>
<tr><td>공 사 명</td><td colspan="5"></td></tr>
<tr><td>요청기관</td><td colspan="2"></td><td>담당자</td><td></td><td>전화
번호</td></tr>
<tr><td>(최초)계약금액</td><td colspan="3">천원</td><td>(직전)
계약금액</td><td>천원</td></tr>
<tr><td>사업 개요</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설 계 자</td><td>업체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td></tr>
<tr><td>책 임
기술자</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6">○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td></tr>
<tr><td colspan="6">○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td></tr>
</table>

2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 7. 1.)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 ·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 ·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 · 구매 · 수리 · 보수 · 복구 · 가공 · 매매 · 공급 · 사용 등(이하"제조 · 구매 · 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 ·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 · 구매 · 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 구매 · 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 구매 · 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 · 도와 시 · 군 · 구는 시 ·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 · 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 · 구매 · 용역 ·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 ·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 ·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 ·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 · 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 · 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 · 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 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

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 ·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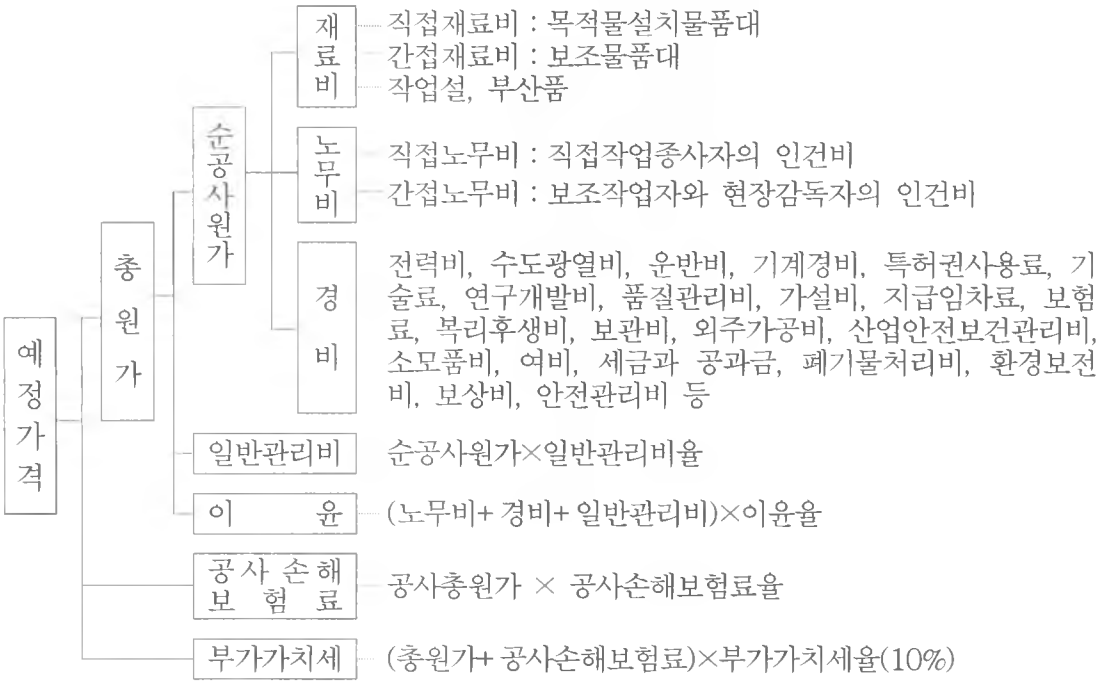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1)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

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 반재료 ·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 ·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

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

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 ·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 · 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 구 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3년도 기준단가이며, 201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			
이 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3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0호(2013. 4. 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공사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감리용역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관리방식" 이란 건설현장의 공사관리방식을 말하며, 직접감독, 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한다.
2. "직접감독"이란 해당 건설공사 발주청 소속 직원이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절차) ① 발주청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공사관리 인력 소요량에 대하여 발주청의 역량을 검토한 후 공사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를 통하여 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주청의 장은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별표 1과 같다.

1. 공사발주물량 산출
2. 공사특성 평가
3. 소요인력 산출
4. 가용인력 산정
5. 가용인력의 역량 평가
6. 공사별 공사관리 방식 선정
7. 공사관리 방식에 따른 발주청 인력 투입 기준 설정
8. 공사관리 방식 배분에 따른 소요 인력 산정
9. 소요인력과 가용인력의 비교 후 공사별 공사관리 방식 조정
10. 공사별 최종 공사관리 방식 선정

제5조(공사 발주물량 산출 및 공사특성 평가) ① 공사발주 물량은 매년 사업 계획 수립 시 별표 2에 따라 책임감리 의무 대상 사업과 그 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사업의 추가, 취소 등으로 공사 발주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 발주물량을 재산출할 수 있다.

② 공사 특성 평가는 시설물 특성 60퍼센트, 사업여건 40퍼센트의 비율로 평가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배점 기준을 10퍼센트 이내에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시설물 특성은 공종 난이도와 공사 난이도를 검토하여 별표 3과 같이 평가한다.

④ 사업여건은 공사비 규모·공사기간·민원발생 가능성·유사 공사 경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소요인력 산정 및 가용인력 역량평가) ① 발주청의 장이 관리해야 할 공사 물량에 대한 공사관리 소요인력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해당 공사 규모 및 난이도를 검토하여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② 공사관리 소요인력 산정 시 연도별 공사관리 소요인력은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산정하며, 연도별 공사관리 소요인력은 총공사비에 대한 연도별 예산의 비율로 결정한다.

③ 공사감독 가용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1. 공사감독 가용인력 수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직렬 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기술직 중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로 하며, 보직자와 일반 서무업무 등 일반 관리자는 제외한다.
2. 사업행정, 예산, 계약 , PQ 심사 등 발주청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업무자의 비중은 발주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 공사감독 업무와 내부업무의 비중을 계산한 후 발주청 별로 운용비율을 결정한다.
3. 가용인력은 공사감독 가능인력 수에 공사감독 업무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며, 연도별 공사감독 가능인력은 가용인력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가용인력 역량평가는 경력과 직급을 검토하여 평가하며, 경력등급 환산점수와 직급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결정한다. 가용인력 역량 평가 시 경력, 직급, 등급별 환산점수, 최종등급 분류, 보정계수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제7조(공사관리방식 배정) ① 공사별 공사관리방식은 공사특성 및 가용인력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각 공사에 대하여 적합한 공사관리방식을 배정한다.

② 공사난이도에 따른 공사관리방식은 별표 8에 따라 그룹별로 최선, 차선의 공사관리방식을 정하되, 해당 발주청의 역량 및 여건에 따라 발주청별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한다.

③ 인력 투입은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 공사관리방식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치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청은 시공감리의 경우 전체 공사관리 인력 중 30퍼센트의 인력을, 검측감리의 경우 전체 공사관리 인력 중 60퍼센트의 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영 제5조에 따른 부분책임감리의 경우 인력 배치기준은 부분책임감리 부분과 동일한 규모 및 난이도의 책임감리 시 감리원 배치기준을 준용하며, 부분책임감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다.
3. 책임감리 시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 투입 기준은 0.2~0.4인/건 이내에서 발주청별로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해당 년도 예산 규모의 변동, 저가 낙찰, 공정추진이 시급한 현장 등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인력 투입 기준을 수립 후 적용 한다.

④ 공사별 공사관리방식 선정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규공사에 대한 공사관리 소요인력을 산정하며, 총 소요인력은 기존 진행 중인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신규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합하여 산출한다.

제8조(공사별 공사관리방식 확정) ① 공사별 공사관리방식 확정은 총 소요인력 검토 결과 공사감독 가용인력을 비교하여 소요인력이 가용인력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공사관리방식을 조정하여 발주청의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공사관리방식을 확정한다.

② 공사별 최종 공사관리방식은 책임감리 의무 시행 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관리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12.13)

이 기준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리용역 적정성 검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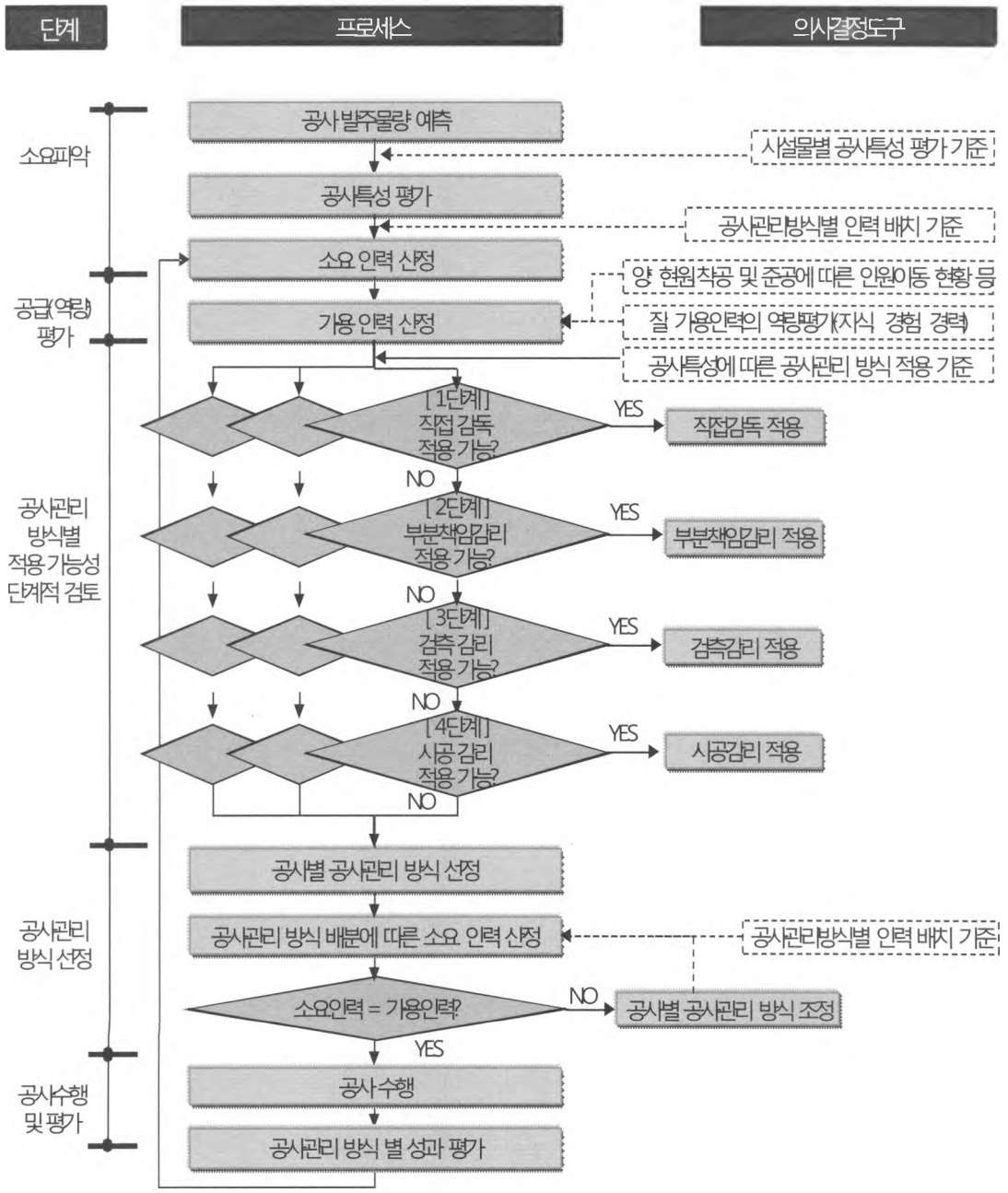

[별표 2] 공사 발주물량 검토서

총 계 : OO 건 OOO억원					
책임감리의무대상 사업 소계 : OO 건 OOO억원					
공사명	발주시기	공사기간	공사비	공종	비고
공사 1					
공사 2					
…					
공사 N					
책임감리의무대상 이외 사업 소계 : OO 건 OOO억원					
공사명	발주시기	공사기간	공사비	공종	비고
공사 1					
공사 2					
…					
공사 N					

주1) 발주시기는 공사입찰 공고 시점으로 한다.

주2) 공사기간은 공사착공부터 예정준공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시설물특성 평가 배점 기준

평가기준	배점 기준	비고
공종 난이도 (30)	복잡 : 30 보통 : 20 단순 : 10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상의 공종난이도 적용
공사 난이도 (30)	1종 : 30 2종 : 20 기타 : 10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법령상의 시설물 분류 기준 활용

[별표 4] 사업여건 평가 기준

구 분	평가 기준		
배 점	10	5	2
① 공사비 규모 (10)	•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② 공사기간 (10)	• 3년이상	• 1년이상 3년미만	• 1년미만
③ 민원 발생 가능성 (10)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④ 유사 공사 경험 (10)	•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다.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경험이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주로 수행하는 종류의 공사이다.

[별표 5] 소요 인력 산정

시기	규모 (공사비)	공종 난이도	공사기간	공사관리 필요인력 (인·월)	비고
공사 1					
공사 2					
공사 3					
…					
공사 N					
계					

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공종 난이도 및 감리원 배치 기준

[별표 6] 연도별 소요 인력 산정

공사명	총공사비 (공사기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공사 1	OOO억원 ('10~12)	연도별 공사비		불확실	불확실	
		연도별 공사비에 따른 필요인력량	OO인월			
공사 2	OOO억원 ('11~13)	연도별 공사비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연도별 공사비에 따른 필요인력량				
…						
…						
공사N	OOO억원 ('10~13)	연도별공사비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연도별 공사비에 따른 필요인력량	OO인월			
계			OO인월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별표 7] 가용인력 역량 평가 기준

1. 경력이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설기술 및 관리 관련 경력 년수를 말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6이상	16미만 12이상	12미만 8이상	8미만 4이상	4미만
A	B	C	D	E

2. 직급이란 해당 발주청내 직급을 의미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공무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공기업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급	A	B	C	D	E

3.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다.

등급	A	B	C	D	E
환산점수	10	8	6	4	2

4. 가용인력 역량의 최종 등급은 경력과 직급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경력등급 환산점수와 직급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결정하며, 점수에 따른 최종등급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최종등급	A	B	C	D	E
최종점수	8이상 10미만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2초과 4미만	2이하

5. 발주청 인력 투입 시 발주청 인력의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리원의 등급에 준하여 투입하도록 한다.

발주청 직원의 등급	A	B	C	D	E
감리원 등급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6.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은 감리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가용인력 산정 시 아래와 같이 보정하여 산정한다.

구분	A, B	C, D	E
보정계수	1.2	1.0	0.8

[별표 8] 공사관리 방식 선정 기준

구분	점수분포	공사관리방식	
		최선	차선
A그룹	70점 이상	책임감리	시공감리
B그룹	60~70점	시공감리	검측감리 또는 책임감리
C그룹	50~60점	검측감리	직접감독 또는 시공감리
D그룹	50점 미만	직접감독	검측감리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2012. 7.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

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

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100억원 이하	1.51	3.01	1.41	5.93
200억원 이하	1.46	2.91	1.37	5.74
300억원 이하	1.45	2.90	1.35	5.70
500억원 이하	1.41	2.84	1.33	5.58
1,000억원 이하	1.40	2.79	1.30	5.49
2,000억원 이하	1.38	2.76	1.28	5.42
3,000억원 이하	1.37	2.72	1.25	5.34
5,000억원 이하	1.34	2.70	1.23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times (\text{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times (\text{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times (\text{공사비})^{-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4.09	12.28	2.70	19.07
1억원 이하	3.84	11.55	2.53	17.92
2억원 이하	3.06	9.18	2.02	14.26
3억원 이하	2.79	8.38	1.84	13.01
5억원 이하	2.54	7.59	1.68	11.81
10억원 이하	2.24	6.71	1.48	10.43
20억원 이하	2.07	6.16	1.36	9.59
30억원 이하	1.99	5.95	1.31	9.25
50억원 이하	1.95	5.85	1.29	9.09
100억원 이하	1.89	5.70	1.25	8.84
200억원 이하	1.84	5.53	1.22	8.59
300억원 이하	1.82	5.49	1.21	8.52
500억원 이하	1.80	5.37	1.18	8.35
1,000억원 이하	1.76	5.30	1.16	8.22
2,000억원 이하	1.74	5.20	1.14	8.08
3,000억원 이하	1.72	5.11	1.13	7.96
5,000억원 이하	1.70	5.05	1.11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5천만원 이하	3.12	8.01	14.54
1억원 이하	2.91	7.46	13.59
2억원 이하	2.76	7.06	12.60
3억원 이하	2.60	6.66	11.59
5억원 이하	2.47	6.32	10.93
10억원 이하	2.30	5.89	10.07
20억원 이하	2.18	5.58	9.54
30억원 이하	2.05	5.26	8.98
50억원 이하	1.95	4.99	8.58
100억원 이하	1.81	4.65	8.05
200억원 이하	1.72	4.41	7.69
300억원 이하	1.62	4.16	7.31
500억원 이하	1.54	3.94	6.99
1,000억원 이하	1.43	3.67	6.58
2,000억원 이하	1.36	3.48	6.30
3,000억원 이하	1.28	3.28	5.99
5,000억원 이하	1.21	3.11	5.73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19.2151 \times (\text{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times (\text{공사비})^{-0.1025}$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times (\text{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별표 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 잡
토 공	가. 흙깍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 량 토 치 환 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지 반 개 량 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복 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복 잡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수계획도	복 잡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복 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 잡
구조물공 (공통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복 잡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보 통
배수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사. 옹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 잡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단 순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보 통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교량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 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보 통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복 잡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널공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가시설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복 잡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상하수 도공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보 통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시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553호(2012. 8.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요청) ①건축사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또는지내력검사서
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3. <삭 제>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건축사가 요청자료를 직접 입수제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 가. 기획업무
   - 나. 건축설계업무
     - 1) 계획설계
     - 2) 중간설계
     -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9) 상세시공도서 작성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12)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따른 설계감리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6조(설계업무) ①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호가목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④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⑤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0	25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50	60
계	100	120

2. 타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5	30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45	55
계	100	120

제7조(공사감리업무) ①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조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10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대 가 = A(1+ 1/2+ 1/3 ·····+ 1/n)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n : 동일한 설계에 따른 동수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③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④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3. 제5조제1호라목 1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4. 제5조제1호라목 13)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

나. 2등급 : 대가의 6.5%

다. 3등급 : 대가의 6%
라. 4등급 : 대가의 5.5%
마. 5등급 : 대가의 5%

5. 제5조제1호라목 14)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5%
나. 2등급 : 대가의 7%
다. 3등급 : 대가의 6.5%
라. 4등급 : 대가의 6%
마. 5등급 : 대가의 5.5%

6.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제5조제1호라목 12)부터 14)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 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⑤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2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발주자는 건축사에게 제6조제5항에 따른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3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한다.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

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3.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4. 발주자의 요청으로 외국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를 함으로써 업무가 추가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증액한다.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①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5조(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산정) 제5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6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4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제17조(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text{요 율} = \frac{\text{평균급여액} \times \text{소요인원}(1+\text{제비율})}{\text{공사비}}$$

·평균급여액 :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

·제비율 : 제18조에서 정하는 제경비와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

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기준의 폐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70호, 2002.10.1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859호, 2009.9.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750호, 2011.12.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553호, 2012.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I	II	III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각층 평면도		○	○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	○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

※대가의 구분 : I - 3%, II - 5%, III - 8%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도	수직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분야 계획검토	차음·방음, 방진				○
		무대·조명				○
		전시·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 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전력 계통도		○	○
		조명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	○
	평면도	조명 평면도			○
		소방 평면도	○	○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 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바.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
	식재 평면도			○	○
	단면도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 ~ 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 ~ 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 ~ 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 ~ 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 ~ 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 ~ 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 ~ 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 ~ 1/50			○
		샷다 상세도	1/5 ~ 1/50			○
		핏트 상세도	1/5 ~ 1/50			○
		발코니 상세도	1/5 ~ 1/50		○	○
		출입구 상세도	1/5 ~ 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 ~ 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 ~ 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 ~ 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 ~ 1/50		○	○
		창호 평면도	1/5 ~ 1/50		○	○
		창호 상세도	1/5 ~ 1/50			○
		창호 입면도	1/5 ~ 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 ~ 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 ~ 1/50			○
		천정 상세도	1/5 ~ 1/50			○
		부분 상세도	1/5 ~ 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 ~ 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 ~ 1/50			○
		로비 전개도	1/5 ~ 1/50			○
		주요실 전개도	1/5 ~ 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 ~ 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 ~ 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 ~ 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 ~ 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 ~ 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 ~ 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 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 ~ 1/200	○	○	○
	구조 단면도		1/30 ~ 1/200	○	○	○
	기초일람표		1/30 ~ 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 ~ 1/100		○	○
	기둥 일람표		1/30 ~ 1/100	○	○	○
	보 일람표		1/30 ~ 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 ~ 1/100	○	○	○
	옹벽 일람표		1/30 ~ 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 ~ 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 ~ 1/100	○	○	○
	주심도		1/30 ~ 1/200	○	○	○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 ~ 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 ~ 1/50	○	○	○
		코아 상세도	1/30 ~ 1/50	○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 ~ 1/50	○	○	○
		보접합 상세도	1/5 ~ 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 ~ 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 ~ 1/50	○	○	○
		STUD BOLT 설치도	1/5 ~ 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 ~ 1/50	○	○	○
	잡 상세도		1/5 ~ 1/50			○
	가구도		1/5 ~ 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 ~ 1/50			○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 ~ 1/50			○
		캐노피	1/5 ~ 1/50			○
		파라펫	1/5 ~ 1/50			○
		TRUSS	1/5 ~ 1/50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 ~ 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 ~ 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 ~ 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 ~ 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 ~ 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 ~ 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각종 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 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종·횡 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 ~ 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 ~ 1/50	○	○	○
	포장 상세도		1/5 ~ 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 ~ 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 ~ 1/100	○	○	○
	옹벽 상세도		1/5 ~ 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 ~ 1/100			○
	담장 상세도		1/5 ~ 1/100			○
	방음벽 상세도		1/5 ~ 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 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 ~ 1/100			○

바. 조 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 종별 / 도서의양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공 사 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 개 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 직접구매 대상범위

○ (대상품목) 총 123개(고무발포단열재, 레미콘, 아스콘 등)

○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 공사(전문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장·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이상)

○ (예 외) 재난관련 긴급공사, 국방·국가안보관련 공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5호(2013. 8. 5.)」제22조의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동법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5호(2013. 8. 5.)」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제22조의2(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05, 2013.8.30.)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1, 2013.8.30.)

  * 관련 사이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법령정보

참고 | 관련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

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5호(2013.8.5)」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경쟁제품을 선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경쟁제품 중에서 직접구매 품목을 선정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의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되는 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녹색제품
5. 법 제14조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제3호 각목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공고 제2013 - 205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공고는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04호(2013. 4. 16)는 이를 폐지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Ⅰ. 총 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품명,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 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공공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1호)"의 제품별 특이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05호)"의 제품별 특이사항에 따른다.

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02개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12조 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 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률정보 → 공고 → 2013년도
☞ www.smpp.go.kr → 공지사항
☞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류〉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1.가구	(4) 가구,문,씽크대,창	50	55
2.금속	(22) 가드레일,가로등주,구기운동용구,금속울타리용철물,난간,돌망태,방음판및방음벽,보일러및구성품,스테인레스물탱크,쓰레기통,외벽패널,육상경기용구,일반철물,전광스코아판,조립식구조물,주물제품,창,철망,체력단련기구,공원체육시설,케이블트레이,파형관	52	98
3.기계	(40) 공기살균기,공기조화기,냉각탑,냉동기,농업용관리기계,대형냉장고,모터펌프,무대장치,밸브,분사장비및약제,상업용오븐,소방기,소방용방재장치,소방자동차,송풍기,수문,승강기,약품투입기,여과기,열교환장치,음식물쓰레기처리기,응집기,일체형청정장비,자외선살균기,재활용품자동선별기,정수기,주차장치,취사용기구,컨베이어시스템,크레인,탈수및배수장치,탈취기,통상여과기,파쇄기,팬코일유닛,펠릿연소기기,폐기물소각로,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항온항습기,혼합기및교반기	133	187
4.목재, 종이	(8) 각재,골판지상자및판지상자,방부목,종이포대,종이제문구,판재,합성목재,화장지	13	14
5.섬유	(26) 가방,기동복,내의,매트리스및카바,모포·담요,배낭및조끼류,벨트,섬유로프,수건·타월,스웨터,양말,요대류·멜빵류,운동복,의류대,이부자리,작업복및근무복,잠바,장갑,정복,천막류,침낭,카바류,커튼,토목섬유,폴리에스테르직물,혼방소모직물	58	67
6.식품	(11) 건빵,고추장,김치,된장,면류,빵,생선묵튀김,식육가공품,조미김,통(병)조림,혼합간장	20	21
7.인쇄, 광고물 등	(9) 견장및어깨장식,광고판,기념품,실물모형,안내(표지)판,인쇄물,전시대,표시물,현수막	39	55
8.전기	(23) 가로등기구,개폐기,경관조명기구,계장(계측)제어장치,교통신호등,도로표지병,도로표지판,무정전전원장치,발전기,배전반,변압기,비닐절연전선,수도미터,애자,유량계,자동점멸기,자동제어반,전기스탠드,전기용연선,전력량계,충전장치,프로세스제어반,실내조명기구	41	80
9.전자·정보통신	(14) 개인컴퓨터,구내방송장치,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다중화장치,데이터포트장치,무선통신장치,산업용컴퓨터,손목시계,열차행선안내장치,유·무선원격제어장치,전광판,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출입통제시스템,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64	77
10.콘크리트, 레미콘 등	(18) 레미콘,맨홀박스,석재,석회석,토양개량제,세라믹기와,아스팔트콘크리트,점토벽돌,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순환골재,철근콘크리트관,철근콘크리트근가,콘크리트배수로,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블록,콘크리트파일,타일	22	39
11.화학	(15) 강관,고무발포단열재,수량계보호통,전선관,재활용토너카트리지,페인트,폴리에틸렌(PE)관,폴리에틸렌제품,플라스틱병,폴리에틸렌필름,폴리염화알루미늄,플라스틱자루,활성탄,FRP제품및SMC포함,PVC관	32	45
12.기타	(12) 건축물일반청소업,경비업,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도로수송서비스,선박,승강기유지보수,자료처리업무,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전시부스설치용역,전시홍보관설치용역,지질조사및탐사업,측량	63	65
12	202	587	803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1	가구	가구	56121804	강연대	5612180401	강연대	32021, 32029, 32091, 32019	
			44111907	게시판또는액세서리	4411190701	게시판또는액세서리		
			56121009	경사진열람대	5612100901	경사진열람대		
			56121502	교실용걸상	5612150201	교실용걸상		
			56112105	라운지용의자	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56101520	로커	5610152003	군용사물함		
					5610152001	사물함		
			56101793	보조책상	5610179301	보조책상		
			56111902	산업용작업대	5611190201	산업용작업대		
			56101502	소파	5610150201	소파		
			56121505	수강용탁자	5612150501	수강용탁자		
			56121903	수장고용수납장	5612190301	수장고용수납장		
			56101543	식탁	5610154302	상		
					5610154301	식탁		
			56101531	신발장	5610153101	신발장		공공분양주택제외
			56122001	실험대	5612200101	실험대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5612200205	시약보관대	32029	교육및실험용 과학기기에한함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32021, 32029, 32091, 32019	
			56122004	실험실용씽크대	5612200401	실험실용씽크대		
			56121099	이동식서가	5612109901	이동식서가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5610170801	이동형파일서랍		
			56112102	작업용의자	5611210201	작업용의자		
			56101516	장롱	5610151601	장롱		
			56121902	전시용진열대	5612190201	전시용진열대		
			56101542	접이식의자	5610154201	접이식의자		
			52152204	가정용조리대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48102095	상업용조리대	4810209501	상업용조리대		
			56101538	찬장	5610153801	찬장		찻장포함
			56101703	책상	5610170301	책상		
			56112108	책상용콤비의자	5611210801	책걸상		
			56101507	책장	5610150701	책장		
			56101592	청소도구함	5610159201	청소도구함		
			56101515	침대	5610151501	침대		
			56121002	카운터	5612100201	카운터		
			56121507	칸막이형열람대	5612150701	칸막이형열람대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56101530	캐비닛	5610153001	캐비닛		
			56121508	컴퓨터책상	5612150801	컴퓨터책상		
			56101701	크레덴자	5610170103	문갑		
					5610170101	크레덴자		장식대, 장식품장 포함
			56101519	응접탁자	5610151901	응접탁자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5610170202	도면함		
					5610170201	파일링캐비닛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	5611160101	OA칸막이		
			56121506	학생용책상	5612150601	학생용책상		
			56101706	회의용탁자	5610170601	회의용탁자		
		문	30171504	목제문	3017150401	목제문	16221	공공분양주택제외
			30179998	목제문틀	3017999801	목제문틀		
		씽크대	52151650	가정용싱크대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32021, 25994	
			48102096	상업용싱크대	4810209601	상업용싱크대		
			52152204	가정용조리대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48102095	상업용조리대	4810209501	상업용조리대		
			48102099	주방기기용받침대	4810209901	주방기기용받침대		가스대, 복합취사대에한함
			56101538	찬장	5610153801	찬장		씽크대벽장에 한함, 찻장포함
		창	30171696	목제창	3017169601	목제창	16221	창틀포함
2	금속	가드레일	30121793	가드레일	3012179301	가드레일	25112	금속제에한함
		가로등주	39112001	조명타워	3911200101	조명타워	25113	철제 및 스테인레스제에한함
			39111526	가로등주및부속자재	3911152607	가로등주부속자재	25113	철제 및 스테인레스제에한함
					3911152606	복합형가로등주	24311, 24312, 25112, 25113	주물복합형 가로등주에한함
					3911152602	스테인리스가로등주	25113	
					3911152604	주철가로등주	24311, 24312, 25112, 25113	주조제품에한함
					3911152601	철제가로등주	25113	
		구기운동용구	49221502	골대	4922150201	골대	33301	
			49221518	네트용지주	4922151801	네트용지주		
			49221584	농구대	4922158401	농구대		
			49221514	심판대	4922151401	심판대	33309	
		금속울타리용철물	30152001	금속재울타리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25112, 25943	
					3015200105	금속재기타울타리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3015200103	YL형울타리		
			30121788	낙석방지책	3012178801	낙석방지책		
		난간	30121703	교량난간	3012170301	교량난간	25112	알루미늄제에한함
		돌망태	31163403	돌망태	3116340301	돌망태	25943	
		방음판 및 방음벽	30121787	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3	가설방음판	25113	금속제에한함
					3012178702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25113	
		보일러 및 구성품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4010209501	간접가열보일러	25121, 25130	발전용, 가정용 제외
			40102002	수관보일러	4010200201	수관보일러(관류보일러포함)		
			40102001	연관보일러	4010200101	연관보일러		
			40101834	연소기 또는 버너	4010183402	가스버너	29150	
					4010183403	가스오일겸용버너		
					4010183404	발전기용휘발유버너		
					4010183401	오일버너		
			40102092	주철제보일러	4010209201	주철제보일러	25121, 25130	
			40102006	폐열보일러	4010200601	폐열보일러		
		스테인레스 물탱크	24111810	물탱크	2411181001	물탱크	25122	PDF물탱크포함
			24111897	온수탱크	2411189701	온수탱크		
		쓰레기통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4712170201	쓰레기통	25112, 25113, 25932	일반철물에한함
							22299	폴리에틸렌제품에 한함
					4712170202	음식물쓰레기처리통	25112, 25113, 25932	일반철물에한함
							22299	폴리에틸렌제품에 한함
		외벽패널	30151802	외벽패널	3015180209	금속재패널	25112	Sheet형 단일 금속재패널에 한함(복합패널제외)
		육상경기용구	49161799	높이뛰기및장대높이뛰기지주	4916179901	높이뛰기지주	33301	
					4916179902	장대높이뛰기지주		
			49221517	스타팅블록	4922151701	스타팅블록		
			49221521	운동기구운반차	4922152101	운동기구운반차		
			49161706	허들	4916170601	허들		
		일반철물	30191896	멕플레이트	3019189601	덱플레이트	25112, 25113,	
			30103201	스틸그레이팅	3010320101	스틸그레이팅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25932	
		전광 스코아판	49221501	스코어보드	4922150101	전광스코어보드	33309, 28423	
					4922150102	기타스코어보드		
		조립식 구조물	30201705	이동식초소	3020170501	이동식초소	25112, 25113, 25119	금속제에한함
			30222003	버스승강장	3022200301	버스승강장		
			30222064	자전거보관대	3022206401	자전거보관대		
			30201796	조립식구조물	3020179601	조립식구조물(지붕구조물에 한함)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3023169901	컨테이너하우스		
		주물제품	30121716	교량받침	3012171601	교량받침	24311, 24312	교좌장치. 단, 고무 또는 철판제품 제외
			30121695	맨홀뚜껑	3012169501	맨홀뚜껑		철개에한함
			30121698	맨홀보조물	3012169801	맨홀보조물		
			30121779	하수악취차단장치	3012177901	하수악취차단장치		
			31163299	압륜	3116329901	압륜		
		창	30171698	금속제창	3017169801	금속제창	25111	창틀포함, 알루미늄제에한함 20층 이상 건물 시공 AL커튼월은 제외
		철망	30111801	용접철망	3011180101	용접철망	25943	
		체력단련 기구	49201605	상체근력강화기	4920160508	랫풀다운머신	33301	
					4920160514	로만체어		
					4920160509	롱풀머신		
					4920160518	리스트롤트레이너		
					4920160504	버터플라이머신		
					4920160501	벤치프레스		
					4920160507	숄더프레스머신		
					4920160511	스미스머신		
					4920160505	암컬머신		
					4920160510	업도미널머신		
					4920160503	윗몸일으키기대		
					4920160506	체스트웨이트		
					4920160502	체스트프레스머신		
					4920160512	치닝		
					4920160513	토르소머신		
					4920160516	트라이셉프레스		
					4920160517	팔굽혀펴기대		
					4920160515	풀오버머신		
			49201501	트레드밀	4920150101	트레드밀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49201603	하체근력강화기	4920160302	레그익스텐션머신		
					4920160303	레그컬머신		
					4920160301	레그프레스머신		
					4920160306	스쿼트랙		
					4920160304	어덕터		
					4920160307	카프머신		
					4920160305	토탈힙머신		
					4920160311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4920160309	핵머신		
					4920160310	힙앤드레그컨디셔너		
					4920160308	힙후렉서		
		공원체육시설	56101605	옥외용벤치	5610160501	옥외용벤치	33302	산책로 및 임대주택포함, 공공분양주택제외
			49201612	운동시설물	4920161201	운동시설물(야외헬스기구에 한함)	33301	
			49241596	조경시설물	4924159601	조경시설물	33302	
			49241597	조합놀이대	4924159701	조합놀이대		
			49241511	퍼걸러	4924151101	퍼걸러		
		케이블트레이	39131704	케이블트레이	3913170402	덕트형케이블트레이	25113	
					3913170401	케이블트레이		
			39131705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3913170502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391317050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3913170503	케이블트레이엘보		
		과형관	40142123	과형강관	4014212301	과형강관	24132, 25112	
3	기계	공기살균기	40161699	공기살균기	4016169901	공기살균기	29174	
		공기조화기	40101709	공기조화기	4010170901	공기조화기	29172	
			40101504	공조용댐퍼	4010150402	릴리프댐퍼		
					4010150401	환기댐퍼		
			40101902	제습기	4010190201	제습기		
		냉각탑	40101716	냉각탑	4010171601	냉각탑	29171	
		냉동기	40101712	스크루냉동기	4010171201	스크루냉동기	29171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4010171001	왕복동식냉동기		
		농업용관리기계	21102098	선과기	2110209801	선과기	29210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2110189901	농축산용방역장비		
			21101801	분무기	2110180101	동력분무기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 분배기	2110180401	비료살포기		
					2110180402	석회살포기		
			21101904	사료배합기	2110190401	사료배합기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23181506	세척장치	2318150603	과일세정살균기		농산물세척기에 한함
					2318150602	자동야채세척기		
			21101502	쇄토기	2110150201	쇄토기		
			21101703	수확기	2110170301	땅속작물수확기		
			21101710	수확용건조기	2110171001	수확용건조기		
			21101706	작물분절기	2110170601	목재파쇄기		
					2110170603	작물분절기		
			21101501	쟁기	2110150101	쟁기		
			21101506	그레이더또는정지기	2110150601	정지기		
			21101806	퇴비살포기	2110180601	퇴비살포기		
		대형냉장고	24131503	대형냉장고	2413150301	대형냉장고	29171	
		모터펌프(발전용 및 LNG용 제외. 단, 농업용은 토출구경에 관계없이 포함)	40151566	부스타펌프	4015156601	부스터펌프	29131	
			40151570	사류펌프	4015157001	입축사류펌프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1,200mm 초과제외
					4015157002	횡축사류펌프		
			40151513	수중펌프	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1,200mm 초과제외
					4015151301	수중펌프		
			40151525	슬러지펌프	4015152501	슬러지펌프		
			40151547	심정용펌프	4015154701	심정용펌프		
			40151517	오수펌프	4015151701	오수펌프	29131	
							29175	하수처리용펌프 포함
			40151503	원심펌프	4015150301	다단벌류트펌프	29131	상수도용토출구경 500mm이상제외
					4015150302	단단벌류트펌프		
					4015150303	양흡입벌류트펌프		
					4015150305	자흡식펌프		
					4015150304	편흡입벌류트펌프		
			40151599	자동펌프	4015159901	자동펌프		펌프모터일체형 펌프에한함
			40151553	전진공동펌프	4015155301	전진공동펌프		
			40151505	정량펌프	4015150501	정량펌프		
			40151546	축류펌프	4015154601	입축축류펌프		배수펌프장및하수처리장용은토출구경1,200mm초과제외
					4015154602	횡축축류펌프		
		무대장치	30221099	무대장치	3022109901	무대장치	29299	
		밸브	40141620	버터플라이밸브	4014162001	버터플라이밸브	29133	
			40141694	제수밸브	4014169401	제수밸브		
			40141688	체크밸브	4014168801	체크밸브		
			40141615	플랩밸브	4014161501	플랩밸브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분사장비 및 약제	46191603	소방호스또는노즐	4619160301	소방호스용노즐	29194	
					4619160302	소화용호스		
			46182401	오염제거기	4618240101	방역용소독기		
					4618240102	훈증챔버		
		상업용 오븐	48101517	상업용오븐	4810151701	상업용오븐	28511	
		소방기	46191601	소화용기구	4619160102	소화전	29133	
					4619160101	수동식소화기	29194	
					4619160107	에어졸식소화용구		
					4619160111	자동식소화기		
					4619160103	캐비닛형소화기		
					4619161301	소화약제		포소화약제에 한함
					4619160105	하론소화설비		
					4619160109	CO2소화설비		
					4619160115	HCFC소화설비		
		소방용 방재장치	46182504	화재수신기	4618250401	화재수신기	26410, 28901	중계기포함
		소방 자동차	25101793	구조공작차	2510179301	구조공작차	30201	
			25101794	배연차	2510179401	배연차		
			25101790	소방물탱크차	2510179001	소방물탱크차		
			25101789	소방펌프차	2510178901	소방펌프차		
			25101791	소방화학차	2510179101	소방화학차		
			25101795	조연차	2510179501	조연차		
		송풍기	40101504	공조용댐퍼	4010150402	릴리프댐퍼	29173	
					4010150401	환기댐퍼		
			23990599	소음기	2399059901	소음기		
			40101601	송풍기	4010160101	송풍기		
		수문	24101676	가동보	2410167601	가동보	25111	고무가동보제외
			40141784	수문	4014178401	수문문비	25111	수문 1련당면적 20㎡초과제외
					4014178402	수문문틀		
					4014178403	수문밸브	29133	
			24101685	수문권양기	2410168501	수문권양기	29210	
		승강기	24101682	덤웨이터	2410168201	덤웨이터	29162, 29163	
			24101601	엘리베이터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속도분속 105M 이하, 공공분양주택제외
			24101696	휠체어리프트	2410169601	휠체어리프트		
		약품 투입기	47109960	약품투입기	4710996001	약품투입기	29175	오존발생장치제외
			47101505	염소처리장비	4710150501	염소투입기		
					4710150503	이산화염소발생기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4710150502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여과기	40161505	공기여과기(에어필터)	4016150501	공기여과기(에어필터)	29174	
			25221417	디젤기관차용연료여과기	2522141701	디젤기관차용연료여과기	29175	
			25221646	디젤기관차용윤활유여과기	2522164601	디젤기관차용윤활유여과기		
			25221418	디젤동차용연료여과기	2522141801	디젤동차용연료여과기		
			25221363	디젤동차용윤활유여과기	2522136301	디젤동차용윤활유여과기		
			40161508	백필터	4016150801	백필터	29174	
			26101726	오일여과장치	2610172601	오일여과장치	29175	
			40161503	집진기	4016150305	관성력집진장치	29174	
					4016150302	세정집진장치		
					4016150303	원심력집진장치		
					4016150301	전기집진장치		
					4016150306	제진장치		
					4016150304	중력집진장치		
		열교환장치	40101802	열교환장치	4010180201	열교환기	29176	
		음식물쓰레기처리기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기	2318199801	음식물쓰레기처리기	29299	
		응집기	47109992	응집기	4710999201	응집기	29175	
		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	30201704	청정실	3020170401	청정실	29172	
		자외선살균기	47101517	자외선살균기	4710151701	자외선살균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재활용품자동선별기	24102298	재활용품압축기	2410229801	재활용품압축기	29299	
		정수기	48101799	정수기	4810179901	정수기	29175	가정용제외
		주차장치	24101687	자동주차장치	2410168701	자동차주차장치	29162, 29169	
			24101689	주차관제장치	2410168905	주차경보등	29163, 28903	
					2410168910	주차관제주변기기		
					2410168902	주차권발행기		
					2410168908	주차권판독기		
					2410168906	주차안내판		
					2410168907	주차요금계산기		
					2410168901	주차주제어장치		
					2410168904	차량감지기		
					2410168903	차량인식기		
					2410168909	차량차단기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30221002	주차구조물	3022100201	주차구조물	29162, 29169, 42139	
		취사용 기구 (가정용 제외)	48102097	배식대	4810209701	배식대	28511	
					4810209702	식판배분대		
			48101809	상업용곰솥또는국솥	4810180901	국솥		
			48101511	상업용그리들	4810151101	부침기		
			48101521	상업용레인지	4810152101	상업용가스레인지		
					4810152102	중화식레인지		
			48101530	상업용밥솥	4810153004	가스밥솥		
					4810153001	증기밥솥		
					4810153002	취반기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4810161501	상업용식기세척기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4810189601	상업용주방후드		
			23181506	세척장치	2318150601	세미기		
			52152202	식기건조대	5215220201	식기건조대		
			48101710	음수대	4810171001	음수기		
					4810171002	음수대		
			48101894	음식쓰레기처리대	4810189401	음식쓰레기처리대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4810181801	주방기구소독기		식기건조기포함
			24101501	카트	2410150101	카트		
		컨베이어 시스템	24101749	수직컨베이어	2410174901	수직컨베이어	29163	우편물용수직컨베이어에한함
		크레인	24101654	갠트리크레인	2410165401	갠트리크레인	29169	
			24101652	지브크레인	2410165201	지브크레인		
			24101653	천장크레인	2410165301	천장크레인		
			24101602	호이스트	2410160201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2410160202	전동식체인호이스트		
		탈수 및 배수장치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4710152507	디스크형농축기	29175	
					4710152503	디칸터형원심탈수기		
					4710152501	벨트프레스탈수기		
					4710152502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4710152504	원심농축기		
					4710152506	중력식벨트농축기		
					4710152508	진공탈수기		
					4710152505	필터프레스탈수기		
		탈취기	40161605	탈취기	4016160501	탈취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29174	수처리용제외
		통상 여과기	47109970	상향류식여과장치	4710997001	상향류식여과장치	29175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47109972	섬유여과기	4710997201	섬유여과기		
			40161502	워터필터	4016150201	워터필터		
		파쇄기	20101709	볼밀	2010170901	볼밀	29299	
		팬코일 유닛	40101708	팬코일유닛	4010170801	팬코일유닛	29172	
		펠릿 연소기기	40102098	나무보일러	4010209801	나무펠릿보일러	29150, 25121, 25130	
			40101866	온풍난방기	4010186601	온풍난방기	29150	목재펠릿용에한함
		폐기물 소각로	47101529	소각로	4710152901	소각로	29150	70ton/일이하에한하며 가스냉각장치 및 유해가스 저감장치 포함
			40101850	화장로	4010185001	화장로		
		하수처리 장치 및 구성품	47109995	거품제거기	4710999501	거품제거기	29175, 29163	정수,분뇨용,배수, 빗물 펌프장용 포함
			47109976	경사판침강장치	4710997601	경사판침강장치		
			47109979	드럼스크린	4710997901	드럼스크린		
			47109991	디스크스크린	4710999101	디스크스크린		
			40161607	배연탈황기	4016160701	배연탈황기		
			24101712	벨트컨베이어	2410171201	벨트컨베이어		
			47101542	부상분리장치	4710154201	부상분리장치		
			47101513	산소발생기	4710151301	산소발생기		
			47109997	수중포기기	4710999701	수중포기기		
			47109998	스컴제거기	4710999801	스컴제거기		
			24101730	스크루컨베이어	2410173001	스크루컨베이어		
			47101536	슬러지수집기	4710153601	슬러지수집기		
			24101714	에어컨베이어	2410171401	에어컨베이어		
			47109965	여과사인양기	4710996501	침사인양기		
			47109990	염소가스중화장치	4710999001	염소가스중화장치		
			47109964	오수처리용산기장치	4710996401	오수처리용산기장치		
			47101522	용수처리장치	4710152201	일체형폐수처리장치		
			40161701	원심분리기	4016170101	원심분리기		
			24101746	이동식컨베이어	2410174601	이동식컨베이어		
			47109980	제진기	4710998001	제진기		
			24101722	체인컨베이어	2410172201	체인컨베이어		
			47109987	평면스크린	4710998701	평면스크린		
			47109978	협잡물처리기	4710997801	협잡물처리기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47109989	호퍼	4710998901	호퍼		
			47101501	활성탄장비	4710150102	활성탄공급장치		
		항온 항습기	40101715	항온항습기	4010171501	항온항습기	29172	
		혼합기 및 교반기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4710151201	교반기	29175	
					4710151202	혼합기		
4	목재 종이	각재	30103622	각재	3010362201	각재	16101	
			30121898	수목보호용지지대	3012189801	수목보호용지지대		목재에한함
		골판지 상자 및 판지상자	24112501	골판지상자	2411250101	골판지상자	17210, 17222	판지상자포함
		방부목	11122006	방부목(防腐木)	1112200601	방부목	16103	
		종이포대	24111502	종이포대	2411150201	종이포대	17221	
		종이제 문구	14121999	신문용지절지	1412199901	신문용지절지	17901	
			14111507	프린터또는복사기용지	1411150701	프린터또는복사기용지		
			14111511	필기용지	1411151101	중질지		
		판재	30161702	목재마루재	3016170202	목블록	16101, 16102	
					3016170201	플로어링보드		
			30103605	목재판재	3010360501	목재판재		
			30161901	루버(벽판재)	3016190101	루버(벽판재)		목재에한함
		합성목재	30103699	합성목재	3010369901	합성목재	16212	
		화장지	14111704	화장실용화장지	1411170401	화장실용화장지	17902	
5	섬유	가방	53121503	개인용소형가방	5312150301	개인용소형가방	15129	
			53121798	문서자루	5312179801	문서자루		
			53121701	서류가방	5312170101	서류가방		
			53121705	소지품케이스	5312170501	소지품케이스		
			53121704	손가방	5312170401	손가방		
			53121601	핸드백또는지갑	5312160101	지갑	15121	
					5312160102	핸드백		
		기동복	53102799	기동복	5310279901	기동복	14192	
			53102701	군복	5310270101	군복		예비군복,전투복 포함
		내의	53102399	내복	5310239901	내복	14120	
			53102303	팬티	5310230302	사각팬티		
					5310230301	삼각팬티		
		매트리스 및 카바	56101508	매트리스	5610150801	매트리스	13221, 32012	라텍스매트리스는제외, 국방규격 7210-1018포함
			52121504	매트리스커버	5212150401	매트리스커버	13221	국방규격 7210-1018포함
			국방규격	매트리스패드	국방규격	매트리스패드		
		모포·담	52121508	담요	5212150801	담요	13221	국방규격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요						7210-1006포함
		배낭 및 조끼류	국방규격	야전배낭	국방규격	야전배낭	15129, 13229	
			국방규격	전투조끼(탄약휴대용), 특수조끼탄입낭	국방규격	전투조끼(탄약휴대용), 특수조끼탄입낭		
		벨트	53102501	허리띠또는멜빵	5310250101	벨트	14499	경찰혁대포함
		섬유로프	31151504	나일론로프	3115150401	나일론로프	13921	
			31151501	면로프	3115150101	면로프		
			31151520	비닐론로프	3115152001	비닐론로프		
			31151506	삼체로프	3115150601	마로프		
			31151502	폴리에스테르로프	3115150201	폴리에스테르로프		
			31151512	폴리에틸렌로프	3115151201	폴리에틸렌로프		
			31151503	폴리프로필렌로프	3115150301	폴리프로필렌로프		
		수건·타월	52121703	세면용수건	5212170301	타월	13219	
		스웨터	53101702	남성용스웨터	5310170201	남성용스웨터	14300	
			53101704	여성용스웨터	5310170401	여성용스웨터		
		양말	53102402	양말	5310240201	양말	14411	
		요대류·멜빵류	국방규격	멜빵류	국방규격	멜빵류	13991	
			국방규격	요대, 개인장구요대	국방규격	요대, 개인장구요대		
		운동복	53102902	남성용운동복	5310290201	남성용운동복	14300	편직에한함
							14191	편직제외
			53102901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여성용운동복	14300	편직에한함
							14191	편직제외
		의류대	국방규격	의류대(군용DUFFLE백에 한함)	국방규격	의류대(군용DUFFLE백에 한함)	13224	
		이부자리	52121506	요	5212150601	요	13221	국방규격 7210-R0005,R0006,R0008 포함
			52121505	베개	5212150501	베개		
			52121509	시트	5212150901	시트		
			52121502	이불(누비이불 포함)	5212150201	이불(누비이불 포함)		
			52121503	이불커버	5212150301	이불커버		
		작업복 및 근무복	46181528	보호용작업복	4618152801	보호복	14192, 14199	화학보호복및방사능보호복제외
			53102710	사원복	5310271001	남자근무복		성하복포함
					5310271003	남자작업복		
					5310271002	여자근무복		
					5310271004	여자작업복		
			46181507	야광조끼	4618150701	야광조끼		
			46181509	위험물질방어의류	4618150902	농약안전사용장비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4618150901	침투성보호의		
		잠바	53101802	남성용외투	5310180201	남성용외투	14111, 14192	잠바및파카, 바람막이 포함
			53101804	여성용외투	5310180401	여성용외투	14112, 14192	잠바및파카, 바람막이 포함
		장갑	53102504	장갑	5310250401	장갑	14419	편직에한함
							14499	편직제외
		정복	53102702	정복	5310270201	남자정복	14111	예복포함
					5310270202	여자정복	14112	
		천막류	국방규격	개인천막,분대용천막,일반용천막,지휘용천막,행사용천막(유리섬유테프론제외)	국방규격	개인천막,대용천막,일반용천막,지휘용천막,행사용천막(유리섬유테프론제외)	13224	
		침낭	49121504	침낭	4912150401	침낭	13221	국방규격 8465-1013포함
		카바류	국방규격	구급대, 수통피, 야전삽피, 탄입대류	국방규격	구급대, 수통피, 야전삽피, 탄입대류	13224	
			국방규격	기동,총포,통신및일반카바류	국방규격	기동,총포,통신및일반카바류		
		커튼	52131602	롤업세이드	5213160201	롤업세이드	13223	
			52131604	버티컬블라인드	5213160401	버티컬블라인드		
			52131601	베니션블라인드	5213160101	베니션블라인드		
			52131501	커튼	5213150101	커튼		
		토목섬유	30121786	차수매트	3012178601	차수매트	13992, 13994	
			30121702	토목섬유	3012170204	복합포	13992, 13994	
					3012170201	직포매트	13999, 13225, 13229, 13219	P.P섬유 직포매트(PET 제품포함)에 한함. 단, 복합매트 제외
					3012170202	토목용부직포	13992, 13994	
		폴리에스테르직물	11161801	합성평직물	1116180101	폴리에스테르직물	13213	폴리에스테르 함유량 72% 이상에 한함
		혼방소모직물	11161601	모평직물	1116160101	소모직물	13212	혼방소모직물에 한함
6	식품	건빵	50181905	비스킷또는쿠키	5018190501	비스킷또는쿠키	10713	건빵에한함
		고추장	50172002	고추장	5017200201	고추장	10743	
		김치	50467005	깍두기	5046700501	깍두기	103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50467003	동치미	5046700301	동치미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50467001	배추김치(기타김치류 포함)	5046700101	배추김치(기타김치류 포함)		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액(1천만원)이상에 한함
			50467002	열무김치	5046700201	열무김치		
			50199896	총각김치	5019989601	총각김치		
		된장	50172003	된장	5017200301	된장	10743	
		면류	50192902	상온담백한파스타또는면류	5019290201	면류	10730	자장면, 쫄면, 냉면, 가락국수, 당면, 쌀국수에 한함
		빵	50181902	냉동빵	5018190201	냉동빵	10712	
			50181904	말린빵,빵껍질또는크루통	5018190401	말린빵		
			50181906	상온보관용빵	5018190601	상온보관용빵		
			50181901	신선한빵	5018190101	신선한빵		
		생선묵튀김	50121598	수산물가공품	5012159802	어육가공품	10211	생선묵튀김에 한함
		식육가공품	50112099	식육가공품	5011209901	식육가공품	10121, 10129	햄버거패티,소시지(비엔나소시지 제외),돈까스,미트볼,햄에 한함
		조미김(맛김)	50121804	상온해조류	5012180401	조미김	10220	조미김(맛김)에 한함
		통(병)조림	50171831	요리용소스	5017183101	요리용소스	10742	쇠고기·돼지고기 불고기양념, 육고기·해물비빔소스, 자장소스에 한함
					5017183102	카레		카레소스에한함
			50467006	장조림통조림	5046700601	장조림통조림	10211, 10129, 10121, 10309	
			50467007	참치캔통조림	5046700701	참치캔통조림		기타통조림포함
		혼합간장	50172001	간장	5017200101	간장	10743	혼합간장에한함
7	인쇄 및 광고물 등	견장 및 어깨장식	53102520	견장및어깨장식	5310252002	견장	13222, 13223, 25999	
					5310252001	휘장		
		광고판	55121904	광고판	5512190401	간판	33910	
		기념품	49101709	기념패	4910170901	기념패	25999	
			49101609	장식품	4910160901	잡종공예품		
		실물모형	60109899	실물모형	6010989901	실물모형	33934	전시용영상. 특수효과장치 및 과학전시물 포함
		안내(표지)판	55121718	안내판(철도안내표지판 포함)	5512171801	안내판(철도안내표지판 포함)	33910	옥내·외안내(표지)판에한함
							18111	
		인쇄물	14111808	경리양식또는경리장부	1411180801	재무행정공통서식	18119, 18111	
			14111804	계산서및계산서철	1411180401	계산서		
			55101509	교육용또는직업용도서	5510150901	교재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55101520	교육용인쇄지또는팜플렛	5510152001	팸플릿		
			55101518	기술도해	5510151801	도면		
			55101599	기타 인쇄물	5510159901	기타 인쇄물		
			44112002	달력	4411200201	달력		
			55101530	법전	5510153001	법전		
			55121501	수하물꼬리표	5512150101	꼬리표		
			55101504	신문	5510150401	신문		
			14111806	양식용지또는질의서	1411180606	명세서		
					1411180601	보고서		
					1411180602	신청서		
					1411180607	의뢰서		
					1411180603	이력카드용지		
					1411180609	일보		
					1411180605	조사표		
					1411180608	지시서		
					1411180604	통지서		
			55101510	여가용도서	5510151001	서적		부수적으로 제작、되는 전자북포함
			14111605	연하장및엽서	1411160501	엽서		
			14111802	영수증또는영수증철	1411180201	영수증		
			14111810	인사서류양식또는인사장부	1411181001	인사행정공통서식		
			14111899	일반행정공통서식	1411189901	일반행정공통서식		
			55101521	작동및교육메뉴얼	5510152101	편람		
			14111513	장부용지	1411151301	원장		
			14111812	재고관리양식또는재고장부	1411181201	물자관리공통서식		
			55101519	정기간행물	5510151901	정기간행물		
			14111514	종이패드및공책	1411151402	공책		
					1411151403	보조장부		
					1411151401	수첩		
			14111506	컴퓨터출력용지	1411150601	컴퓨터출력용지		전산디자인품에 한함
			55101529	통장	5510152901	통장		
			14111801	티켓	1411180101	표		
			60121008	포스터	6012100801	포스터		
			55121612	프린터라벨	5512161201	라벨용지	18119, 18111	인쇄라벨에한함
							18111	실사출력인쇄물에 한함
					5512161202	스티커	18119, 18111	인쇄스티커에한함
							18111	실사출력인쇄물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에 한함
			55101515	홍보물또는연간보고서	5510151501	연감	18119, 18111	
			14111805	회계전표또는전표책	1411180501	전표		
		전시대	55121908	간판대또는스탠드	5512190801	안내판걸이구	33910	
					5512190802	전시대		
		표시물	55121701	금속명판	5512170101	금속명패	25999, 33910	
			55121717	도로명주소표지판	5512171701	건물번호판	25995 25999, 33910	
					5512171702	도로명판		
					5512171703	기초번호판		
					5512171704	지역안내판		
			60121002	조각	6012100201	조형물	25999, 33910	
		현수막	55121706	현수막	5512170601	현수막	33910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18111	실사출력인쇄물에 한함
8	전기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	3911160801	보안등기구	28422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39101617	고압나트륨등	3910161701	고압나트륨램프	28410	
			39111603	도로조명설비	3911160301	가로등기구	28422	
					3911160303	터널용등기구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39111801	등안정기	3911180102	나트륨램프용안정기	28113	
					3911180101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3911180104	무전극램프용안정기		
					3911180106	LED램프용 안정기		
			39101614	메탈할라이드등	3910161401	메탈할라이드램프	28410	
			39111697	신재생에너지가로등	3911169701	태양광가로등	28422	
					3911169703	하이브리드가로등		
			39101699	LED램프	3910169901	LED램프	28410	
		개폐기	39121105	개폐장치	3912110503	부하개폐기	28121	25.8KVA이하 가공용 가스절연부하개폐기 한함
		경관조명기구	39111606	수중조명	3911160602	수중조명등	28422, 28423, 28429	광섬유,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휴대용 탐조등 제외
					3911160601	LED수중조명등		
			39111605	경관조명	3911160502	경관조명기구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11611	투광조명	3911161101	투광등기구		
					3911161102	LED투광등기구		
					3911161103	탐조등		
		계장(계측)제어장치	39121189	계장제어장치	3912118901	계장제어장치	28122	통합감시제어설비포함. 일처리능력으로 하폐수는 10만톤, 상수는 30만톤이하의 수처리설비에 한함
		교통신호등	46161504	교통신호등	4616150401	교통신호등	28903	
					4616150403	교통신호제어기		
			46161572	신호등주및액세서리	4616157201	신호등주	25113	
		도로표지병	46161585	도로표지병	4616158501	도로표지병	25999, 22299	
		도로표지판	55121710	교통표지	5512171001	교통안전표지	25995	
					5512171002	도로표지		
			55121712	방향표지판	5512171201	방향표지판		
		무정전전원장치(UPS)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	28119	생산용량500KVA이하에한함
		발전기	26111601	디젤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28111	2,000KW초과 및 해상용 제외, 방음형 포함
		배전반	39121103	배전반	3912110301	폐쇄형배전반	28122	중앙감시반,154KV,345KV용보호배전반 포함
					3912110303	배전함		
			39121101	분전반	3912110101	분전반		
					3912110102	분전함		
					3912110103	주택용분전반		
			39121104	전동기제어반	3912110401	전동기제어반		
		변압기	39121001	배전용변압기	3912100102	건식변압기	28112	
					3912100101	몰드변압기(3,000KVA이하에 한함)		아몰퍼스변압기 포함
					3912100104	유입변압기		아몰퍼스변압기, 고전압변압기포함
					3912100105	주상변압기		25.8KV-Y이하에 한함
					3912100106	철도용단권변압기		
			39121002	전력용변압기	3912100201	전력용변압기		25.8KV-Y이하에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한함
			39121030	지상변압기	3912103001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3912103002	일반지상변압기		25.8KV-Y이하에 한함
		비닐절연전선	26121524	절연전선및피복선	2612152404	300/500V기기배선용 단심비닐절연전선	28302	
					2612152412	옥외용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41112504	수량계	4111250401	수도미터	27214	
		애자	39122182	애자	3912218206	인류애자	23213, 28902	내오손 결합애자 포함, 36,000Lbs 이하현수
					3912218201	지지애자		
					3912218204	포스트애자		
					3912218205	핀애자		
					3912218203	현수애자(자기애자제외)		
		유량계	41112501	유량계	4111250101	유량계	27214	유량계관련 계측기기 포함, 휴대용 유량계 제외
		자동점멸기	39121107	조명제어장치	3912110701	가로등자동점멸기	28122	LED가로등자동점멸기포함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자동제어반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빌딩자동제어장치	28122	
			39121106	전력감시또는제어장치	3912110604	모니터장치		정전류조정기, 최대수요전력제어기, 모니터장치, 집중표시제어장치, 전력보호감시장치에 한함
					3912110605	전력보호감시장치		
					3912110602	정전류조정기		
					3912110606	집중표시제어장치		
					3912110603	최대수요전력제어기		
		전기스탠드	39112003	조명스탠드	3911200302	라이트암	28422, 28423	
					3911200301	전기스탠드		
		전기용연선	26121522	나선(裸線)	2612152204	전기용경동연선	28302	
					2612152202	전기용연동연선		
		전력량계	41113640	유효전력계	4111364002	전력량계	27214	공공조달시장의 15%이내에서 예외
		충전장치	26111704	충전장치	2611170401	산업용충전장치	28119	송변전용, 통신용에한함
		프로세스제어반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4111249801	프로세스제어반	27215, 27216	상하수측정용 계측기포함
		실내조명기구(LED용기구포함)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	3911151501	다운라이트	28422, 28423, 28429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39111801	등안정기	3911180103	형광램프용안정기	28113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39111501	형광등기구	3911150105	공조등	28422, 28423, 28429	
					3911150103	매달림형형광등기구		
					3911150101	매입형형광등기구		
					3911150104	벽부형형광등기구		
					3911150102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39112102	LED실내조명등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28422, 28423, 28429	
9	전자·정보통신	개인컴퓨터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4321150701	데스크톱컴퓨터	26310	2013년 50%이내, 2014년 25%이내의 공공조달시장 범위내에서 예외
			43211593	일체형컴퓨터	4321159301	일체형컴퓨터		
		구내방송장치	45111705	구내방송장치	4511170501	구내방송장치	26521, 26529, 26421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41104510	건조캐비넷또는오븐	4110451001	건조기	27213	
			42281596	고압멸균기	4228159601	고압멸균기		
			60106299	공정제어실험장치	6010629901	공정제어실험장치	27212	
			41102423	교반가열판	4110242301	교반가열판	27213	
			60109999	교육훈련장비	6010999901	교육훈련장비	27212, 27213, 27219	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 마이크로프로세서교육실습장비, 과학교구실험실습장비에 한함
			60104796	기초물리실험장치	6010479601	기초물리실험장치	27219	
			41103418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4110341801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27213	
			41114674	만능재료시험기	4111467401	만능재료시험기		
			60109399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6010939901	멀티미디어학습장치	26429, 26529	
			41113630	멀티미터	4111363001	멀티미터	27212	
			41103415	무균대	4110341501	무균대	27213	
			41103406	무균함	4110340601	무균함		
			60103925	생물실험용키트	6010392501	생물실험용키트	27219	
			41113656	서보시험장치	4111365601	서보시험장치	27212	
			41106705	식물생장조절실	4110670501	식물생장조절실	27213	
			60104798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6010479801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27212	
			60104101	신체,체절또는조직모델	6010410101	인체모형	27219	
			41115320	신호발생기	4111532001	신호발생기	27212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45111810	실물화상기	4511181001	실물화상기	27329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4110350201	실험실용배기기	27213	
			41103005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4110300501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41104601	실험용박스로	4110460101	전기로		
			41103202	실험용세척기	4110320201	실험용세척기		
			60103799	어학실습실기자재	6010379901	어학실습실기자재	26429, 26529	
			45111697	영사대	4511169701	영사대	27329	
			45111603	영사용스크린	4511160301	영사용스크린	27322	
			41113638	오실로스코프	4111363801	오실로스코프	27212	
			60104787	유압제어실험장치	6010478701	유압제어실험장치	27212	
			41104498	이산화탄소배양기	4110449801	이산화탄소배양기	27213	
			44111911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441119110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26329	
			60106101	자동차교육관련자료	6010610101	엔진모의장치	33934	
			41104404	저온BOD배양기	4110440401	저온BOD배양기	27213	
			60106104	전기전자교육자료	6010610401	전기전자교육자료	27212	
			60106402	전자공학교육용품	6010640201	논리회로실험장치		
					6010640202	정보통신망실습장비		
			41113689	종합계측기	4111368901	종합계측기		
			41115303	주파수분석기	4111530303	주파수분석기		
			41104405	진탕배양기	4110440501	진탕배양기	27213	
			41104206	초순수제조장치	4110420601	초순수제조기	29175	
			60106499	컴퓨터실험장치	6010649901	컴퓨터기억실험장치	27212	
			41113777	통신교육용모의장치	4111377701	통신교육용모의장치		
			41103706	항온수조	4110370601	항온수조	27213	
			41103491	항온항습조	4110349101	항온항습조		
			60106498	회로실험장치	6010649801	전자회로실험장치	27212	
			41103811	회전식진탕기	4110381101	회전식진탕기	27213	
		다중화장치	43221810	광다중화장치	4322181001	광다중화장치	26410	
			43222695	다중통신장비	4322269501	다중통신장비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4322282201	시분할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43222611	네트워크채널또는데이터서비스유닛	4322261103	데이터포트장치	26410	
					4322261102	디지털서비스유닛		
					4322261101	채널서비스유닛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무선통신장치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4322172104	무선통신송신기	26429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4322172105	암호송신기		
			43191510	양방향라디오	4319151001	무선송수신기		
					4319151002	양방향라디오		
		산업용 컴퓨터	43211594	특수목적컴퓨터	4321159401	특수목적컴퓨터	26310	
		손목시계	54111501	손목시계	5411150101	손목시계	27401	
		열차행선안내장치	25250325	열차행선안내장치	2525032501	열차행선안내장치	31202, 28423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43221521	원격접속장치	4322152101	원격접속장치	27211, 27215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전광판	55121903	전광판	5512190303	교통정보전광판	28423	
					5512190302	기상전광판		
					5512190301	안내전광판		
		전화 교환기 네트워크 연결장치	43222696	동보장치	4322269601	동보장치	26410	
			43221501	자동안내장치	4322150101	자동안내장치		
			43222818	배선반	4322281801	구내단자함		
					4322281802	국선단자함		
					4322281803	본배선반		
					4322281804	중간배선반		
					4322281805	통합배선반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출입통제시스템	26329, 26410	
							28901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46171610	보안용카메라	4617161001	영상감시장치	26421, 26429	
					4617161002	CCTV카메라		
			46161516	차량번호판독기	4616151601	차량번호판독기		불법주차 및 보안용에한함
10	콘크리트 (레미콘 등)	레미콘	30111505	레미콘	3011150501	레미콘	23322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음
		맨홀박스	30121699	맨홀박스	3012169901	콘크리트맨홀블록	23326	유리섬유복합관 맨홀제외
					3012169902	플라스틱계맨홀	22299, 22211	PE맨홀에한함
		석재	30131503	석재블록	3013150301	자연석경계석	23911, 23919	
			30131702	석재타일및판석	3013170201	자연석판석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품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11111698	조경석	1111169801	조경석		
			11111604	화강암	1111160401	화강석		
		석회석	11111608	석회석	1111160801	석회석	07111	
		토양개량제	10171694	규산비료	1017169401	규산비료	20209	공공조달시장의 12%이내에서 예외
			10171611	석회비료	1017161101	석회비료		
		세라믹기와	30151590	세라믹기와	3015159001	그을림한식기와	23231	
					3015159003	오지기와		
					3015159002	유약기와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23991	
		점토벽돌	30131602	세라믹벽돌	3013160202	미장벽돌	23231	
					3013160201	점토바닥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30131514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23326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저류블록	30131598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저류블록	30131598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저류블록		
		순환골재	30109904	순환골재	3010990401	순환골재	38230	제품제조용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생산한 순환골재는 제외
		철근콘크리트관	40142109	콘크리트관	4014210903	원심력유공철근콘크리트관	23326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제외
					401421090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4014210902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근가	30111804	철근콘크리트근가	3011180401	철근콘크리트근가	23325, 23326	
					3011159301	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배수로	40141782	배수로	4014178201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23326	
					4014178202	철근콘크리트플룸관		
					4014178203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콘크리트	30131603	콘크리트벽돌	3013160301	콘크리트벽돌	23325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벽돌						
		콘크리트 블록	30131502	콘크리트블록	301315020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23325, 23326	
					3013150206	소파블록		
					3013150204	속빈콘크리트블록		
					3013150209	콘크리트경계블록		인조경계석포함
					3013150202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콘크리트 파일	30102802	콘크리트파일	3010280201	콘크리트파일	23326	PHC파일에한함
		타일	30131704	세라믹타일및판석	3013170403	그림타일	23232	
					3013170401	도기질타일		
					3013170405	모자이크타일		
					3013170408	부조타일		
					3013170402	자기질타일		
11	화학	강관	40142189	피복강관	4014218902	폴리에틸렌피복강관	24191	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식강관 제외
			40142384	피복강관이음	4014238401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고무발포단열재	40101872	고무발포단열재	4010187201	고무발포단열재	22199	
		수량계보호통	40141786	수량계보호통	4014178601	수량계보호통	38302, 22222, 22299	
		전선관	39131706	전선관	3913170605	경질비닐전선관	22211	
					3913170610	공압출염화비닐관(FC관)		
					3913170606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913170603	폴리에틸렌전선관		
					3913170607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재활용토너카트리지	44103103	토너	4410310301	토너	26329	재활용토너카트리지에한함
		페인트	31211518	방청페인트	3121151801	방청페인트	20421	
			31211501	에나멜페인트	3121150101	에나멜페인트		
			31211599	특수페인트	3121159901	특수페인트		
			31211803	페인트용희석제및세척제	3121180301	시너		
		폴리에틸렌(PE)관	40142197	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2211, 22299	
					401421970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393	폴리에틸렌제관이음	4014239303	가스용폴리에틸렌이음관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4014239302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1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폴리에틸렌제품	24112404	상자	2411240402	운반상자	22299	
					2411240403	플라스틱상자		
			40141789	폴리에틸렌물받이	4014178902	철강보강폴리에틸렌물받이		
					4014178901	폴리에틸렌물받이		
			24112702	플라스틱팰릿	2411270201	플라스틱팰릿		
		플라스틱병	24122002	플라스틱병	2412200201	플라스틱병	22232, 22250	용기포함
		폴리에틸렌필름	30151899	방수시트	3015189901	합성고분자방수시트	22212, 22231	
			47121701	쓰레기봉투	4712170101	쓰레기봉투		
			13111201	폴리에틸렌필름	1311120101	폴리에틸렌필름		EVA제외
		폴리염화알루미늄	47101608	응집제	4710160802	무기응집제	20129	폴리염화알루미늄에한함
		플라스틱자루	24111503	플라스틱포대	2411150303	폴리에틸렌포대	22212, 22231	
					2411150301	폴리프로필렌포대	13225, 22231	
		활성탄	11101522	활성탄(活性炭)	1110152201	활성탄	20499	석탄계입상 활성탄제외
		F.R.P제품 및 SMC 포함	24111810	물탱크	2411181001	물탱크	22222, 22223, 22229	
			24111805	약품탱크	2411180501	약품탱크		
			47101535	오수처리장비	4710153501	오수처리장비		
			30231602	이동식화장실	3023160201	FRP이동식화장실		
			47101531	정화조	4710153101	정화조		
			30171588	합성수지제문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		공공분양주택제외
			30179997	합성수지제문틀	3017999701	합성수지제문틀		
			30171695	합성수지제창	3017169501	합성수지제창		창틀 포함, 공공분양주택제외
		PVC관(염화비닐관)	40142185	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185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22211	
					40142185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396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주철제제외
					40142396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12	기타	건축물일반청소업	76111501	건물청소용역	7611150101	건물청소용역	74211	
		경비업	92121599	보안관련용역	9212159901	보안관련용역	75310	기계경비업·특수경비업제외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81151699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63991	S/W산업진흥법 령에의한대기업 참여제한범위에 따름 (토지,도시 계획,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 정보를전자매체 로 제공하기위한 측량,탐사,수치지 도,정사영상지도 제작등의 기초활 동을포함)
		도로수송 서비스	78111899	도로수송서비스	7811189901	도로수송서비스	49232	전세버스업(공공 기관 출퇴근용 수송용역에 한함)
		선박(G/T 1,000톤 이상제외)	25111502	어선	2511150201	어선	31111, 31112, 31113, 31119, 31120	
			25111503	화물선및컨테이너선	2511150301	컨테이너선		
					2511150302	일반화물선		
			25111504	준설선	2511150401	준설선		
			25111505	유조선	2511150501	유조선		
			25111522	화학제품운반선	2511152201	화학제품운반선		
			25111506	예인선	2511150601	예인선		
			25111507	바지선	2511150701	바지선		
			25111508	여객및차량용도선	2511150801	자동차도선		
					2511150802	여객선		
			25111509	순항선	2511150901	순항선		
			25111510	인양선	2511151001	인양선		
			25111590	공모선	2511159001	공모선		
			25111591	어획물운반선	2511159101	어획물운반선		
			25111524	벌크화물선	2511152401	벌크화물선		
			25111525	자동차운반선	2511152501	자동차운반선		
			24101642	기중기선	2410164201	기중기선		
			25111597	기동정	2511159701	기동정		
			25111527	소형보트	2511152701	소형보트		
			25111602	소방선	2511160201	소방선		
			25111603	구조선(구조보트포함)	2511160301	구조선		
			25111518	병원선	2511151801	병원선		
			25111718	순시선	2511171801	순시선		
			25111722	경비선	2511172201	경비선		
			25111801	돛단배(휴양용에 한함)	2511180101	돛단배		
			25111802	휴양용모터보트	2511180201	휴양용모터보트		
			25111803	휴양용노젓는배	2511180301	휴양용노젓는배		
			25111806	래프트	2511180601	래프트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25111807	딩기	2511180701	딩기		
			25111808	요트	2511180801	요트		
			25112001	검역선	2511200101	검역선		
			25111529	기상관측선	2511152901	기상관측선		
			25111530	도선사선	2511153001	도선사선		
			25112004	세관감시선	2511200401	세관감시선		
			25111531	수로측량선	2511153101	수로측량선		
			25112006	어업단속선	2511200601	어업단속선		
			25112007	어업실습선	2511200701	어업실습선		
			25112008	어업조사선	2511200801	어업조사선		
			25112009	어업지도선	2511200901	어업지도선		
			25111726	오염관리선	2511172601	오염관리선		
			25112011	전마선	2511201101	전마선		
			25112012	청소선	2511201201	청소선		
			25111533	항해연습선	2511153301	항해연습선		
			25112014	해양조사선	2511201401	해양조사선		
			30222002	드라이독	3022200201	드라이독		
			30222017	잔교	3022201701	잔교		강제, 목제, 합성수지제(PE잔교제외), 경금속제에 한함
			30222018	독	3022201801	독		
		승강기 유지보수	72154010	승강기설치및유지보수용역	7215401001	승강기설치및유지보수용역	95119	승강기유지보수에한함
		자료처리 업무	81112002	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63111	S/W산업진흥법 령에의한대기업 참여제한범위에 따름
			80141622	우편발송용역	8014162201	우편발송용역(데이터 전산출력부분에한함)		
		전산업무 (소프트 웨어 개발 포함)	81111599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58221, 58222, 62010, 62021	S/W산업진흥법 령에의한대기업 참여제한범위에 따름
			81111598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22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1899	시스템관리서비스	8111189901	시스템관리서비스		
			8111181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운영위탁서비스		
			81112199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1799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전시부스 설치용역	72154099	전시부스설치용역	7215409901	전시부스설치용역	75992	해외전시회제외,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전시 홍보관 설치용역	72154099	전시홍보관설치용역	7215409902	전시홍보관설치용역		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용 전시부스설치용역,전시홍보관설치용역 등을 포함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1천5백만원)미만의 경우는 제외
		지질조사 및탐사업	81151799	지질관련용역	8115179901	지질관련용역	729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액(1천만원)이상 용역에한함, 도로·철도분야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해 지정
		측량	81151604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	측량관련용역	72921, 72924	건설공사 설계관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금액(3천만원)이상의 측량용역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호「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별표2의 각 공종별 측량항목에 한정하고 도로·철도(지하철)분야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해 지정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 - 41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고시는 2013년 8월 30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고시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7호(2013. 4. 16)는 이를 폐지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Ⅰ. 총 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등 포함)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품명,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한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23개 제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 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률정보 → 공고 → 2012년도
☞ www.smpp.go.kr → 공지사항
☞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분류〉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1.가구	(4) 가구,문,씽크대,창	50	55
2.금속	(19) 가드레일,가로등주,금속울타리용철물,난간,돌망태,방음판및방음벽,보일러및구성품,스테인레스물탱크,쓰레기통,외벽패널,일반철물,전광스코아판,조립식구조물,주물제품,창,철망,공원체육시설,케이블트레이,파형관	41	59
3.기계	(36) 공기살균기,공기조화기,냉각탑,냉동기,농업용관리기계,대형냉장고,모터펌프,무대장치,밸브,분사장비및약제,상업용오븐,소방기,소방용방제장치,송풍기,수문,승강기,약품투입기,여과기,열교환장치,음식물쓰레기처리기,응집기,일체형청정장비,자외선살균기,재활용품자동선별기,주차장치,취사용기구,크레인,탈수및배수장치,탈취기,통상여과기,팬코일유닛,펠릿연소기기,폐기물소각로,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항온항습기,혼합기및교반기	106	157
4.목재, 종이	(4) 각재,방부목,판재,합성목재	7	8
5.섬유	(1) 토목섬유	2	4
6.인쇄, 광고물 등	(3) 광고판,실물모형,안내(표지)판	3	3
7.전기	(21) 가로등기구,개폐기,경관조명기구,계장(계측)제어장치,교통신호등,도로표지병,도로표지판,무정전전원장치,발전기,배전반,변압기,비닐절연전선,수도미터,애자,유량계,자동점멸기,자동제어반,전기용연선,충전장치,프로세스제어반,실내조명기구	39	77
8.전자 · 정보통신	(8) 구내방송장치,다중화장치,열차행선안내장치,유 · 무선원격제어장치,전광판,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출입통제시스템,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13	20
9.콘크리트, 레미콘 등	(16) 레미콘,맨홀박스,석재,세라믹기와,아스팔트콘크리트,점토벽돌,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순환골재,철근콘크리트관,철근콘크리트근가,콘크리트배수로,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블록,콘크리트파일,타일	19	36
10.화학	(11) 강관,고무발포단열재,수량계보호통,전선관,페인트,폴리에틸렌(PE)관,폴리에틸렌제품,폴리에틸렌필름,플라스틱자루,FRP제품및SMC포함,PVC관	28	41
10	123	308	460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1	가구	가구	56121804	강연대	5612180401	강연대	32021, 32029, 32091, 32019	
			44111907	게시판또는액세서리	4411190701	게시판또는액세서리		
			56121009	경사진열람대	5612100901	경사진열람대		
			56121502	교실용걸상	5612150201	교실용걸상		
			56112105	라운지용의자	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56101520	로커	5610152003	군용사물함		
					5610152001	사물함		
			56101793	보조책상	5610179301	보조책상		
			56111902	산업용작업대	5611190201	산업용작업대		
			56101502	소파	5610150201	소파		
			56121505	수강용탁자	5612150501	수강용탁자		
			56121903	수장고용수납장	5612190301	수장고용수납장		
			56101543	식탁	5610154302	상		
					5610154301	식탁		
			56101531	신발장	5610153101	신발장		
			56122001	실험대	5612200101	실험대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 보조용품	5612200205	시약보관대	32029	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에한함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32021, 32029, 32091, 32019	
			56122004	실험실용씽크대	5612200401	실험실용씽크대		
			56121099	이동식서가	5612109901	이동식서가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5610170801	이동형파일서랍		
			56112102	작업용의자	5611210201	작업용의자		
			56101516	장롱	5610151601	장롱		
			56121902	전시용진열대	5612190201	전시용진열대		
			56101542	접이식의자	5610154201	접이식의자		
			52152204	가정용조리대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48102095	상업용조리대	4810209501	상업용조리대		
			56101538	찬장	5610153801	찬장		찻장포함
			56101703	책상	5610170301	책상		
			56112108	책상용콤비의자	5611210801	책걸상		
			56101507	책장	5610150701	책장		
			56101592	청소도구함	5610159201	청소도구함		
			56101515	침대	5610151501	침대		
			56121002	카운터	5612100201	카운터		
			56121507	칸막이형열람대	5612150701	칸막이형열람대		
			56101530	캐비닛	5610153001	캐비닛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56121508	컴퓨터책상	5612150801	컴퓨터책상		
			56101701	크레덴자	5610170103	문갑		
					5610170101	크레덴자		장식대, 장식품장 포함
			56101519	응접탁자	5610151901	응접탁자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5610170202	도면함		
					5610170201	파일링캐비닛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	5611160101	OA칸막이		
			56121506	학생용책상	5612150601	학생용책상		
			56101706	회의용탁자	5610170601	회의용탁자		
		문	30171504	목재문	3017150401	목재문	16221	
			30179998	목제문틀	3017999801	목재문틀		
		씽크대	52151650	가정용싱크대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48102096	상업용싱크대	4810209601	상업용싱크대		
			52152204	가정용조리대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32021, 25994	
			48102095	상업용조리대	4810209501	상업용조리대		
			48102099	주방기기용받침대	4810209901	주방기기용받침대		가스대, 복합취사대에한함
			56101538	찬장	5610153801	찬장		씽크대벽장에 한함, 찻장포함
		창	30171696	목제창	3017169601	목재창	16221	창틀포함
2	금속	가드레일	30121793	가드레일	3012179301	가드레일	25112	금속제에한함
		가로등주	39112001	조명타워	3911200101	조명타워	25113	철재 및 스테인레스제에한함
			39111526	가로등주및부속자재	3911152607	가로등주부속자재	25113	철재 및 스테인레스제에한함
					3911152606	복합형가로등주	24311, 24312, 25112, 25113	주물복합형가로등주에한함
					3911152602	스테인리스가로등주	25113	
					3911152604	주철가로등주	24311, 24312, 25112, 25113	주조제품에한함
					3911152601	철제가로등주	25113	
		금속울타리용철물	30152001	금속제울타리	3015200106	가설제울타리	25112, 25943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타리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3015200103	YL형울타리		
			30121788	낙석방지책	3012178801	낙석방지책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난간	30121703	교량난간	3012170301	교량난간	25112	알루미늄제에한함
		돌망태	31163403	돌망태	3116340301	돌망태	25943	
		방음판 및 방음벽	30121787	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3	가설방음판	25113	금속제에한함
					3012178702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보일러 및 구성품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4010209501	간접가열보일러	25121, 25130	발전용, 가정용 제외
			40102002	수관보일러	4010200201	수관보일러(관류보일러포함)		
			40102001	연관보일러	4010200101	연관보일러		
			40101834	연소기 또는 버너	4010183402	가스버너	29150	
					4010183403	가스오일겸용버너		
					4010183404	발전기용휘발유버너		
					4010183401	오일버너		
			40102092	주철제보일러	4010209201	주철제보일러	25121, 25130	
			40102006	폐열보일러	4010200601	폐열보일러		
		스테인레스 물탱크	24111810	물탱크	2411181001	물탱크	25122	PDF물탱크포함
			24111897	온수탱크	2411189701	온수탱크		
		쓰레기통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4712170201	쓰레기통	25112, 25113, 25932	일반철물에한함
							22299	폴리에틸렌제품에 한함
					4712170202	음식물쓰레기처리통	25112, 25113, 25932	일반철물에한함
							22299	폴리에틸렌제품에 한함
		외벽패널	30151802	외벽패널	3015180209	금속재패널	25112	Sheet형 단일 금속재패널에 한함(복합패널제외)
		일반철물	30191896	덱플레이트	3019189601	덱플레이트	25112, 25113, 25932	
			30103201	스틸그레이팅	3010320101	스틸그레이팅		
		전광스코아판	49221501	스코어보드	4922150101	전광스코어보드	33309, 28423	
					4922150102	기타스코어보드		
		조립식구조물	30201705	이동식초소	3020170501	이동식초소	25112, 25113, 25119	금속제에한함
			30222003	버스승강장	3022200301	버스승강장		
			30222064	자전거보관대	3022206401	자전거보관대		
			30201796	조립식구조물	3020179601	조립식구조물(지붕구조물에 한함)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3023169901	컨테이너하우스		
		주물제품	30121716	교량받침	3012171601	교량받침	24311, 24312	교좌장치. 단, 고무 또는 철판제품 제외
			30121695	맨홀뚜껑	3012169501	맨홀뚜껑		철개에한함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30121698	맨홀보조물	3012169801	맨홀보조물		
			30121779	하수악취차단장치	3012177901	하수악취차단장치		
			31163299	압륜	3116329901	압륜		
		창	30171698	금속제창	3017169801	금속제창	25111	창틀포함, 알루미늄제에 한함
		철망	30111801	용접철망	3011180101	용접철망	25943	
		공원체육시설	56101605	옥외용벤치	5610160501	옥외용벤치	33302	산책로 및 임대주택포함
			49201612	운동시설물	4920161201	운동시설물(야외헬스기구에 한함)	33301	
			49241596	조경시설물	4924159601	조경시설물(옥외용벤치포함)	33302	
			49241597	조합놀이대	4924159701	조합놀이대		
			49241511	펌걸러	4924151101	펌걸러		
		케이블트레이	39131704	케이블트레이	3913170402	덕트형케이블트레이	25113	
					3913170401	케이블트레이		
			39131705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3913170502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391317050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3913170503	케이블트레이엘보		
		파형관	40142123	파형강관	4014212301	파형강관	24132, 25112	
3	기계	공기살균기	40161699	공기살균기	4016169901	공기살균기	29174	
		공기조화기	40101709	공기조화기	4010170901	공기조화기	29172	
			40101504	공조용댐퍼	4010150402	릴리프댐퍼		
					4010150401	환기댐퍼		
			40101902	제습기	4010190201	제습기		
		냉각탑	40101716	냉각탑	4010171601	냉각탑	29171	
		냉동기	40101712	스크루냉동기	4010171201	스크루냉동기	29171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4010171001	왕복동식냉동기		
		농업용관리기계	21101904	사료배합기	2110190401	사료배합기	29210	
			23181506	세척장치	2318150603	과일세정살균기		농산물세척기에 한함
					2318150602	자동야채세척기		
		대형냉장고	24131503	대형냉장고	2413150301	대형냉장고	29171	
		모터펌프(발전용 및 LNG용 제외. 단, 농업용은	40151566	부스타펌프	4015156601	부스터펌프	29131	
			40151570	사류펌프	4015157001	입축사류펌프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 1,200mm초과 제
					4015157002	횡축사류펌프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적용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외
			40151513	수중펌프	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 1,200mm초과 제외
					4015151301	수중펌프		
			40151525	슬러지펌프	4015152501	슬러지펌프		
			40151547	심정용펌프	4015154701	심정용펌프		
			40151517	오수펌프	4015151701	오수펌프	29131	
							29175	하수처리용펌프 포함
		토출구경에 관계없이 포함)	40151503	원심펌프	4015150301	다단벌류트펌프		상수도용토출구경 500mm이상제외
					4015150302	단단벌류트펌프		
					4015150303	양흡입벌류트펌프		
					4015150305	자흡식펌프		
					4015150304	편흡입벌류트펌프		
			40151599	자동펌프	4015159901	자동펌프	29131	펌프모터일체형 펌프에한함
			40151553	전진공동펌프	4015155301	전진공동펌프		
			40151505	정량펌프	4015150501	정량펌프		
			40151546	축류펌프	4015154601	입축축류펌프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 1,200mm초과 제외
					4015154602	횡축축류펌프		
		무대장치	30221099	무대장치	3022109901	무대장치	29299	
		밸브	40141620	버터플라이밸브	4014162001	버터플라이밸브	29133	
			40141694	제수밸브	4014169401	제수밸브		
			40141688	체크밸브	4014168801	체크밸브		
			40141615	플랩밸브	4014161501	플랩밸브		
		분사장비 및 약제	46191603	소방호스또는노즐	4619160301	소방호스용노즐	29194	
					4619160302	소화용호스		
		상업용 오븐	48101517	상업용오븐	4810151701	상업용오븐	28511	
		소방기	46191601	소화용기구	4619160102	소화전	29133	
					4619160101	수동식소화기	29194	
					4619160107	에어졸식소화용구		
					4619160111	자동식소화기		
					4619160103	캐비닛형소화기		
					4619161301	소화약제		포소화약제에 한함
					4619160105	하론소화설비		
					4619160109	CO2소화설비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4619160115	HCFC소화설비		
		소방용방재장치	46182504	화재수신기	4618250401	화재수신기	26410, 28901	중계기포함
		송풍기	40101504	공조용댐퍼	4010150402	릴리프댐퍼	29173	
					4010150401	환기댐퍼		
			23990599	소음기	2399059901	소음기		
			40101601	송풍기	4010160101	송풍기		
		수문	24101676	가동보	2410167601	가동보	25111	고무가동보제외
			40141784	수문	4014178401	수문문비	25111	수문 1련당면적 20㎡초과제외
					4014178402	수문문틀		
					4014178403	수문밸브	29133	
			24101685	수문권양기	2410168501	수문권양기	29210	
		승강기	24101682	덤웨이터	2410168201	덤웨이터	29162, 29163	
			24101601	엘리베이터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속도분속 105M이하
			24101696	휠체어리프트	2410169601	휠체어리프트		
		약품투입기	47109960	약품투입기	4710996001	약품투입기	29175	오존발생장치 제외
			47101505	염소처리장비	4710150501	염소투입기		
					4710150503	이산화염소발생기		
					4710150502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여과기	40161505	공기여과기(에어필터)	4016150501	공기여과기(에어필터)	29174	
			40161508	백필터	4016150801	백필터	29174	
			40161503	집진기	4016150305	관성력집진장치	29174	
					4016150302	세정집진장치		
					4016150303	원심력집진장치		
					4016150301	전기집진장치		
					4016150306	제진장치		
					4016150304	중력집진장치		
		열교환장치	40101802	열교환장치	4010180201	열교환기	29176	
		음식물쓰레기처리기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기	2318199801	음식물쓰레기처리기	29299	
		응집기	47109992	응집기	4710999201	응집기	29175	
		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	30201704	청정실	3020170401	청정실	29172	
		자외선살균기	47101517	자외선살균기	4710151701	자외선살균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재활용품자동선별기	24102298	재활용품압축기	2410229801	재활용품압축기	29299	
		주차장치	24101687	자동주차장치	2410168701	자동차주차장치	29162, 29169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24101689	주차관제장치	2410168905	주차경보등	29163, 28903	
					2410168910	주차관제주변기기		
					2410168902	주차권발행기		
					2410168908	주차권판독기		
					2410168906	주차안내판		
					2410168907	주차요금계산기		
					2410168901	주차주제어장치		
					2410168904	차량감지기		
					2410168903	차량인식기		
					2410168909	차량차단기		
			30221002	주차구조물	3022100201	주차구조물	29162, 29169, 42139	
		취사용 기구 (가정용 제외)	48102097	배식대	4810209701	배식대	28511	
					4810209702	식판배분대		
			48101809	상업용곰솥또는국솥	4810180901	국솥		
			48101511	상업용그리들	4810151101	부침기		
			48101521	상업용레인지	4810152101	상업용가스레인지		
					4810152102	중화식레인지		
			48101530	상업용밥솥	4810153004	가스밥솥		
					4810153001	증기밥솥		
					4810153002	취반기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4810161501	상업용식기세척기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4810189601	상업용주방후드		
			23181506	세척장치	2318150601	세미기		
			52152202	식기건조대	5215220201	식기건조대		
			48101710	음수대	4810171001	음수기		
					4810171002	음수대		
			48101894	음식쓰레기처리대	4810189401	음식쓰레기처리대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4810181801	주방기구소독기		식기건조기포함
			24101501	카트	2410150101	카트		
		크레인	24101654	갠트리크레인	2410165401	갠트리크레인	29169	
			24101652	지브크레인	2410165201	지브크레인		
			24101653	천장크레인	2410165301	천장크레인		
			24101602	호이스트	2410160201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2410160202	전동식체인호이스트		
		탈수 및 배수장치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4710152507	디스크형농축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4710152503	디칸터형원심탈수기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4710152501	벨트프레스탈수기		
					4710152502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4710152504	원심농축기		
					4710152506	중력식벨트농축기		
					4710152508	진공탈수기		
					4710152505	필터프레스탈수기		
		탈취기	40161605	탈취기	4016160501	탈취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통상여과기	47109970	상향류식여과장치	4710997001	상향류식여과장치	29175	
			47109972	섬유여과기	4710997201	섬유여과기		
			40161502	워터필터	4016150201	워터필터		
		팬코일유닛	40101708	팬코일유닛	4010170801	팬코일유닛	29172	
		펠릿연소기기	40102098	나무보일러	4010209801	나무펠릿보일러	29150, 25121, 25130	
		폐기물소각로(70ton/일이하)	47101529	소각로	4710152901	소각로	29150	가스냉각장치 및 유해가스저감장치 포함
			40101850	화장로	4010185001	화장로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47109995	거품제거기	4710999501	거품제거기	29175, 29163	
			47109976	경사판침강장치	4710997601	경사판침강장치		
			47109979	드럼스크린	4710997901	드럼스크린		
			47109991	디스크스크린	4710999101	디스크스크린		
			40161607	배연탈황기	4016160701	배연탈황기		
			24101712	벨트컨베이어	2410171201	벨트컨베이어		
			47101542	부상분리장치	4710154201	부상분리장치		
			47101513	산소발생기	4710151301	산소발생기		
			47109997	수중포기기	4710999701	수중포기기		
			47109998	스컴제거기	4710999801	스컴제거기		
			24101730	스크루컨베이어	2410173001	스크루컨베이어		
			47101536	슬러지수집기	4710153601	슬러지수집기		
			24101714	에어컨베이어	2410171401	에어컨베이어		
			47109965	여과사인양기	4710996501	침사인양기		
			47109990	염소가스중화장치	4710999001	염소가스중화장치		
			47109964	오수처리용산기장치	4710996401	오수처리용산기장치		
			47101522	용수처리장치	4710152201	일체형폐수처리장치		
			40161701	원심분리기	4016170101	원심분리기		
			24101746	이동식컨베이어	2410174601	이동식컨베이어		
			47109980	제진기	4710998001	제진기		
			24101722	체인컨베이어	2410172201	체인컨베이어		
			47109987	평면스크린	4710998701	평면스크린		
			47109978	협잡물처리기	4710997801	협잡물처리기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47109989	호퍼	4710998901	호퍼		
			47101501	활성탄장비	4710150102	활성탄공급장치		
		항온 항습기	40101715	항온항습기	4010171501	항온항습기	29172	
		혼합기 및 교반기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4710151201	교반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4710151202	혼합기		
4	목재 종이	각재	30103622	각재	3010362201	각재	16101	
			30121898	수목보호용지지대	3012189801	수목보호용지지대		목재에한함
		방부목	11122006	방부목(防腐木)	1112200601	방부목	16103	
		판재	30161702	목재마루재	3016170202	목블록	16101, 16102	
					3016170201	플로어링보드		
			30103605	목재판재	3010360501	목재판재		
			30161901	루버(벽판재)	3016190101	루버(벽판재)		목재에한함
		합성목재	30103699	합성목재	3010369901	합성목재	16212	
5	섬유	토목섬유	30121786	차수매트	3012178601	차수매트	13992, 13994	
			30121702	토목섬유	3012170204	복합포	13992, 13994	
					3012170201	직포매트	13999, 13225, 13229, 13219	P.P섬유 직포매트(PET 제품포함)에 한함. 단, 복합매트 제외
					3012170202	토목용부직포	13992, 13994	
6	인쇄 광고물 등	광고판	55121904	광고판	5512190401	간판	33910	
		실물 모형	60109899	실물모형	6010989901	실물모형	33934	전시용영상. 특수효과장치 및 과학전시물 포함
		안내(표지)판	55121718	안내판(철도안내표지판 포함)	5512171801	안내판(철도안내표지판 포함)	33910	옥내·외안내(표지)판에한함
							18111	
7	전기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	3911160801	보안등기구	28422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39101617	고압나트륨등	3910161701	고압나트륨램프	28410	
			39111603	도로조명설비	3911160301	가로등기구	28422	
					3911160303	터널용등기구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39111801	등안정기	3911180102	나트륨램프용안정기	28113	
					3911180101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3911180104	무전극램프용안정기		
					3911180106	LED램프용 안정기		
			39101614	메탈할라이드등	3910161401	메탈할라이드램프	28410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39111697	신재생에너지가로등	3911169701	태양광가로등	28422	
					3911169703	하이브리드가로등		
			39101699	LED램프	3910169901	LED램프	28410	
		개폐기	39121105	개폐장치	3912110503	부하개폐기	28121	25.8KVA이하 가공용 가스절연부하개폐기에한함
		경관조명기구	39111606	수중조명	3911160602	수중조명등	28422, 28423, 28429	광섬유,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휴대용 탐조등 제외
					3911160601	LED수중조명등		
			39111605	경관조명	3911160502	경관조명기구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11611	투광조명	3911161101	투광등기구		
					3911161102	LED투광등기구		
					3911161103	탐조등		
		계장(계측)제어장치	39121189	계장제어장치	3912118901	계장제어장치	28122	통합감시제어설비포함. 일처리능력으로 하폐수는 10만톤, 상수는 30만톤이하의 수처리설비에 한함
		교통신호등	46161504	교통신호등	4616150401	교통신호등	28903	
					4616150403	교통신호제어기		
			46161572	신호등주및액세서리	4616157201	신호등주	25113	
		도로표지병	46161585	도로표지병	4616158501	도로표지병	25999, 22299	
		도로표지판	55121710	교통표지	5512171001	교통안전표지	25995	
					5512171002	도로표지		
			55121712	방향표지판	5512171201	방향표지판		
		무정전전원장치(UPS)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	28119	생산용량500KVA이하에한함
		발전기	26111601	디젤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28111	2,000KW초과 및 해상용 제외, 방음형포함
		배전반	39121103	배전반	3912110301	폐쇄형배전반	28122	중앙감시반,154KV,345KV용보호배전반포함
					3912110303	배전함		
			39121101	분전반	3912110101	분전반		
					3912110102	분전함		
					3912110103	주택용분전반		
			39121104	전동기제어반	3912110401	전동기제어반		
		변압기	39121001	배전용변압기	3912100102	건식변압기	28112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3912100101	몰드변압기(3,000KVA이하에 한함)		아몰퍼스변압기 포함
					3912100104	유입변압기		아몰퍼스변압기, 고전압변압기포함
					3912100105	주상변압기		25.8KV-Y이하에 한함
					3912100106	철도용단권변압기		
			39121002	전력변압기	3912100201	전력용변압기		25.8KV-Y이하에 한함
			39121030	지상변압기	3912103001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3912103002	일반지상변압기		25.8KV-Y이하에 한함
		비닐절연전선	26121524	절연전선및피복선	2612152404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28302	
					2612152412	옥외용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41112504	수량계	4111250401	수도미터	27214	
		애자	39122182	애자	3912218206	인류애자	23213, 28902	내오손 결합애자 포함, 36,000Lbs 이하현수
					3912218201	지지애자		
					3912218204	포스트애자		
					3912218205	핀애자		
					3912218203	현수애자(자기애자제외)		
		유량계	41112501	유량계	4111250101	유량계	27214	유량계관련 계측기기 포함, 휴대용 유량계 제외
		자동점멸기	39121107	조명제어장치	3912110701	가로등자동점멸기	28122	LED가로등자동점멸기포함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자동제어반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빌딩자동제어장치	28122	
			39121106	전력감시또는제어장치	3912110604	모니터장치		정전류조정기, 최대수요전력제어기, 모니터장치, 집중표시제어장치, 전력보호감시장치에 한함
					3912110605	전력보호감시장치		
					3912110602	정전류조정기		
					3912110606	집중표시제어장치		
					3912110603	최대수요전력제어기		
		전기용연선	26121522	나선(裸線)	2612152204	전기용경동연선	28302	
					2612152202	전기용연동연선		
		충전장치	26111704	충전장치	2611170401	산업용충전장치	28119	송변전용, 통신용에한함
		프로세스제어반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4111249801	프로세스제어반	27215, 27216	상하수측정용 계측기포함
		실내조명기구(LED용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	3911151501	다운라이트	28422, 28423, 28429,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39111801	등안정기	3911180103	형광램프용안정기	28113	
		기구 포함)	39111501	형광등기구	3911150105	공조등	28422, 28423, 28429	
					3911150103	매달림형형광등기구		
					3911150101	매입형형광등기구		
					3911150104	벽부형형광등기구		
					3911150102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39112102	LED실내조명등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28422, 28423, 28429	
8	전자·정보통신	구내방송장치	45111705	구내방송장치	4511170501	구내방송장치	26521, 26529, 26421	
		다중화장치	43221810	광다중화장치	4322181001	광다중화장치	26410	
			43222695	다중통신장비	4322269501	다중통신장비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4322282201	시분할다중화장치		
		열차행선안내장치	25250325	열차행선안내장치	2525032501	열차행선안내장치	31202, 28423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43221521	원격접속장치	4322152101	원격접속장치	27211, 27215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전광판	55121903	전광판	5512190303	교통정보전광판	28423	
					5512190302	기상전광판		
					5512190301	안내전광판		
		전화 교환기 네트워크 연결장치	43222696	동보장치	4322269601	동보장치	26410	
			43221501	자동안내장치	4322150101	자동안내장치		
			43222818	배선반	4322281801	구내단자함		
					4322281802	국선단자함		
					4322281803	본배선반		
					4322281804	중간배선반		
					4322281805	통합배선반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출입통제시스템	26329, 26410	
							28901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46171610	보안용카메라	4617161001	영상감시장치	26421, 26429	
					4617161002	CCTV카메라		
			46161516	차량번호판독기	4616151601	차량번호판독기		불법주차 및 보안용에한함
9	콘크리트,레미콘	레미콘	30111505	레미콘	3011150501	레미콘	23322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로 할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수 있음
		맨홀박스	30121699	맨홀박스	3012169901	콘크리트맨홀블록	23326	유리섬유복합관 맨홀제외
					3012169902	플라스틱계맨홀	22299, 22211	PE맨홀에한함
		석재	30131503	석재블록	3013150301	자연석경계석	23911, 23919	
			30131702	석재타일및판석	3013170201	자연석판석		
			11111698	조경석	1111169801	조경석		
			11111604	화강암	1111160401	화강석		
		세라믹기와	30151590	세라믹기와	3015159001	그을림한식기와	23231	
					3015159003	오지기와		
					3015159002	유약기와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23991	
		점토벽돌	30131602	세라믹벽돌	3013160202	미장벽돌	23231	
					3013160201	점토바닥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23326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30131598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30131598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동	순환골재	30109904	순환골재	3010990401	순환골재	38230	제품제조용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생산한 순환골재는 제외
		철근콘크리트관	40142109	콘크리트관	4014210903	원심력유공철근콘크리트관	23326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제외
					401421090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4014210902	진동및진압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근가	30111804	철근콘크리트근가	3011180401	철근콘크리트근가	23325, 23326	
					3011159301	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배수로	40141782	배수로	4014178201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23326	
					4014178202	철근콘크리트플룸관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4014178203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콘크리트벽돌	30131603	콘크리트벽돌	3013160301	콘크리트벽돌	23325	
		콘크리트블록	30131502	콘크리트블록	301315020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23325, 23326	
					3013150206	소파블록		
					3013150204	속빈콘크리트블록		
					3013150209	콘크리트경계블록		인조경계석포함
					3013150202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콘크리트파일	30102802	콘크리트파일	3010280201	콘크리트파일	23326	PHC파일에한함
		타일	30131704	세라믹타일및판석	3013170403	그림타일	23232	
					3013170401	도기질타일		
					3013170405	모자이크타일		
					3013170408	부조타일		
					3013170402	자기질타일		
10	화학	강관	40142189	피복강관	4014218902	폴리에틸렌피복강관	24191	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식강관제외
			40142384	피복강관이음	4014238401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고무발포단열재	40101872	고무발포단열재	4010187201	고무발포단열재	22199	
		수량계보호통	40141786	수량계보호통	4014178601	수량계보호통	38302, 22222, 22299	
		전선관	39131706	전선관	3913170605	경질비닐전선관	22211	
					3913170610	공압출염화비닐관(FC관)		
					3913170606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913170603	폴리에틸렌전선관		
					3913170607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페인트	31211518	방청페인트	3121151801	방청페인트	20421	
			31211501	에나멜페인트	3121150101	에나멜페인트		
			31211599	특수페인트	3121159901	특수페인트		
			31211803	페인트용희석제및세척제	3121180301	시너		
		폴리에틸렌(PE)관	40142197	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2211, 22299	
					401421970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393	폴리에틸렌제관이음	4014239303	가스용폴리에틸렌이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분류번호	
						음관		
					4014239302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1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폴리에틸렌제품	24112404	상자	2411240402	운반상자	22299	
					2411240403	플라스틱상자		
			40141789	폴리에틸렌물받이	4014178902	철강보강폴리에틸렌물받이		
					4014178901	폴리에틸렌제물받이		
			24112702	플라스틱팰릿	2411270201	플라스틱팰릿		
		폴리에틸렌필름	30151899	방수시트	3015189901	합성고분자방수시트	22212, 22231	
			47121701	쓰레기봉투	4712170101	쓰레기봉투		
			13111201	폴리에틸렌필름	1311120101	폴리에틸렌필름		EVA제외
		플라스틱자루	24111503	플라스틱포대	2411150303	폴리에틸렌포대	22212, 22231	
					2411150301	폴리프로필렌포대	13225, 22231	
		F.R.P 제품 및 SMC 포함	24111810	물탱크	2411181001	물탱크	22222, 22223, 22229	
			24111805	약품탱크	2411180501	약품탱크		
			47101535	오수처리장비	4710153501	오수처리장비		
			30231602	이동식화장실	3023160201	FRP이동식화장실		
			47101531	정화조	4710153101	정화조		
			30171588	합성수지제문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		
			30179997	합성수지제문틀	3017999701	합성수지제문틀		
			30171695	합성수지제창	3017169501	합성수지제창		창틀포함
		PVC관 (염화비닐관)	40142185	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185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22211	
					40142185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396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주철제제외
					40142396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7 2012년 전라남도 자체 적산기준 마련

1. 하상보호공 중 "전석붙임공"에 따른 대가 기준 마련

하천의 하상구간 세굴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하상보호공은 기성 콘크리트제품 설치대가 외의 대가 기준이 없어 자주 적용하는 "전석돌붙임"에 따른 기준 적용품셈을 마련 적정한 단가산출 유도

● 개 요

○ 하천의 하상구간 세굴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하상보호공종 중 기성 콘크리트 제품설치 외 "전석 돌붙임"을 위한 표준대가가 없어 각 발주처 설계시 적용 대가가 상이하게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대가 마련 필요

【하상보호공 - 전석붙임】

【하천 - 전석쌓기】

● 적용현황 및 문제점

○ 검토배경 및 문제점

• 발주처 적용대가가 각기 상이

구분	사석고르기 + 사석부설품	전석쌓기 품 50%	돌붙임 품(뒷길이60cm)
적용품	보통인부0.01인+굴삭기0.128hr (0.7㎥~1.0㎥급)	석공 0.14인 + 굴삭기0.43hr (0.6㎥급) × 0.5	석공 0.09인 + 보통인부 0.05인 + 굴삭기 (0.6㎥급)0.27hr
적용내용	사석의 크기 30kg 이상 규모	0.5㎥내외 전석, 고임돌 및 채움 콘크리트 포함	경사도1:1보다 완만한 경우 고임돌 및 채움재 품 포함
단가	8,866원/㎥	21,120원/㎥	30,462원/㎥

- 하상의 전석붙이기 공종에 대한 대가 중 사석고르기+사석부설품은 ㎥당으로 산정되어 있고 채움 콘크리트 공종이 누락되어 있어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 전석쌓기 품 50% 적용 부문은 적용요율 50% 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돌붙임 품의 경우에는 평지가 아닌 경사구간에 적용되는 품으로써 본 공종의 설치 품에 부 적정

● 개선사항

○ 하상 전석붙임의 경우 하상바닥에 규격에 맞는 전석을 부설하고 채움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는 방법으로 공종이 진행되므로 석공과 굴삭기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인부품은 전석쌓기 품을 기준으로 하되 바닥에 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석쌓기 품의 50%인 석공 0.07인를 적용하고, 기계경비는 사석부설+ 사석고르기 1㎥적용 시간을 기준으로 굴삭기 0.13hr 반영

⇒ 석공 0.07인 + 굴삭기 0.13hr(0.6㎥)급 = 15,860원/㎡

2. 해상운반 장비 기준 마련

항만공사 시 석재 등을 운반하는 해상운반에 있어 장비조합이 소규모 장비로 임의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이 필요

● 개 요

○ 우리 도의 경우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41%, 해안선이 6만475km(전국46%) 섬은 2,219개(전국의66%)로서 도서지역의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항만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항만공사 시 석재 등의 해상운반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적용현황 및 문제점

○ 현행기준(국토해양부 기준)

대 선	예 선	속 채 움	피 복 석
300TON	250HP (187KW)	백호우(무한궤도), 로더	크레인
		134㎥적재	153㎥적재
500TON	350HP (261KW)	백호우(무한궤도), 로더	크레인
		227㎥적재	259㎥적재
1500TON	800HP (600KW)	백호우(무한궤도), 로더	크레인
		675㎥적재	675㎥적재

⇒ 도서지역 석재(사석, 피복석 등)운반시 접안 및 적재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예선+대선의 장비조합이 대부분 500톤급 대선사용을 기준으로 설계 반영됨에 따라 계약심사시 반복적인 감액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사항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 및 접안구역의 수심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토록 현장여건 기준(안)마련

가. 대선에서 직접투하 시 단가 비교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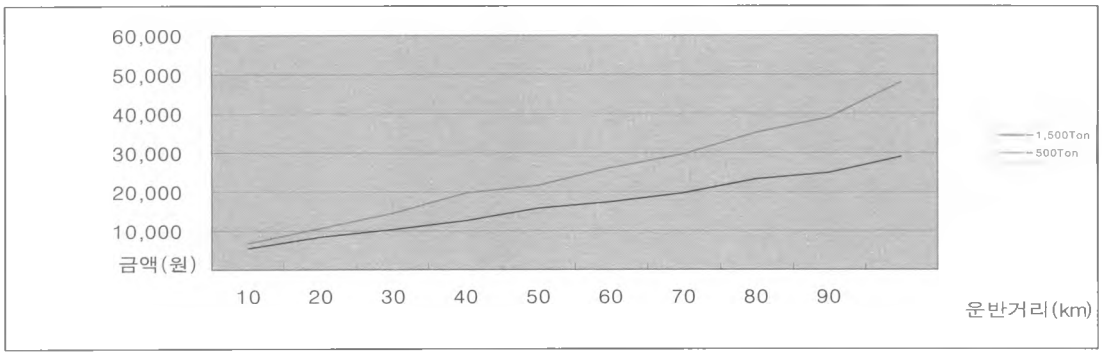

⇒ "가" 그래프의 경우 입방미터(㎥)당 1,500톤 대선에서 직접사석을 투하 할 경우 해상운반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500톤 대선사용에 비해 가격 폭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 1500톤급 해상운반 → 현장야적 후(전치) 투하시 단가 비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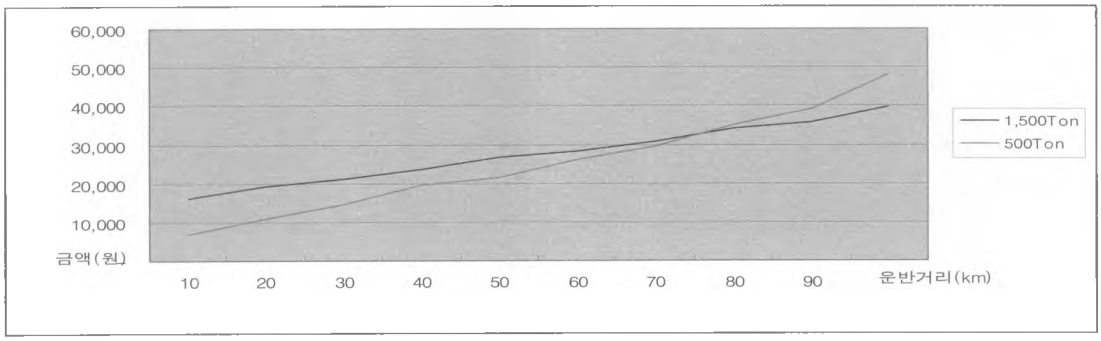

⇒ "나" 그래프의 경우에는 여객선이나 각종 선박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1,500톤 대선으로 공사현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한 후 공사 가능시간에 현장운반을 통해 사석투하 시 운반거리 80km 이상에서부터 1,500톤 대선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1,500톤 대선의 경우 접안이 가능한 수심이 3.5~4.0m임을 고려하고 운반량과 운반거리 등을 감안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상운반선 규격을 선정

구 분	(예선 350HP +대선 500톤) 이하 규모	(예선 800HP +대선 1,500톤)
운반 장비 기준(안)	- 접안구역 만조시 수심 4m 이하인 경우 - 해상운반량이 소규모인 경우 (500톤 적재량 - 259㎥ 이하)	- 접안구역 만조시 수심 4m 이상 - 해상운반(80km 이상)후 현장야적을 통한 투하

3. 옹벽형 식생블럭 설치대가 기준 마련

하천보호공 중 하천제방에 설치되는 "호안블럭 붙이기" 에 대한 적용품이인력, 기계사용 설치에 대한 품은 건설표준품에 반영되어 있으나, 옹벽형 식생블럭 설치에 대한 표준품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대가 마련

● 개 요

○ 하천제방의 호안블럭 붙이기에 대한 표준품 중 인력, 기계사용시의표준품은 게재되어 있으나, 옹벽형 식생블럭 쌓기 품에 대한 적용대가가 없어 이에 대한 기준대가 마련 필요

【호안블럭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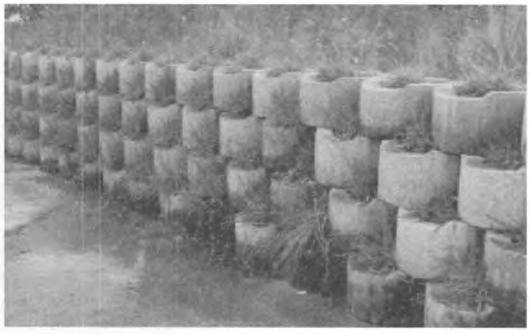

【옹벽형 식생블럭】

● 적용현황 및 문제점

○ 옹벽형 식생블럭은 보강토 옹벽 설치구간과 같이 하천 폭이 좁거나 추가적인 편입토지 매입이 어려운 지역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래 친환경적 하천 설계를 위해 옹벽형 블럭의 설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 옹벽형 식생블럭에 대한 설치품이 없어 발주처 설계시 주로업체견적에 의존하거나, 보강토 옹벽 설치품의 50%, 사면 호안 블록 붙이기(인력설치) 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럭 설치 품 등으로 각기 임의 반영되고 있어 발주처마다 각기 기준 대가가 상이한 실정임.

구분	인력 - 블록붙이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럭설치	보강토 옹벽(블럭식)설치 품 (50%)
적용 대가	특별인부 0.076인 보통인부 0.066인	-기계시공 (비탈경사 1:1.0 ~ 1:1.5미만) 특별인부 0.083인 보통인부 0.093인 트럭크레인(15톤)0.09hr	특별인부 0.2인, 보통인부 0.17인 굴삭기 (0.6㎥급)0.5h 진동롤러(자주식10톤)0.46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톤)0.29hr의 50%
단가	12,132원/㎡	20,840원/㎡	51,822원/㎡

● 개선사항

○ 위 공정은 제방사면의 호안블럭 설치(붙이기)와 다르게 계단식으로 블록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시공되어 사면호안 인력 블록 붙이기 품에 비해 다소 난이도가 따르는 공종이며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럭 설치 품은 도로비탈면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블록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본 공종과의 적용이 유사하나, 옹벽블럭(500×500×250m/m) 설치가 평방미터(㎡)당 8개 총 중량 560kg에 대해 직립으로 축조하는 장비의 소요시간이 0.09hr로 약 5.4분에 불과하여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고, 본 공종의 경우 하천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작업여건이 육상에서보다 효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보강토 옹벽설치 품의 경우에는 보강재(그리드)설치, 다짐, 뒷채움에 대한 품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품의 50%적용의 근거도 본 공정에는 적용 품이 적합하지 않음.

○ 업체의 설치견적 품〔작업반장 0.03인 + 특별인부 0.05인 + 보통인부 0.07인 + 굴삭기 0.23hr(0.6㎥급)+ 잡재료(재료비3%)〕로서 이를 검토한 결과

- 개당(500×500×250m/m)중량이 약 70kg이며, ㎡당 8개의 옹벽블럭(560kg)이 소요되어 축조시에는 장비의 도움이 불가피함에 따라 굴삭기의 작업시간 0.23hr(14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작업반장 계상은 보강토 옹벽블럭 축조 품과 비교 난이도가 작은 공종임을 감안 삭제

- ㎡당 투입인부는 특별인부 0.05인(24분), 보통인부 0.07인(33분)으로 사면형 호안블럭 붙이기 품이 특별인부 0.076인(36분), 보통인부 0.066인(31분)으로서 작업시간을 고려 30분 내외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잡재료비는 별도의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삭제

○ 위와 같이 옹벽형 호안블럭 설치기준을 특별인부 0.05인 + 보통인부 0.07인 + 굴삭기 0.23hr(0.6㎥급)으로 기준(안) 마련

⇒ 특별인부 0.05인 + 보통인부 0.07인 + 굴삭기 0.23hr(0.6㎥)급 = 24,905원/㎡

4. 용역대가 산출 시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

책임감리 등 용역대가 산정 시 제경비 등 요율적용 항목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비적용 관련 기준요율을 마련 적정한 단가산출 유도

● 개 요

○ 제경비는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 직원급여, 사무실운영비 등 이며, 일반적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적용

○ 기술료는 연구비, 기술개발비, 이윤 등을 의미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40%를 적용

● 적용현황 및 문제점

○ 검토배경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기준요율범위內 평균값으로 적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예산상황에 따라 임의로 축소조정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5%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30% 적용

● 조치사항

○ 건축물의 종류, 사업별 공종난이도 등에 따른 요율적용

구 분	기 준	적용현황	심사적용	비고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115%	단순공종 110%	
			보통공종 115%	
			복잡공종 120%	
기술료	(직.인+제경비)의20~40%	30%	단순공종 20%	
			보통공종 30%	
			복잡공종 40%	

【 사업별 공종난이도 】

구 분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토목공사	- 구조물이 없는 부지조성 - 하천제방, 호안 등 - 국도,지방도를 제외한 일반도로 - 상·하수관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일반조경	- 철도, 지하철 - 국도, 지방도 - 600mm이상 하수관 - 400mm이상 상수관 -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단순, 복잡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 비대칭구조의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 대구경 터널공사 - 정수장, 배수장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수중구조물
건축공사	- 공장,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식물 관련시설	- 공동주택 - 교육 및 복지시설 - 업무, 숙박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단순, 복잡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공공용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5.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기계 설치품 적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수처리기계 설치품 적용시 상세내역 등이 없이 견적가(1식)로 적용되어 설계심사시 검토가 어려운 실정으로 품의 적용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마련 적정한 단가산출 유도

● 개 요

○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계획마련 및 공공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있음

● 적용현황 및 문제점

○ 검토배경 및 문제점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기계 설치내역"은 세부내역 없이 견적(1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기준대가 마련이 필요
-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장여건상 불필요한 비계공 노임과 기계설치비가 이중 계산되어 있었으며, 공장제작 기계의 자재물량과 제작 노무비가 과다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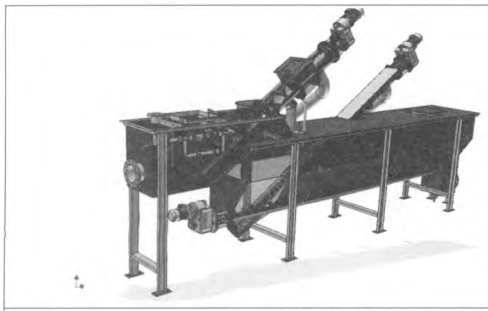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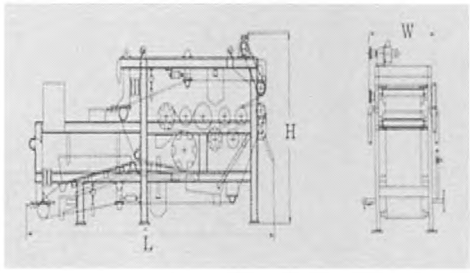
협잡물처리기	슬러지 탈수기

● 조치사항

○ 실시설계 시 업체 견적가 1식으로 설계하지 않도록 도 산하 건설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고, 전체 사업부서에 3회에 걸쳐 공문 통보하였으며, 견적가(1식)로 제출된 내역은 상세 제조원가 등을 제출받아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심사

⇒ 일반기계 설치 견적가 → 기계 건설공사 표준품셈

8 공사용 주요자재 도내 생산업체 현황

(2013. 8월말 현재)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생산품	연 락 처	비고
강 관					
㈜호남스틸	순천시 서 면	김철신	파형강관	754-4900	
㈜픽슨	광양시 옥곡면	정성만	파형강관	760-7625	
(주)서해금속산업	담양군 금성면	서명호	파형강관	383-0434	
동원철강㈜	보성군 미력면	강해영	파형강관	852-9988	
㈜페이스스틸	해남군 옥천면	이상엽	파형강관	537-4006	
(유)드림	영광군 군서면	정수미	파형강관	353-7722	
가로등주					
서평전기공업㈜	목포 공단중앙로	안효선	가로등주	062-943-3120	
㈜태흥	여수시 율촌면	정원일	가로등주	644-9000	
㈜원일테크	순천시 해룡면	강정미	가로등주	726-0086	
(주)뉴그린코리아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배문자	가로등주	062-941-4646	
㈜미래로드	화순군 도곡면	김용성	가로등주	375-7866	
남악이엔지	무안군 삼향읍	김수형	가로등주	285-7966	
㈜미로	영암군 군서면	최병술	가로등주	471-7397	
공기순환기					
(유)세진이엔씨	목포시 연산동	노연택	공기순환기	245-6351	
환경이엔스피	담양군 대전면	송준영	공기순환기	381-1133	
하나에너텍	담양군 담양읍	오충록	공기순환기	382-9858	
교량난간					
㈜ 혜성	목포 공단중앙로	김가원	교량난간, 디자인난간	02-1588-2811	
(유)한국메탈	목포 공단중앙로	전금숙	교량난간	278-3831	
㈜ 호남엠엔씨	순천시 주암면	정문옥	교량난간	755-5977	
두륜산업개발㈜	해남군 북일면	이재홍	교량난간, 디자인난간	062-943-4245	
교통신호등					
(유)옵토피아	나주시 봉황면	김영희	신호등, 제어기	337-9633	
기 와					
동부요업㈜	구례군 간전면	박문환	한식기와	781-0987	
디젤발전기					
㈜선테크	순천시 조례동	이선휴	비상발전기	721-2222	
무정전전원장치					
보영파워테크㈜	영광군 백수로길	임병선	무정전전원장치	062-973-1717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생산품	연 락 처	비고
물탱크					
은우산업	여수시 화양면	최희선	물탱크	762-2193	
㈜DS ENG	순천시 해룡면	김영철	물탱크	727-0224	
㈜삼원테크	화순군 동 면	황대연	물탱크	373-3221	
현진기업	담양군 무정면	임용택	물탱크	062-972-8235	
(주)원진	보성군 미력면	김근표	물탱크	853-7750	
세보금속스텐㈜	장성군 동화면	박웅기	물탱크	395-4551	
보안 LED 등기구					
㈜파루	순천시 서 면	강문식	보안 LED 등기구	755-5114	
케이씨전자	함평군 월야면	문창대	보안 LED 등기구	322-7400	
벽돌,블록,돌망태					
천일콘크리트	여수시 소라면	이식재	블록	686-1001	
㈜주암콘크리트	순천시 주암면	이태훈	블록	755-3111	
남광콘크리트	순천시 서 면	염천수	블록	755-0611	
㈜중앙씨앤에스	순천시 서 면	유승호	블록	755-6500	
㈜주암콘크리트	순천시 주암면	이태훈	블록	755-3111	
㈜일성기업	나주시 반남면	나용철	블록	339-2000	
㈜대부	나주시 봉황면	정길주	블록	337-8777	
㈜남양호안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김영자	블록	335-4760	
㈜오성그린콘크리트	나주시 다시면	안병무	블록	335-5559	
㈜신우콘크리트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이현정	블록	335-0088	
삼호큰크리트㈜	담양군 금성면	신을호	블록	371-3535	
거보산업㈜	담양군 금성면	양 훈	블록	383-0330	
㈜우리이앤씨	곡성군 고달면	최석주	블록	363-5011	
㈜금호에코텍	곡성군 곡성읍	조영선	블록	363-2300	
성산산업(유)	곡성군 겸 면	이상일	블록	382-5350	
성호산업㈜	구례군 간전면	하성호	블록	781-7001	
남도산업㈜	보성군 정자길	박부심	블록	853-1193	
대성산업㈜	화순군 이양면	조동엽	블록	373-4488	
㈜남양산업	화순군 이양면	이봉권	블록	371-2030	
대원콘크리트㈜	강진군 성전면	박희정	블록	432-9919	
대흥콘크리트㈜	해남군 옥천면	박필용	블록	535-5849	
희망산업㈜	무안군 청계면	양 광	블록	453-3701	
대부산업㈜	영암군 삼호읍	고이남	블록	462-1201	
(유)광전피씨	영암군 군서면	이정덕	블록	473-2502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생산품	연 락 처	비고
㈜플러버	함평군 월야면	문연향	블록	070-4636-5004	
㈜에코엠앤씨	함평군 함평읍	소유림	블록	323-0000	
대성산업㈜	영광군 군서면	한정수	블록	351-2524	
백명산업㈜	나주시 봉황면	이화	블록	331-0040	
토리온토아코리아㈜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노강호	블록	333-3359	
㈜광호산업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노진숙	블록	335-0007	
㈜일성기업	나주시 반남면	나용철	블록	339-2000	
효창철망㈜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정일오	돌망태	336-2115	
대양철망공업사	나주시 산포면	염세환	돌망태	337-4747	
㈜대양콘크리트	담양군 금성면	정 일	블록	383-5211	
㈜인성콘크리트	담양군 봉산면	서영민	블록	382-3703	
이레콘텍㈜	담양군 창평면	이영례	블록	383-8220	
㈜구암	담양군 수북면	송진경	블록	383-8600	
대승철망㈜	담양군 담양읍	김종금	돌망태	381-8386	
남도산업㈜	보성군 정자길	박부심	블록	853-1193	
(유)대호이엔씨	화순군 능주면	김혁준	블록	373-4112	
(유)에코환경테크	화순군 동 면	김영희	블록	371-0228	
㈜삼한	화순군 동 면	최규범	돌망태	372-8887	
(유)전남보강토	장흥군 장평면	이양석	블록	901-5000	
희망산업㈜	무안군 청계면	양 광	블록	453-3701	
㈜가람콘크리트	영암군 군서면	김용규	블록	471-5152	
주포산업㈜	함평군 함평읍	김연수	블록	322-1766	
㈜에코닉스	함평군 함평읍	김갑중	블록	322-8001	
㈜밝은환경	함평군 함평읍	소유림	블록	323-3797	
㈜대양	영광군 군서면	김경식	블록	353-8196	
석 재					
(유)강남석재산업	순천시 황전면	정영길	석재	724-1130	
담양석재산업㈜	담양군 무정면	김승철	석재	383-0241	
삼승석재(보성그린석)	보성군 도촌길	최성규	석재	853-0036	
섬유매트					
㈜케이알에코원	나주시 동수동	장미정	앵커매트	335-3370	
㈜코리콤이엔씨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기호석	식생매트	336-3456	
㈜에코피아	담양군 담양읍	나항도	앵커매트	381-2422	
㈜푸른강산	함평군 함평읍	김진석	앵커매트	322-4346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생산품	연 락 처	비고
수도계량기보호통					
㈜유화글로벌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이경남	수도계량기보호통	333-1345	
㈜대덕미터텍	해남군 옥천면	방병철	수도계량기보호통	536-9832	
수문권양기/문비/문틀					
덕성이엔지㈜	여수시 소라면	임미영	수문권양기,문비,문틀	655-1210	
㈜우승산업	나주시 봉황면	장경님	수문권양기,문비,문틀	337-8338	
㈜연일	나주시 노안면	윤애선	수문권양기,문비,문틀	331-4566	
㈜한일수기	나주시 남평읍	정일곤	수문권양기,문비,문틀	332-4166	
㈜덕유	곡성군 곡성읍	김춘자	수문권양기,문비,문틀	062-943-9031	
하서산업㈜	화순군 동 면	김상필 외1	수문권양기	371-0144	
유일정공㈜	화순군 동 면	주정애	수문권양기,문비,문틀	371-4255	
㈜태성기계	화순군 도곡면	김동옥	수문권양기,문비,문틀	371-0886	
㈜광명기업	완도군 완도읍	최훙기	수문권양기,문비,문틀	062-942-6402	
㈜두산청공	신안군 비금면	손근영	수문권양기,문비,문틀	462-0601	
(유)신안산업개발	신안군 비금면	문용희	수문권양기,문비,문틀	245-5524	
실내 LED 조명등					
케이엘텍㈜	나주시 노안로	박평서	실내 LED 조명등	334-3933	
㈜그린조명	구례군 산전면	김우진	실내 LED 조명등	781-6500	
케이씨전자	함평군 월야면	문창대	실내 LED 조명등	322-7400	
LED 가로등기구					
㈜파루	순천시 서 면	강문식	보안 LED 등기구	755-5114	
㈜세오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이형각	보안 LED 등기구	755-5114	
케이씨전자	함평군 월야면	문창대	보안 LED 등기구	322-7400	
LED 경관조명기구					
㈜원일테크	순천시 해룡면	강정미	LED경관조명기구	726-0086	
엡스코어	나주 동수농공단지	박성철	LED경관조명기구	333-5995	
LED 다운라이트					
㈜파루	순천시 서 면	강문식	LED다운라이트	755-5114	
케이엘텍㈜	나주시 노안로	박평서	LED다운라이트	334-3933	
㈜그린조명	구례군 간전면	김우진	LED다운라이트	781-6500	
케이씨전자	함평군 월야면	문창대	LED다운라이트	322-7400	
염소투입기					
㈜해동	담양군 금성면	한동옥	염소투입기	383-4978	
㈜현진기업	담양 무정공단길	임용택	염소투입기	062-972-8235	
JD	영암군 산호읍	양재열	염소투입기	462-7125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생산품	연 락 처	비고
오수정화조					
다인환경테크㈜	보성군 미력면	이철환	정화조	852-1888	
㈜후소엔지니어링	화순군 춘양면	이경섭	정화조	373-5373	
울타리,철망,스틸그레이팅					
(유)한국메탈	목포시 공단중앙로	전금숙	휀스, 울타리	278-3831	
㈜케이에스	목포시 공단중앙로	김시오	철망	062-674-0116	
㈜더펜스	여수시 소라면	김기태	철망	681-7489	
㈜현대철망휀스	순천시 녹색로	김동웅	울타리	741-8084	
(유)에이치케이우드	순천시 주암면	김보수	울타리	753-9888	
대양철망공업사	나주시 산포면	염세환	울타리, 철망	337-4747	
㈜위드우드	나주시 운곡동	서재의	울타리	335-5775	
효창철망㈜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정일오	철망	336-2115	
㈜강산우드	담양군 당양읍	이성순	울타리	381-8304	
대승철망㈜	담양군 담양읍	김종금	철망	381-8386	
㈜대경산업	담양군 무정면	이상복	울타리	383-6226	
㈜신화테크	보성군 조성면	김지영	스틸그레이팅	858-3111	
㈜삼한	화순군 동 면	최규범	울타리	372-8887	
㈜태창그린	화순군 능주면	정주연	울타리	375-9100	
㈜부국철망	화순군 도곡면	김외수	철망	371-8889	
㈜삼한	화순군 동 면	최규범	철망	372-8887	
두륜산업개발㈜	해남군 북일면	이재홍	울타리	062-943-4245	
옥선산업㈜	해남군 옥천면	김미령	철망	534-8681	
디자인 휴인㈜	무안군 청계면	최규웅	울타리	070-8668-5135	
㈜삼성철망	무안군 무안읍	양인욱	울타리, 스틸그레이팅	062-956-8700	
(유)목포철망	무안군 무안읍	진길만	울타리	284-9018	
㈜미로	영암군 군서면	최병술	울타리	473-7397	
㈜태영철망	영암군 삼호읍	고영희	울타리	462-7474	
㈜원일스틸	영암군 삼호읍	김복희	철망, 스틸그레이팅	462-9300	
㈜금강스틸	함평군 함평읍	조성균	철망	322-0025	
신우스틸	영광군 군서면	이현식	철망	351-0491	
옥당철강㈜	영광군 군서면	정유신	철망	351-8600	
일신기계	장성군 황룡면	서윤석	철망	394-2116	
㈜한아	장성군 황룡면	배초환	스틸그레이팅	394-3267	
진도철망㈜	진도군 고군면	장영숙	철망	542-8681	
인조잔디					
대교에코필드㈜	장성군 장성읍	고재경	인조잔디	070-4115-6733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생산품	연 락 처	비고
창 호					
(유)한국메탈	목포시 공단중앙로	전금숙	창호	278-3831	
㈜한성산업	목포시 삼학로	오영진	창호	375-8521	
㈜동수건설	순천시 백강로	김양훈	창호	725-8503	
㈜이노탑	화순군 동 면	유진종	창호	374-6920	
우호산업㈜	화순군 화순읍	유 영	창호	371-6368	
㈜성원엔지니어링	장흥군 장흥읍	고성수	창호	062-572-6355	
㈜동성기업	장흥군 장흥읍	문성필	창호	863-4655	
㈜혁신	해남군 옥천면	최연호	창호	462-5948	
부국산업건설㈜	무안군 삼향읍	임달빈	창호	278-2848	
㈜점보산업	장성군 장성읍	조성근	창호	062-371-8919	
콘크리트 맨홀					
㈜대부	나주시 봉황면	정길주	콘크리트 맨홀	337-8777	
거보산업㈜	담양군 금성면	양 훈	콘크리트 맨홀	383-0330	
㈜남양산업	화순군 이양면	이봉권	콘크리트 맨홀	371-2030	
(유)광전피씨	영암군 군서면	이정덕	콘크리트 맨홀	473-2502	
㈜에코엠앤씨	함평군 함평읍	소유림	콘크리트 맨홀	323-000	
태양광발전장치					
서평전기공업㈜	목포 공단중앙로	안효선	태양광발전장치	062-943-3120	
파루㈜	순천시 서 면	강문식	태양광발전장치	755-5114	
㈜건국	나주시 박정길	김명옥	태양광발전장치	062-361-3927	
금원전기솔라텍㈜	나주시 청 동	박윤성	태양광발전장치	334-4124	
에이스테크	광양시 정산길	임군택	태양광발전장치	791-6055	
아주전력㈜	광양시 광양읍	이상근	태양광발전장치	762-0853	
㈜신호엔지니어링	광양시 중 동	임수연	태양광발전장치	795-8477	
㈜정우엔지니어링	담양군 월산면	김재일	태양광발전장치	062-268-5118	
금산전력㈜	화순군 이양면	송병우	태양광발전장치	062-603-4141	
㈜탑인프라솔라	영암군 신북면	오형석	태양광발전장치	062-961-9877	
㈜세진엔지니어링	영암군 덕진면	박찬갑	태양광발전장치	384-6333	
㈜탑선	장성군 동화면	윤정택	태양광발전장치	399-1500	
㈜우원산업	장성군 장성읍	최성주	태양광발전장치	393-3220	
(주)동천기공	장성군 동화면	이지희	태양광발전장치	395-1185	
태양광 가로등					
㈜원일테크	순천시 해룡면	강정미	태양광가로등	726-0086	
㈜파루	순천시 서 면	강문식	태양광가로등	755-5114	
(주)뉴그린코리아	나주 동수농공단지	배문자	태양광가로등	062-941-4646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생산품	연 락 처	비고
엡스코어	나주 동수농공단지	박성철	태양광가로등	333-5995	
(주)삼영이엔지	화순군 화순읍	김성아	태양광가로등	375-0997	
나래전기조명㈜	해남군 옥천면	조미희	태양광가로등	062-972-0035	
㈜그린이앤씨	장성군 동화면	윤명희	태양광가로등	971-3220	
퍼걸러,목재					
(유)휴먼테크	목포시 연산동	김지선	퍼걸러	285-1721	
㈜주원목재	목포시 고하대로	이병용	목재	273-9955	
(유)형후	여수 문수북5길	김종식	퍼걸러	242-0915	
㈜휴플러스	순천시 해룡면	송의섭	목재	724-4435	
(유)에이치케이우드	순천시 주암면	김보수	합성목재	753-9888	
㈜명선조경체육산업	나주시 금성길	박채준	퍼걸러, 목재,운동시설	062-956-2284	
㈜위드우드	나주시 운곡동	서재의	목재	333-5775	
㈜케이알에코원	나주시 동수동	장미정	목재	335-3370	
(유)용강산업	광양시 중동로	오문숙	목재	070-7769-8010	
㈜에코우드텍	담양군 담양읍	박종관	목재	382-0034	
강산우드	담양군 담양읍	이성순	합성목재	381-8304	
㈜영승조경랜드	고흥군 고흥읍	곽재동	퍼걸러	010-9350-0982	
㈜남도목재산업	보성군 보성읍	안영기	목재	853-3095	
(유)코리아레포츠	화순군 도곡면	채윤자	파걸러	373-6788	
㈜울림	화순군 능주면	문제관	목재	373-5114	
근덕산업개발㈜	화순군 능주면	홍금순	목재	372-7901	
㈜태창그린	화순군 능주면	정주연	목재	375-9100	
동아에스텍㈜	화순군 동 면	한상원	목재	370-2114	
㈜그린우드	장흥군 장평면	정석균	목재	862-8669	
㈜행복홈우드테크	무안군 청계공단길	최대운	목재	454-6300	
㈜영진합성목재	무안군 청계면	최성남	합성목재	454-9025	
준아트(유)	영암군 군서면	김미라	퍼걸러	471-6770	
㈜삼경조경건설	영광군 영광읍	이현희	목재	010-8985-3132	
㈜진성에코스	영광군 영광읍	박정희	목재	070-7767-9350	
포 장 재					
그린로드㈜	여수시 화양면	고용배	탄성포장	692-3565	
㈜에코피아	담양군 담양읍	나항도	미끄럼방지포장	381-2422	
㈜성진산업	구례군 간전면	임채욱	탄성포장	724-6384	
㈜태웅산업	해남군 옥천면	신철균	미끄럼방지포장	062-571-2557	
㈜플러버	함평군 월야면	문연향	탄성포장	070-4636-5004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생산품	연 락 처	비고
대교에코필드㈜	장성군 장성읍	고재경	탄성포장	070-4115-6733	
PE, PVC 관					
(주)명성화학	여수시 화양면	고용배	PE관, PVC관	692-3565	
보성포리테크㈜	순천시 한인제길	김성식	PE관	857-9900	
㈜티지에프	순천시 주암면	강용일	PVC관	755-4600	
㈜크라텍	순천시 서 면	조경필	PE관	755-8900	
㈜스트롱케미칼	순천시 주암면	김종원	PE관	755-9300	
㈜뉴보텍에이치엔	나주 동수농공단지길	양현철	PVC관	333-6071	
㈜서원	나주시 동수동	박봉선	PE관	336-4005	
㈜제철공무	광양시 옥곡면	안우정	PE관	790-5137	
㈜호남화학	담양군 무정면	박남호	PE관	382-6525	
㈜삼원테크	화순군 동면	황대연	PE관	062-573-1237	
㈜파이프로	영광군 군서면	이승용	PE관	351-0230	
㈜드림파이프	영광군 군서면	장미희	PE관	353-7722	
㈜차후에스엔피	장성군 삼계면	김도윤	PVC관	392-9400	
㈜창일	장성군 북일면	김창민	PE관	394-8773	

9 계약심사 관련 추천 사이트

추천 사이트	주 소	내 용
건설계약연구원	http://www.csr.co.kr	노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 등 확인가능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분야·공종별 신기술 현황 파악
서울외국환중개(주)	http://www.smbs.biz	주요 통화기준율 확인
환 경 부	http://www.me.go.kr/→정보마당→고시·훈령·예규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동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폐기물 종류 용어설명, 분리대상 등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http://www.koras.org	품목별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운반수집 비용 단가
한국원가관리협회	http://www.kcaa.or.kr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표준품셈 등), 건설기계 경비 산출표 등
한국은행	http://www.bok.or.kr	기업경영분석자료 -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익률 등